

중국근현대사학회

2022년 6월 정례발표회

- ◆ 일시: 2022년 6월 18일(토) 14:00~17:30
- ◆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 518호 국제회의실
- ◆ ZOOM 접속 링크: <https://zoom.us/j/6915820895>
(회의실 ID: 691 582 0895, 비밀번호: 없음)



중국근현대사학회

일정표

■ 사회: 김하림(연세대)

■ 발표1 (14:00~14:45)

“군국민에서 공민으로: 청말민초 ‘체육’담론의 변화와 국민 만들기”

발표: 김태한(경희대) / 토론: 윤숙현(전남대)

■ 발표2 (14:45~15:30)

“1920-30년대 상해 공공조계 행정 체계의 변화”

발표: 김승래(도쿄대) / 토론: 김승욱(충북대)

■ 휴식 (15:30~15:45)

■ 발표3 (15:45~16:30)

“건국 초기 부녀연합회의 선전 역량 확대: 상해시 향미원조운동을 중심으로”

발표: 손동훈(고려대) / 토론: 장수지(이화여대)

■ 발표4 (16:30~17:15)

“중화인민공화국의 농촌 ‘국가식량시장’ 운용과 폐지(1954~1957)”

발표: 이승아(한양대) / 토론: 윤형진(고려대)

■ 공지사항 안내 및 폐회 (17:15~17:30)

■ 만찬 (18:00~)

중국근현대사학회

목 차

■ 발표1

군국민에서 공민으로: 청말민초 ‘체육’담론의 변화와 국민 만들기 01

발표: 김태한(경희대)

■ 발표2

1920-30년대 상해 공공조계 행정 체계의 변화 23

발표: 김승래(도쿄대)

■ 발표3

건국 초기 부녀연합회의 선전 역량 확대: 상해시 향미원조운동을 중심으로 39

발표: 손동훈(고려대)

■ 발표4

중화인민공화국의 농촌 ‘국가식량시장’ 운용과 폐지(1954~1957) 59

발표: 이승아(한양대)

군국민에서 공민으로

청말민초 ‘체육’ 담론의 변화와 국민 만들기

김태한(경희대)

<목 차>

머리말

I. 청말 신체 개조론의 등장

II. 신해혁명 이후 체육을 둘러싼 논의

III. 새로운 국가·사회를 위한 체육과

국민의 신체

맺음말

머리말

1995년 중국의 국가체육총국(國家體育總局)에서 발표한 「전민건신계획강요(全民健身計劃綱要)」에서는 ‘중국의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은 인민의 총체적 소질에 대하여 더욱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민의 건신(健身)활동은 그 필요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¹⁾고 지적하면서 중국 인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였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신체 건강이 국가 발전의 필요조건이라는 명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체조 또는 체육활동을 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체육과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체육을 향한 중국의 관심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인 ‘신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중국사 학계는 ‘신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신체사(身體史) 연구는 개인의 신체를 하나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표현주체로 바라보았다.²⁾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20세기 초를 중국에서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로 조명하고 있다.³⁾ 특히, 이 시기는 신체가 건강해야 할 의무와 목적을 ‘강신보종(強身保種)’ 등의 관념으로 제시하고 있어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검토되었고, 그 결과 개인의 신체가 국가에 귀속

1) 國務院, 「全民健身計劃綱要」, 1995, <http://www.sport.gov.cn/n16/n1092/n16849/312943.html>
(검색일자 : 2020.11.25.)

2) 신체사(身體史)는 사회·문화·정치의 변화 또는 신체 자체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신체’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신체는 물리적, 생물학적인 신체가 아닌 사회·문화의 네트워크 안에서 존재하는 신체이다. 큰 범주에서 보면 의료사 또한 신체사로 포함될 수 있으며 기존에 진행되어온 전족과 변발에 대한 연구처럼 신체에 내포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것 또한 身體史의 한 분야로서 바라볼 수 있다. 중국의 근대 신체사 연구 정의와 동향에 관해서는 劉宗靈, 「身體史與近代中國研究」, 『史學月刊』 3, 2009를 참조.

3) 사카모토 히로코, 양일모·조경란(옮김),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인종·신체·젠더로 본 중국의 근대』, 지식의 풍경, 2006 ; 劉宗靈, 「身體史與近代中國研究」, 『史學月刊』 3, 2009 ; 黃亦君, 「身體改造 : 清末民初的軍國民運動與國民覺醒」, 『教育文化論壇』 2, 2012 ; 伍小濤, 「中國體育史 : 一種身體政治的視角」, 『長江論壇』 135, 2015.

되는 시기로 규정되어 왔다.⁴⁾ 개인의 신체는 점차 국가에 의해 개조되어 갔으며,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내는 체육 또한 점차 중요하게 여겨졌다.

한편 체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근대 체육사 연구는 통사 서술을 위한 개괄적인 연구⁵⁾외에도 체육 사상에 관한 연구⁶⁾, 학제 변화에 따른 체육의 변화 연구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중 근대적인 체육 도입과 발전에 관한 연구에 주목할 만 한데, 시기구분에 대한 것이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⁸⁾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천르성(陳日升), 리우빈(劉斌)의 연구는 1910년대 체육 논쟁, 특히 군국민주의 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논쟁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체육 논쟁에 참여한 지식인과 체육계 인사의 군국민주의 비판과 새로운 체육 요구에 대한 의견들을 소개하면서, 1910년대 체육 논쟁이 군국민주의에서 새로운 방향의 체육으로 전환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전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1922년에 발표된 임술학제에서 체조과로 존재하던 체육이 체육과로 명칭이 변화한 것을 언급하였다.⁹⁾ 또한 논쟁을 통해 당시 중국 사회에서 국민 신체가 이루어야 할 지향점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간접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1910년대 체육 논의에 집중한 연구는 이 시기 지식인들의 체육에 대한 비판이 가지고 있는 체육사적인 의미를 강조하여 중국 체육 발전의 시발점 정도로 인식하는데 그치고 있다. 더불어 지식인들의 논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정도로 서술을 마쳤다. 해당 논의를 체육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정세의 변화, 신해혁명 이후 중국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 등이 체육 논의에 어떠한 방식으로 녹아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신체, 그리고 체육에 대한 사상 변화와 논의 과정을 토대로 체육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게 된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1900년대 중국 사회에 형성되었던 군국민주의 체육과 그 기저에 존재했던 신체 개조론의 영향, 그리고 1910년대 이를 비판하며 새롭게 등장했던 체육사조가 교육 속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체육이 국민의 신체를 개조하는 최전선에 위치하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지식인들의 체육에 관한 논의와 학교 교육의 제도를 통해 “20세기 초 체육은 중국의 ‘국민만들기’ 작업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그 특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신해 혁명 이후 중국의 새로운 사회 구상

4) 黃金麟, 『歷史, 身體, 國家: 近代中國的身體形成(1895-1937)』, 新星出版社, 2006.

5) 근대 체육사에 대한 대표적인 통사 연구로는 國家體委體育文史工作委員會, 中國體育史學會 編, 『中國近代體育史』, 北京體育學院出版社, 1989가 있다.

6) 체육 사상에 관한 연구로는 周景暉, 「中國近代體育思想演變研究」, 『雲南社會主義學院學報』 4, 2014; 土屋 洋, 「清末の體育思想 : 「知育・德育・體育」の系譜」, 『史學雜誌』 117, 2008 등이 있다.

7) 학제 변화에 따른 체육사 연구로는 席亞健, 張廷, 「『壬戌學制』與近代學校體育發展」, 『軍事體育進修學院學報』 30, 2011; 王華倬, 鄭滬娥, 「我國近代壬戌學制與體育課程的改革背景・特點及其歷史意義」, 『北京體育大學學報』 28, 2005; 笹島 恒輔, 「中國學制的變遷に伴う學校體育の推移」, 『日本の教育史學』 7, 1964; 笹島 恒輔, 「中國學校體育の制度史的研究 : 清朝末期より中華民國初期」, 『體育學研究』 11, 1967; 林 陶, 「中國における學校體育目標とその歴史的・形成過程に関する研究 : 「體力づくり」の位置づけを中心に」, 『日本教科教育學會誌』 24, 2001 등이 있다.

8) 20세기 초 중국의 체육 발전을 다룬 연구로는 張曉軍, 『近代國人對西方體育認識的嬗變(1840-1937)』, 吉林大學 박사학위논문, 2010; 劉建兵, 張永汀, 「試論清末學生體育觀的轉變」, 『牡丹江大學學報』 18, 2009; 王建, 易招華, 「晚清時期體育教育的發展與演變」, 『教育與科技研究』 1, 2011; 이성철, 유영환, 「중국 사회의 압축적 근대성과 체육변동」, 『한국체육과학회지』 17, 2008; 옥광, 하웅용, 「중국 근대 스포츠문화의 사상적 기원(1840-1911)」, 『한국체육과학회지』 44, 2005 등이 있다.

9) 陳日升, 劉斌, 「爭鋒與反思: 近代中國軍國民體育及其價值的再讀」, 『論理學研究』 4, 2020.

에서 이루어졌던 기존 체육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제1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신체육' 사조의 등장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하는 지식인들의 체육 인식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국민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지식인들의 체육논쟁이 가지는 의의를 논하고, 이러한 논의가 1922년 학제 개혁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군인을 양성하고자 했던 체육이 공민도덕을 함양하고, 공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체육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학교 교육과 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 『中國近代教育史資料』¹⁰⁾와 『中國近代學制史料』¹¹⁾, 그리고 2016년 天津의 南開大學中國社會史研究中心에서 나온 『近代體育遊戲教育史料彙編』를 통해 교과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당시 교육계와 중국 사회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教育雜誌』, 『中華教育界』, 『東方雜誌』, 『新青年』, 『大公報』, 체육계 인사들이 발행하였던 『體育雜誌』와 『體育周報』 등의 잡지와 신문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I. 청말 신체 개조론의 등장

1. 신체 개혁과 군국민 논의

청일전쟁 패배 이후 옌푸(嚴復)가 서양에서 가져온 '사회진화론'의 개념은 중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회진화론은 제국적 질서를 통해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통합했던 중국의 천하상국(天下上國)적인 천하관을 해체시켰다.¹²⁾ 사회나 국가조차 치열한 생존 경쟁에 놓여 있고, 우월한 진화를 거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세계의 유일한 보편이자 권력이었던 중국은 이제 개별 국가들 속에 편입되어 생존 경쟁의 주체로 위치하게 되었다.¹³⁾

이러한 상황에서 량치차오(梁啟超)와 같은 지식인들은 중국의 부강을 위해 국체와 관제 개혁 이외에도 인민의 재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국가가 한 사람의 현명함만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없고, 가족 구성원들이 현명해야 집안이 번창하는 것처럼 국가의 구성원들이 새롭게 변화해야 부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¹⁴⁾ 즉, 국가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국민이 변하지 않으면 국가의 정체(政體)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부국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량치차오가 주장한 인민의 재교화란 거듭된 국가적 개혁의 실패가 중국인들의 현명함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재교화는 정신적 측면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상은 정신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여기서 인민의 재교화는 정신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은 심(心)과 신(身)의 모든 측면에서 재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 같은 인식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된 열강의 물리적 침략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를 경험한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전에 시행되었던 양무 개혁으로 서구의 군사기술을 배우고 시설을 정비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었음에도 이것만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

10) 舒新城 編, 『中國近代教育史資料』,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81.

11) 朱有瓚 等 編, 『中國近代學制史料』,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3.

12) 양일모, 『옌푸(嚴復):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 태학사, 2008.

13) 전인갑, 『제국에서 제국성 국민국가로: 제국의 구조와 이념』(1), 『중국학보』65, 2012, 165-166쪽.

14) 梁啟超, 「新民說: 敘論」, 『新民叢報』1, 1902.

국이 당면한 국제 정세와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혁을 넘어선 새로운 변화나 쇄신이 절실했다.

국가의 정체나 제도 등의 개혁이 실패로 점철된 원인이 정신적 측면의 재교화가 부족했던 것이라면, 양무개혁과 같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개혁의 실패 원인은 개인의 신체적 변화가 부족했던 탓이었다. 따라서 1890년대 이후 등장한 여성의 전족 문제, 변발을 잘라내자는 전변론(剪辮論) 등 신체에 관한 논설은 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개인의 신체를 통해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낸다는 목적이 기저에 존재했다.¹⁵⁾

그런데 신체의 개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결국 그 방향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개조가 필요하다는 그 자체의 논지와는 다르게 ‘개인은 어떠한 신체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새로운 논의를 가져왔다.

1902년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차이어(蔡鐸)는 『신민총보(新民叢報)』에 분핵생(奮翮生)이라는 필명으로 「군국민편(軍國民篇)」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1899년 일본으로 건너가 사관학교에서 수학했던 그는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부강을 위해서는 군국민주의가 중국사회에 필요함을 주장했다.¹⁶⁾ 평화를 고수하는 미국조차 학생들에게 군가를 부르게 하고, 일본은 소학교 교과서에 전쟁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교육하게 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군인정신을 기르게 하므로¹⁷⁾ 중국도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국민이란 ‘모든 국민이 군사훈련을 통해 강건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을 갖추고, 이를 통해 강인하고 전투적인 사회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적성’¹⁸⁾이 부여된 국민으로, 그 최종 목적은 전민개병(全民皆兵)을 통한 부국과 강병을 이루는 것이었다. 『신민총보』를 만들었던 량치차오 또한 차이어의 군국민 논의에 대해 ‘상무’의 개념을 들며 독일처럼 중국 또한 모든 국민이 군국민의 자격을 갖추어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⁹⁾

군국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장바이리(蔣百里)의 논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²⁰⁾ 그는 사회의 모든 조직이 군사적 관점에서 배치되어야 하고, 사회의 정신과 풍속, 습관이 모두 군인정신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¹⁾ 그는 먼저 학교에서 교육 방침에서 과거에는 버려졌던 체육의 지위를 바로잡았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체조와 유희, 행군, 사격, 격검, 수영, 여행, 등산은 모두 상무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학생들은 군사지식을 교육받아야 했다. 또한 사회는 용사의 동상을 건립하거나, 격전의 장면을 조각하거나, 격검을 장려하고, 미디어나 문화 예술의 방식으로 무의식 중에 애국 의식과 신체능력을 양육하도록 해야 했다.²²⁾

이러한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 군국민 양성을 위해서는 체육을 통한 국민의 신체 개조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특히 차이어의 경우에는 중국인의 체백(體魄)이 매우 약하며, 건강상에 완전무결한 자가 열에 한 둘에 지나지 않는다며 구미 각국과 육탄전을 벌인다고 할지라도 싸울 준비가 충분한 신체²³⁾가 필요함을 글을 통해 피력했다. 이러한 각 방향에서의 노력은 군국

15) 黃金麟, 『歷史, 身體, 國家: 近代中國的身體形成(1895-1937)』, 新星出版社, 2006, 39-41쪽.

16) 李遠樂, 張子沙, 喻丹, 「蔡鐸的軍國民體育思想初探」, 『北京體育大學學報』 32, 2009, 45쪽.

17) 奮翮生, 「軍國民篇」, 『新民叢報』 第1號, 1902, 84쪽.

18) 이러한 목적성에는 경우에 따라 국가를 위해 죽음을 불사한다는 이념 또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시자와 세이치로, 정지호(윝김), 『애국주의의 형성: 내셔널리즘으로 본 근대중국』, 논형, 2006, 47쪽.

19) 梁啟超, 「論尙武」, 『新民叢報』 第29號, 1903, 7-8쪽.

20) 黃金麟, 『歷史, 身體, 國家: 近代中國的身體形成(1895-1937)』, 新星出版社, 2006, 47쪽.

21) 蔣百里, 「軍國民之教育」, 『新民叢報』 第22號, 1902, 33-34쪽.

22) 蔣百里, 「軍國民之教育」, 『新民叢報』 第22號, 1902, 43-44쪽.

민에 관한 논의가 중국에서 분명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일본에 유학했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창간한 잡지와 국내 보도지 등에서 상호 연계하여 호응하면서 점차 교육현장에서 억제할 수 없는 조류가 되어갔다.²⁴⁾

2. 군국민 체육의 제도적 구현

장바이리의 언급처럼 군국민 신체 양성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제도의 변화, 즉 학제 개혁에 관한 주장은 19세기 중엽부터 존재했지만, 새로운 학제 건립은 1902년 장바이시(張百熙)가 『흥정학당장정(欽定學堂章程)』을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학당장정에서 체조는 학당의 필수 교과로 자리잡았고, 이후에 이를 보완한 『주정학당장정(奏定學堂章程)』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체육은 교육제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²⁵⁾

당시 학당장정에서는 체조를 통해 신체의 균형적인 발육과 악습 교정, 쾌활한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집단 생활의 일사불란함이나 용감하고 진취적인 기상, 기율을 준수하는 습관 등을 기르는 것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전우애를 기르고, 기율에 맞추어 용감하게 적을 향해 전진하는 '군인으로서 필요한 자세'였다.

실제로 『주정학당장정』에서는 고등소학당에서부터 병식체조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개인, 소대, 중대 교련을 통해 전술 교육을 받았고, 총검술과 야외연습 그리고 병학을 배우는 것도 병식체조 안에 포함되었다.²⁶⁾ 다시 말해 신정기 학제 속에서 체육은 군국민이라는 단어가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뿐, 이미 군국민의 신체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06년에는 학부상서였던 잉칭(營慶)이 교육 취지에 관한 주청에서 “중·소학당의 각종 교과서에 반드시 군국민주의를 포함하여 아동들이 그것을 보고 열심히 보고 익히며 듣도록 해야 한다”²⁷⁾고 말하며 직접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군국민주의가 주창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1911년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전국교육총연합회에서는 헌법 대강에 따라 청의 신민은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학부가 교육에 군국민주의를 확정할 것을 청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주청했다.

1. 군국민주의를 선포한다.
2. 고등소학 및 그 이상의 학당에 일률적으로 병식체조를 중시할 것을 명한다.
3. 중학 및 동등 이상의 학당에 일률적으로 사격훈련(순경국이나 방영에 총탄을 저장하고, 해당 학당의 감독이 사용량을 신청해 정기적으로 수령증과 함께 수취)과 무학을 가르칠 것을 명한다.
4. 사립학당은 독학국에 보고하거나 학사에 안건을 제기해 반드시 앞의 두 가지 항목을 실시한다.
5. 각종 학당에 일률적으로 체조를 주요과목으로 삼게 할 것을 명한다.²⁸⁾

23) 奮翮生, 「軍國民篇」, 『新民叢報』第 3號, 1902, 65-66쪽

24) 黃金麟, 『歷史, 身體, 國家: 近代中國的身體形成(1895-1937)』, 新星出版社, 2006, 48쪽.

25) 國家體委體育文史工作委員會, 中國體育史學會 編, 『中國近代體育史』, 北京體育學院出版社, 1989, 70-71쪽.

26) 「奏定高等小學堂章程」, 『中國近代教育史資料』中冊, 431쪽; 「奏定中學堂章程」, 『中國近代教育史資料』中冊, 506쪽.

27) 「學部奏請宣示教育宗旨折」, 『中國近代教育史資料』上冊, 220쪽.

28) 「各省教育總會聯合會議決案議決案甲: 呈請學部施行事件」, 『教育雜誌』3: 6, 1911, 2쪽.

기존의 학당에서 이루어졌던 병식체조와 더불어 이 결의문에서는 실탄을 사용한 사격 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전의 학당 개혁에서 사립학당이 목총이나 총을 사용한 군사훈련을 금지한 것과 달리, 결의문에서는 사립학당까지도 군사훈련의 실시를 강조했다.²⁹⁾ 이를 통해 당시 지식인과 교육자들이 군국민주의가 확장 및 구현되길 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학부는 비준을 통해 중앙교육회를 설립하고 7월 15일에서 8월 12일까지 중앙교육회 성립대회를 개최했다. 회의 중 학무대신이 안건으로 제출했던 군국민주의 교육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을 둘러싼 토론에서 소학 교과서를 개정하고 갑·을 등급의 사범학교와 중등학당이 군사대의(軍事大義) 과목을 추가할 것, 체육회의 사격과 권·곤·도 사용법에 관해서는 반드시 학부와 육군부가 회동하여 군대와 다를 바 없는 법규로 편성할 것 등의 안건이 통과되었다.³⁰⁾

II. 신해혁명 이후 체육을 둘러싼 논의

1. 혁명 이후 군국민주의와 체육에 대한 여러 이해

신해혁명 직후에도 군국민주의와 이를 앞장서 비호했던 체육은 여전히 중국 사회에 지배적인 신체 개조의 지향점이었다. 오히려 군국민주의와 체육은 상호 간 결합이 더욱 긴밀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1912년 중화민국의 초대 교육총장 차이위안페이가 신교육의견을 발표하며 군국민주의를 교육의 주요 원칙으로 포함시킨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차이위안페이는 체육을 군국민주의, 덕육을 도덕과 미육, 지육을 실리주의라는 형태로 분류하면서 군국민주의 교육의 방법은 병식체조와 보통체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명시했다.³¹⁾ 신해혁명 직후 이러한 군국민주의와 체육에 관한 추이는 대략 두 가지 배경에 기인한다.

우선 청말 군국민주의 체육은 청과 혁명 세력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다. 1905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체육 전문학교들 가운데 몇몇 학교는 혁명 세력을 길러내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다.³²⁾ 위안스카이(袁世凱)는 중앙집권을 통한 강인한 중국 건설을 지향하면서 군국민의 양성을 지지했고, 아울러 이것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1915년 1월 대총통령으로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들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결국 강국은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병식체조를 통해 국민의 신체를 단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³⁾ 이는 군국민주의라는 신체 개조의 방향성이 정체개혁이나 혁명, 권력강화 등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모든 개혁의 기초작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1차 세계대전도 군국민주의와 체육의 결합을 더욱 긴밀하게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1914년 전쟁 초기에 독일 국민의 충성심과 전사를 영광으로 여기는 모습들은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전민개병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했다. 당시 언론은 대전의 상황을 상세하고 생동감 있게 보도했는데, 이러한 논술은 군국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자극을 준 외부요소가 되었다.³⁴⁾

29) 「奏定學堂章程：學務綱要」, 『中國近代教育史資料』上冊, 206쪽.

30) 「中央教育會記事」, 『順天時報』, 1911, 宣統 3년 6월 28일 ; 宣統 3년 6월 9일

31) 蔡元培, 「新教育意見」, 『教育雜誌』 3 : 11, 1912, 25쪽, 27쪽.

32) 예컨대 1905년 설립된 대통학당(大通學堂)은 광복회에서, 1908년 설립된 중경체육학당(重慶體育學堂)은 동맹회에서 운영하던 곳이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체조교원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혁명파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었다. 國家體委體育文史工作委員會, 中國體育史學會 編, 『中國近代體育史』, 北京體育學院出版社, 1989, 91-95쪽.

33) 袁世凱, 「大總統頒定教育要旨」, 『中國近代體育史資料』, 76쪽.

34) 黃金麟, 『歷史, 身體, 國家：近代中國的身體形成(1895-1937)』, 新星出版社, 2006, 53쪽.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산둥(山東)의 자오저우만(曹州灣)에 군대를 이끌고 진입하고, 중국에 21개조를 요구했던 사건은 열강의 침탈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되어 국가 전체가 하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군국민주의가 마치 합리적 선택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지식인들이 군국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교육에 군국민주의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대표적으로 1912년 차이위안페이(袁世凱)의 신교육에 관한 의견을 두고 일어난 교육 방침의 주종 논쟁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공민도덕교육과 군국민주의를 모두 교육의 주요 취지로 인정했던 차이위안페이의 의견에 대해 일부에서는 외우내환의 상황으로 군국민주의를 주로 해야 하고 기타 교육 취지는 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장위(莊俞)³⁵⁾와 같은 인물은 군국민주의는 기본적으로 실리관이 없으므로 강탈과 쟁취가 사회에 스며드는 폐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본적으로 공민 도덕을 갖춘 후에야 군국민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⁶⁾

군국민주의에 대한 비판은 쉬이빙(徐一冰)과 같은 체육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그가 표면적으로 드러낸 문제는 체조교원의 수가 교육현장의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교육 제도에 군국민주의의 영향이 커지면서 체육이 강조되자,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적인 체조교원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따라서 1904년부터 일부 지역은 체조교원 양성을 위해 단기 훈련반 개설, 전문 학교 설립 등 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했다.³⁷⁾ 그러나 해당 문제는 민국 성립 후에도 지속되었고, 일부에서는 육군 출신의 군인들이 체조교원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³⁸⁾ 쉬이빙은 각 성의 학교 체육 과목을 살펴보면 군사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더욱이 무지한 한 두명의 병사가 체조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싸움을 잘하고 무력으로 전쟁과 정복, 살인을 잘하는 것은 체육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³⁹⁾ 여기에서 그의 비판은 본질적으로 군국민주의를 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군국민주의와 체육에 관한 중국사회의 다양한 이해가 이후 일어난 변화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쉬이빙의 비판과 주장은 『교육잡지(教育雜誌)』와 그가 직접 발행했던 중국 최초의 체육 전문잡지인 『체육계(體育界)』, 『체육잡지(體育雜誌)』 등을 통해 유통되었다. 따라서 교육계나 당시 양성되었던 체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의 주장이나 논의가 영향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1915년 『교육잡지』의 편집자였던 주위안산(朱元善)은 체육은 군사적 범위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심신의 조화 또는 활력있는 신체를 만드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당시 교육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체육의 새로운 방법 또는 목적을 찾고자 노력했다.⁴⁰⁾ 당연하게도 이는 교육계의 전반적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35) 장위(莊俞)는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교과서 편집을 담당하였던 인물이었다. 최은진, 「중화민국 시기 『教育雜誌』와 서구교육지식의 수용과 확산」, 『중국근현대사연구』 82, 43-44, 50쪽.

36) 莊俞, 「論教育方針」, 『教育雜誌』 4: 1, 1912, 4-5쪽.

37) 國家體委體育文史工作委員會, 中國體育史學會 編, 『中國近代體育史』, 北京體育學院出版社, 1989, 78쪽.

38) 羅振玉, 「各省十年間教育之計畫」, 『東方雜誌』, 3: 9, 1906, 181-205쪽.

39) 徐一冰, 「體育與武力辨」, 『體育雜誌』 1, 1914, 3-4쪽.

40) 대체로 이러한 논설은 체육이 건강한 개인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육상과 구기종목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거나, 유럽과 미국의 체육 전문가들의 강연과 사상을 번역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說體育」, 『講案』 3: 2, 1915, 2쪽; 「體育一斑」, 『中華教育界』 4: 1, 1915, 1-10쪽; 「體育一斑」, 『中華教育界』 4: 3, 1915, 11-16쪽; 「體育講義」 1, 『教育雜誌』, 7: 1, 1915; 「體育講義」 2, 『教育雜誌』, 7: 3, 1915; 「體育講義」 1, 『教育雜誌』, 7: 6, 1915; 「歐美體育大家之言論」, 『體育雜誌』 2, 1914, 69-71쪽.

구미의 새로운 교육론을 소개하고 중국에서도 신교육의 장점들을 받아들여 기존의 교육제도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⁴¹⁾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해 속에서 군국민주의, 그리고 체육에 대한 논의는 점차 학교 교육의 대상이 되었던 학생이나 교육에 종사하지 않았던 지식인들 사이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1917년 후난성 제1사범학교의 학생이었던 마오쩌둥(毛澤東)은 이십팔획생(二十八畫生)이라는 필명으로 『신청년(新青年)』에 체육의 근본적 가치를 논하는 글을 실었고, 같은 해 중화대학(中華大學)의 중국철학과 학생이었던 윈다이잉(惲代英)은 『청년진보(青年進步)』에 학교 체육에 관한 논설을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과 잡지에서는 국민체육에 관한 연구, 교육적 유희활동, 학교의 운동회에 관한 소감 등을 주제로 한 글이 연재되었다.

2.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신체육, 그리고 병식체조의 존폐 논쟁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중국 사회에 들어왔던 새로운 교육 사상들은 체육에 대한 논의를 확장했다. 1910년대 중반부터 구미의 다양한 교육 사조들이 중국에 유입되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유학했던 학생들이 돌아와 구미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미국의 학자들이 직접 중국에 건너와 강연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교육 학설이나 사상을 전파했다. 예를 들면, 1919년 존 듀이(John Dewey)의 중국 방문과 평민주의 교육에 관한 강연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사상의 물결은 체육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에서 건너온 맥클로이(C.H. Maccloy)와 같은 체육학 연구자들은 체육에서 자연활동을 중시하는 교재들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 시기 중국에 들어온 체육과 관련된 새로운 학설 가운데 신체육(New Physical Education)이 주목할 만하다. 신체육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논의된 체육이론으로 그 목표는 심리학, 사회학 요소들을 수용하여 체육을 통해 덕성과 같은 사회적 요소들을 함양하는데 있었다.⁴²⁾ 따라서 이전까지 군국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률적 체조교육은 더욱 비판받기 시작했다.

더하여 제1차 세계대전 또한 체육에 관한 논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전쟁 초반 군국민주주의를 앞세워 우세한 형세를 만들었던 독일은 1917년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점차 패색을 띠었다. 결국 1918년 독일이 항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고, 전후 미국의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세계평화를 기초로 14개 원칙을 제시하면서 평화에 대한 갈망은 중국 사회에도 스며들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중국 교육계는 전후 세계의 사상과 교육이 점차 세계주의를 향해가고 있으므로, 중국 또한 애국심을 배양하는 것 이외에 타인과 타국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념을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 사이에 오해를 줄이고, 세계주의에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⁴³⁾

위의 연장선에서 체육에 관한 논의는 학교의 병식체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1919년 『체육주보(體育周報)』는 “학교에서 병식체조를 폐지하면 안 되는가?”라는 주제

41) 최은진, 「중화민국시기 『교육잡지(教育雜誌)』와 서구교육지식의 수용과 확산」, 『중국근현대사연구』 82, 43-44, 50쪽.

42) 신체육이란 아동을 중심으로 개성과 사회성의 발달, 자연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체육의 교육 사조로, 이전까지 독일과 스웨덴식의 체조 중심 체육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체육의 개념이 ‘신체를 위한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전의 체육이 체육의 교육적 역할 자체를 무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전 시기에 비해 신체를 통한 교육을 주된 체육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체육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세기, 윤현수, 「미국의 체육 발달과 신체육 출현 과정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5를 참조.

43) 蔣夢麟, 「歐戰後世界之思想與教育」, 『教育雜誌』 10 : 5, 69쪽.

의 토론을 실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황싱(黃醒)은 자신의 주장이 독일의 전쟁 패배, 중국의 산둥 문제 등의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지했다.⁴⁴⁾ 이와 반대로 저장 제7사범학교의 체조교원 장바오천(張寶琛)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열강이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군국민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강국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군국민주의와 병식체조를 옹호했다. 그는 이후 국제 관계가 언제든 이전과 같은 세계대전, 또는 더 과거의 제국주의 침략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중국은 군사력 증강과 함께 군국민주의를 통한 군사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⁵⁾

병식체조 존폐에 관한 위의 논쟁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바오천의 경우 직접적으로 국제정세를 언급하며 중국이 병식체조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싱의 의견에서도 그가 대외적 사건들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은 당시 병식체조를 논하는 문제에서 해당 사건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국강병에 관한 논리 또한 해당 논쟁에서는 다루어지고 있다.

당시 병식체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은 “군대란 흥기와 같으며, 인도적이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잔인하게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병제(兵制)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공화국가에서는 민치(民治)의 정신을 발양해야 하는데 강권적인 군국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병식체조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 등을 논거로 세웠다. 병식체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강국이란 정예병들이 있어야 하고, 정예병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므로, 공화국가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지고 병식체조를 연습하여 군인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라던가 “공리란 결국 입에 발린 말일 뿐이고, 강권은 실행력이다. 공리를 수호할 강권이 없다면, 공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논거를 제시했다.⁴⁶⁾

정리하면 당시 병식체조의 존폐 논쟁은 혁명 이후 중국의 새로운 앞길을 만들어 나가는 문제와 연결되었다. 이는 1910년대에 이미 신체의 허약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 중국 사회의 기저에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주지한 것처럼 문제는 그 방향성에 있었다. 병식체조의 대상이 되었던 개인의 신체에 대해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은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일까? 이 논쟁에 참여한 이들은 표면상에서 국제 정세나 중국의 부국강병 등의 국가적 과제로서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Ⅲ. 새로운 국가·사회를 위한 체육과 국민의 신체

1. 체육에 내재된 국민 담론과 이상적 신체

병식체조의 존폐 논쟁에 마지막으로 의견을 냈던 난징 고등사범학교(南京高等師範學校) 체조과 소속의 장샤오시엔(江孝賢)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학교가 문명 건설에 종사해야 한다고

44) 黃醒, 「學校應否廢止兵操?」, 『體育周報』, 46, 1919, 11월 24일자 기사.

45) 장바오천의 논지는 간단하게 다른 국가들이 모두 그러했으므로 중국도 이를 모방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구조로 보긴 어렵다. 그의 핵심적인 논지는 과연 전후 세계에서 모든 국가가 국제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애초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헤이그 평화회의가 있었음에도 전쟁은 일어났으며, 전후 국제 연맹의 조직이나 군비 축소에 대한 약조 등의 국제적 협약 또한 헤이그 회의를 답습한 것이라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張寶琛, 「學校應否廢止兵操?」, 『體育周報』, 46, 1919, 11월 24일자 기사.

46) 黃醒, 「學校應否廢止兵操?」, 『體育周報』, 46, 1919, 11월 24일자 기사.

주장했다.

“혹자는 병식체조가 군국민의 정신을 양성하는데, 훗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는데 모두 이 정신에 의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또한 그렇지 않다. 한 국가의 생존이란 결코 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국가의 생존이란 도덕과 양호한 교육을 받은 국민에 의지하는 것이다. 결국 병식체조란 사람의 마음을 먹고 자라는 살육의 세균일 뿐이다. 최근 중국이 입은 전쟁으로 인한 화는 제1차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모두 이러한 정신을 숭배했기 때문이다.”⁴⁷⁾

나아가 그는 병식체조가 복종을 가르침으로써 모두가 감시 아래에 있고, 계급에 순종케 하며 두려움을 잃게 만든다고 말하며 이러한 교육은 스스로를 계발하려는 마음을 소멸시킨다고 지적했다.⁴⁸⁾ 황싱 또한 병식체조를 배운다고 곧장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도적, 강도 등의 형태로 변모할 가능성을 주장했다.⁴⁹⁾

이들의 언급은 단순히 강국을 목적으로 체육과 개인의 신체를 논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체육은 이상적 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 형성의 문제와 깊숙이 관계를 맺어갔고, 이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체육에 관한 논의들을 비교할 때 확실하게 드러난다.

1900년대 초 군국민 논의에서 국민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인으로 여겨졌다. 군국민의 신체는 언제나 ‘적으로 상정한’ 누군가를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정신과 신체를 갖추어야 했다. 차이어를 비롯해 군국민주의를 제창했던 이들은 이른바 “야만(野蠻)”이라고 불리는 것에 내재된 호전적 정신, 그리고 그에 의해 발현되는 공격적인 행위가 국민 개개인의 신체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긍정적인 방향의 발전이라고 인식했다.⁵⁰⁾

군국민주의에 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군사적 강대국들이 국민과 군인을 동일시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에 기초했으며, 개인의 수양과 영웅적 행위를 강조하여 모든 국민이 군대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대국이란 ‘애국적인 국민으로부터 힘과 경쟁력을 끌어낸’ 민족국가였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의식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강대국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⁵¹⁾

그러나 1910년대 등장한 논설들은 군국민주의의 특징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의 주종 논쟁에서 장위는 군국민주의가 강탈, 쟁취가 사회에 스며들게 한다면 이를 경계했고, 쉬이빙의 경우 체육의 본질이 타인을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천두슈(陳獨秀)의 「청년체육문제(青年體育問題)」에서 그 핵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군사화된 체육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병식체조를 전형으로 하는 군국민주의식 체육은 피교육자에게 질 나쁜 습관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논설

47) 江孝賢, 「學校應否廢止兵操?」, 『體育周報』, 46, 1919, 11월 24일자 기사. “有謂兵操能養成軍國民之精神也, 他日衛國保家, 皆惟此精神是賴, 故學校中應培植之. 是又不然也: 夫一國之生存, 非僅賴兵, 實賴其有道德與受良好教育之國民也. 若兵操者, 僅種人心以殺戮之菌耳. 吾國來所受之兵災, 與此空前之歐戰, 皆此精神之爲崇.”

48) 江孝賢, 「學校應否廢止兵操?」, 『體育周報』, 46, 1919, 11월 24일자 기사.

49) 黃醒, 「學校應否廢止兵操?」, 『體育周報』, 46, 1919, 11월 24일자 기사.

50) 차이어는 야만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지만, 야만의 신체로 문명의 영혼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량치차오 또한 유약한 문명은 야만의 무력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奮翮生, 「軍國民篇」, 『新民叢報』第3號, 1902, 65쪽; 梁啓超, 「論尙武」, 『新民叢報』第28號, 1903, 1쪽.

51) Nicolas Schillinger, *The Body and Military Masculinity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Lexington Books, 2016, 257쪽.

에서 “병식의 살인사상을 청년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⁵²⁾

군국민주의 체육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체육을 통해 개인의 신체에 살인 행위 또는 타인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교육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같은 교육이 공화, 민주, 자유의 이념을 통해 만들어져야 할 새로운 중국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군국민주의 체육은 결국 타인을 국가라는 명분을 통해 쉽게 해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교육을 받은 국민에게 국가라는 명분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개인의 이익, 영달, 만족 등이 대체한다면,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를 명분으로 할지라도 국민 개개인의 신체에 습관처럼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신과 행위’를 교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의론은 공민도덕을 함양해야 한다는 교육의 주종 논쟁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배경에 신체를 통한 교육이 강조되는 신체육의 영향이 존재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1910년대에 등장한 신체육은 신체를 통해 교육 이념을 주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전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체육의 교육적 성질이 강조되면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 자체의 목적보다 ‘체육을 통해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더하여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배경 또한 큰 작용을 했다. 신해혁명 이후 내부적 혼란으로부터 제기된 중국 사회의 문제점들 가운데에는 이른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1912년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량치차오는 이러한 국내의 혼란 상황에 대해 국성(國性), 즉 국가의 고유한 본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⁵³⁾ 이러한 국성은 국민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성질이다. 따라서 량치차오는民国 초기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중국의 혼란에 ‘국민의 성질 규정’이 근본적 문제임을 직시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15년 “나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왜 사람인지 연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다. 나는 중국 국민으로서 국민이 왜 국민인지를 연구하고, 중국 국민과 함께 상의할 것이다”⁵⁴⁾라고 말했던 그의 문제의식은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국민 양성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비판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체육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상적인 신체란 어떠한 것이었을까? 체육의 문제를 논한 것은 아니지만, 1915년 천두슈는 『청년잡지(靑年雜誌)』의 발간사격인 「경고청년(敬告靑年)」이란 글에서 청년들이 자주적이고 진보적이며 세계적, 실리적, 과학적, 민주적인 인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⁵⁵⁾ 체육 논의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가장 먼저 군국민주의에 빠져 폭력적인 인간이 되지 않고, 개인의 개성과 권리를 중시하며, 공화정신과 공민의 도덕을 함양한 인간이 되길 바랐다. 이러한 이상적 개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체육 속에 어떠한 형태로 스며들게 되었는지는 교육제도 상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2. 임술학제의 체육교과 변화

제1차 교육연합회에서 학제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교육연합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안건과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학제의 전반적인 개혁 이전에

52) 陳獨秀, 「靑年體育問題」, 『新靑年』 7: 2, 1920, 157쪽.

53) 정지호, 「梁啓超의 國性론과 中華民族의 新秩序 摸索」, 『동북아역사논총』 67, 2020, 94-99쪽.

54) 梁啓超, 「吾今後所以報國者」, 『飲氷室合集』 文集 33, 1994, 北京:中華書局, 53-54쪽. “夫吾固人也, 吾將講求人之所以爲人者, 而與吾人商榷之; 吾固中國國民也, 吾將講求國民之所以爲國民者, 而與吾國民商榷之.”

55) 陳獨秀, 「敬告靑年」, 『靑年雜誌』 1: 1, 1915; 陳獨秀, 「今日之教育方針」, 『靑年雜誌』 1: 2, 1915.

교육의 목적을 이전과 다르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1919년 4월 교육부에서 개최한 교육조사회의 제1차 회의에서 선언푸(沈恩孚)와 장명린(蔣夢麟)은 「교육종지연구안(教育宗旨研究案)」을 제출하면서 앞으로의 교육 취지는 건전한 인격을 양성하여 공화정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⁶⁾

교육 취지 변경의 원인으로는 우선 당시 시행되었던 교육제도의 ‘도덕교육을 중시하고, 실리교육과 군국민 교육으로 그것을 보충한다. 또한 미감교육으로 도덕교육을 완성한다’는 기본 목적이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다는 데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상황에서 군국민 교육이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공화정신을 쉽고 단순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⁷⁾

또한 중화민국(中華民國) 성립 이래 내환이 계속되었는데, 그 원인은 국민에게 공화정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를 발전시켜 국가의 근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화정신을 갖춘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개인이 건전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로써 사회와 국가로부터 갖는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⁵⁸⁾

1921년 제7차 전국교육연합회에서 「신학제계통초안(新學制系統草案)」이 통과되면서 학제의 개혁이 결정되었고, 다음과 같은 표준이 설정되었다.

1. 공화국체에 근거하여 평민교육정신을 발휘할 것.
2. 사회 진화의 요구에 알맞게 할 것.
3. 청년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선택과 자유를 제공할 것.
4. 국민의 경제수준에 주의할 것.
5. 각 지방에서 융통성 있게 처리할 여지를 남겨둘 것.
6. 교육이 쉽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것.⁵⁹⁾

이 의결안에서 모든 교육 계통은 초등·중등·고등 교육으로 나누어졌다. 이 단계는 아동의 심신발전시기를 근거로 6~12세를 초등 교육 단계로, 12~18세를 중등 교육 단계로, 18~24세를 고등 교육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새로운 학제는 아동의 개성과 지능을 고려하여 과목을 편성하고, 체계를 구상하는 아동 중심의 교육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⁰⁾ 이러한 점은 이전까지의 학제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제 개혁 이후 체육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임술학제가 제정된 것은 1922년이지만, 당시 제정된 학제의 내용은 원칙에 대한 내용들만 간략히 다룬 정도였다. 실질적인 세부 과목에 대한 조정은 대부분 다음 해인 1923년에 「과정강요초안(課程綱要草案)」이 공포되면서 이루어졌다.⁶¹⁾

56) 「1919年教育調査會：教育宗旨研究案」, 朱有璣 等 主編, 『中國近代學制史料』第3輯 上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06쪽.

57) 「1919年教育調査會：教育宗旨研究案」, 朱有璣 等 主編, 『中國近代學制史料』第3輯 上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06쪽.

58) 「1919年教育調査會：教育宗旨研究案」, 朱有璣 等 主編, 『中國近代學制史料』第3輯 上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06쪽.

59) 「1921年第7屆全國教育會聯合會議決案, 學制系統(辛酉學制) 草案」, 朱有璣 等 主編, 『中國近代學制史料』第3輯 下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760쪽.

60) 「1921年第7屆全國教育會聯合會議決案, 學制系統(辛酉學制) 草案」, 朱有璣 等 主編, 『中國近代學制史料』第3輯 下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762쪽.

61) 國家體委體育文史工作委員會, 中國體育史學會 編, 『中國近代體育史』, 北京體育學院出版社, 1989,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기존에 “체조과(體操科)”로 불렸던 것에서 “체육과(體育科)”로 개칭된 것을 들 수 있다. 청말 이래 학교 교육에서 약 2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체조과는 군국민주의를 앞장서서 보급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병식체조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군사적인 행위들을 가르쳤던 체조과를 체육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한 것이다.⁶²⁾ 이러한 명칭 변경은 체육이 체조라는 단순한 신체 활동 또는 단련이나 훈련의 개념을 넘어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⁶³⁾

또한 신학제에서는 중·소학교의 체육과정 중에 병식체조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신학제 이후 체조는 병식체조나 기존의 보통체조같은 경직된 자세로 이루어진 신체활동이 아닌,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1921년 상하이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나온 『방효체조(倣效體操)』에서는 “운동의 요지는 신체의 강건을 도모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이라는 것도 없다”⁶⁴⁾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체조 교육 방식의 변화와 함께 이전까지 병식체조 이외에 다른 체육활동들은 중시받지 못했던 반면, 육상·구기종목·유희 등이 신학제의 과정 초안에서는 교육의 주요한 내용을 채우게 되었다. 예컨대 1924년 왕샤오펑(王小峰)이 편집한 『소학체육설비법(小學體育設備法)』을 보면 당시 매우 다양한 체육활동들이 등장했고, 다양한 놀이를 위한 설비들이 편성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⁵⁾

1923년 『소학체육과과정강요(小學體育科課程綱要)』에서는 학생들이 각종 운동을 연습하여 신체의 균형 있는 발육을 하게 할 것, 유희에 대한 본능을 자극하여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사상을 발양할 것, 운동을 좋아하는 습관을 길러냄으로써 과감한 판단력과 용기 공동체 정신·겸양·심미 등을 만들어낼 것을 주지하였다. 특히 체육과 목표의 최저 표준을 정하면서 간단한 유희 또는 노래에 맞추어 즐기는 신체 활동을 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나 구기 및 육상 경기 등 경기체육 활동에 필요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⁶⁶⁾ 또한 놀이 시설들이 학교의 운동장에 설비로 설치되거나 관련 용품들을 갖추게 되었다.

나아가 학생들의 생리·심리상태에 부합한 교재들이 등장했으며, 이러한 교재들은 학생들의 적극성을 끌어내는데 유리한 것들이었다. 특히 초급 중학에는 생리와 위생에 대한 내용이 체육과목에 포함되었고, 고급 중학에는 위생법·건신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체육에 대한 교학법 연구가 중시되기 시작했는데, 과거 병식체조를 포함한 군사훈련만을 강조했던 체조과와 달리 다양한 신체활동들이 체육과목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교사들 또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밖에 없었다.⁶⁷⁾

117쪽.

62) 國家體委體育文史工作委員會，中國體育史學會 編，『中國近代體育史』，北京體育學院出版社，1989，118쪽.

63) 체조란 신체를 단련, 또는 훈련한다는 의미로 그 안에 교육적인 개념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체육이란 신체를 통해 교육적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體育科로의 명칭 변경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세기, 윤현수, 「미국의 체육 발달과 신체육 출현 과정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5, 2020.

64) 趙光紹 編，「倣效體操」，南開大學中國社會史研究中心資料叢刊，『近代體育遊戲教育史料彙編』第1輯 3卷，鳳凰出版社，2016，9쪽.

65) 『소학체육설비법』에는 축구장, 핸드볼장, 소프트볼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장이나 육상경기, 기계체조 등 기구를 이용한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장구류와 도구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체육 설비들이 편성되어 있다. 王小峰 編，「小學體育設備法」，『近代體育遊戲教育史料彙編』第1輯 3卷，鳳凰出版社，2016，141~147쪽.

66) 「小學體育科程綱要」，『教育雜誌』 15, 1923, 69-70쪽.

결과적으로 1910년대 체육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서 체육은 본능적인 활동을 발전시키고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며 사회적 행위를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신학제 개혁에서도 사회의 행위·도덕의 표준과 민주자치정신을 배양하는 것이 체육의 주요 임무라고 여겨지게 되었다.⁶⁸⁾

맺음말

종합하여 볼 때, 1900년대에서 1920년대 초까지 중국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체육 논의와 제도적 확립 과정은 근대 체육의 초기 발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또 다른 사회적 쟁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체육 속에 국민 담론이 내재되었다는 점이다. 군국민주의를 제창했던 지식인들은 강국이 되기 위해선 국민의 신체가 강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체개조론의 영향 아래 모든 국민이 군인의 신체를 가질 것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육은 국민을 군인으로 개조하는 역할에 앞장서서 군국민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1910년대 중반부터 제기된 군국민주의와 체육에 대한 비판과 신체육의 등장은 기존의 체육이 새롭게 탄생한 공화국가의 국민에게 ‘야만의 무력’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공격성, 즉 비문명적인 성격을 주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즉, 신해혁명 이후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중국의 지식인들은 병식체조와 군국민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국민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타인에게 물리적 타격을 입히거나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또한 임술학제의 체육 변화에서 알 수 있듯, 이상적인 국민의 신체란 ‘자유로운 개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격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로 심리적, 생리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완성된 인간을 말하였다.

결국, 1922년 임술학제가 발표되고, 각급 학교와 교과목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정해지면서 기존의 ‘체조과’는 ‘체육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변화가 뒤따라왔다. 가장 큰 변화라면 군국민주의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던 병식체조가 학교 교과 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진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신체육의 영향 아래 ‘신체를 통한 교육’의 이념이 자리 잡았고, 다양한 체육 활동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식인들의 새로운 국가, 사회의 건설 그리고 국민의 신체 소질 양성에 대한 이상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였다. 1927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자, 학교에서는 군사교육을 교육 체계에 집어넣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시 병식체조가 부활하고, 군이 학생들의 교련을 책임지게 되는 등의 상황이 나타났다. 하지만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초까지 지식인들이 그려왔던 새로운 중국의 새로운 국민,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였던 국민 개인의 신체 소질에 대한 이상은 긴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았다.⁶⁹⁾

이러한 신체 소질에 대한 교육은 이후 신체 소질 양성에 대한 정치적인 개입이 시작된 중

67) 國家體委體育文史工作委員會, 中國體育史學會 編, 『中國近代體育史』, 北京體育學院出版社, 1989, 117쪽.

68) 許義雄, 황호숙 역, 『軍國民教育 체육사상(1880~1918)』, 『中國近代體育思想』, 도서출판 황전, 2000, 378쪽.

69) 1929년 4월 18일 중화민국 정부에서 공포한 제정된 「국민체육법(國民體育法)」에서 중화민국의 청년 남녀라면 체육을 교육받을 의무가 있으며, 그 방법은 연령과 개인 신체의 강약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할 것 등이 명시되었다. 「國民體育法」, 『中國近代體育史資料』, 四川教育出版社, 2008, 78쪽.

화인민공화국 시기로까지 연결되었다. 현대 중국에서는 1951년을 시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파체조가 약 9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보급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광장무를 포함한 다양한 체조활동, 스포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1910년대 이루어졌던 국민 개개인의 신체, 그리고 체육에 관한 지식인들의 논의는 현대 중국에서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중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교련 훈련은 군국민 주의와 체육에 관한 논의 또한 여전히 잔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사료집

- 『教育雜誌』(1909-1948,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中華教育界』(1912-1937, 上海, 中華書局)
『東方雜誌』(1904-1948, 上海, 商務印書館)
『新青年』(1988, 上海, 上海書店)
『體育雜誌』(1914, 上海)
『學部官報』(1906-1911)
『順天時報』
『新民叢報』
『大公報』(天津)
國家體委體育文史工作委員會, 全國體總文史資料編審委員會, 『中國近代體育文選』 體育資料第17輯, 人民體育出版社, 1992.
南開大學中國社會史研究中心, 『近代體育遊戲教育史料彙編』 第1輯, 鳳凰出版社, 2016.
舒新城, 『中國近代教育史資料』,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81.
成都體育學院體育史研究所, 『中國近代體育史資料』, 四川教育出版社, 1988.
朱有璣 等, 『中國近代學制史料』,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3.
體育周報社, 『體育周報』, 湖南師範大學出版社, 2010.
梁啟超, 『飲冰室合集』, 北京: 中華書局, 1994.

2. 국문

- 가와시마 신, 천성림(옮김), 『중국근현대사2: 근대국가의 모색 1894~1925』, 삼천리, 2017.
강진아,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 창비, 2009.
耿雲志, 이호 역, 『근대 중국의 문화적 전환에 대한 연구』, 역락, 2019.
김유리, 『서원에서 학당으로: 청말 서원의 학당개편과 근대학제의 수립과정』, 한국학술정보, 2007.
문정진 외, 『중국 근대의 풍경: 화보와 사진으로 읽는 중국 근대의 기원』, 그린비, 2008.
미셸 푸코, 오생근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출판사, 2003, 292쪽.
볼프강 베링거, 강영옥 옮김, 『스포츠의 탄생: 고대 올림픽아부터 현대 올림픽까지』, 까치, 2021.
사카모토 히로코, 양일모·조경란(옮김),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인종·신체·젠 더로 본 중국의 근대』, 지식의 풍경, 2006.
양일모, 『근대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 태학사, 2008.
요시자와 세이치로, 정지호(옮김), 『애국주의의 형성: 내셔널리즘으로 본 근대중국』, 논형, 2006.
許義雄 等, 황호숙 역, 『中國近代體育思想』, 도서출판 황진, 2000.
김수연, 「근대국가 상상과 신체담론: 『良友』잡지와 海波문학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39, 2006.
-----, 「근대국가와 신체의 수사학: 晚晴소설 『華海花』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30,

- 2004.
- 김세기, 윤현수, 「미국의 체육 발달과 신체육 출현 과정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5, 2020.
- 김윤희, 「청년기 마오쩌둥의 체육철학 연구」,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3(2), 2015.
- 김동규, 「스포츠내셔널리즘의 형성과 맥락 : 새로운 시선」,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8, 2010.
- 손준종, 「근대교육에서 국가의 몸 관리와 통제 양식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6, 2010.
- 전인갑, 「帝國에서 帝國性 國民國家로(1) : 제국의 구조와 이념」, 『中國學報』 65, 2012.
- , 「帝國에서 帝國性 國民國家로(2) : 제국의 지배전략과 근대적 재구성」, 『中國學報』 66, 2012.
- 정지호, 「양계초의 ‘제국’론과 ‘대청제국’의 국제」, 『동양사학연구』 132, 2015.
- , 「량치차오(梁啓超)의 국성(國性)론과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신질서(新秩序) 모색(摸索)」, 『동북아역사논총』 67, 2020.
- 조성환, 「진화론과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 : 양계초와 장병린의 민족사상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16, 2010.
- 이경자, 「중국의 근대 학제 개혁」, 『한국교육사학』 42, 2020.
- 이병인, 「청말 교육제도의 건립과 국가 : 사회관계의 재조직」, 『중국지식네트워크』 6, 2015.
- 이성철, 유영환, 「중국 사회의 압축적 근대성과 체육변동」, 『한국체육과학회지』 17, 2008.
- 옥광, 하용용, 「중국 근대 스포츠문화의 사상적 기원(1840-1911)」, 『한국체육학회지』 44, 2005.
- 천성림, 「20세기 중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 문화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5, 2006.
- 최은진, 「중화민국시기 『교육잡지(教育雜誌)』와 서구교육지식의 수용과 확산」, 『중국근현대사연구』 82, 2019.

3. 일문

- 吉澤誠一郎, 『天津の近代』, 名古屋大學出版會, 2001.
- 佐藤愼一, 『近代中國の知識人と文明』, 東京大學出版會, 1999.
- 高嶋航, 「‘東亞病夫’と近代中國(1896-1949)」, 『近現代中國における社會經濟制度の再編 :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附屬現代中國研究センター研究報告』, 2016.
- 大村 興道, 「民國初期における教育思想の底流」, 『日本の教育史學』 2, 1959.
- 鈴木 明哲, 崎田 嘉寛, 中村 哲夫, 楠戸 一彦, 「中國の體育におけるC.H.マックロイの功績と貢獻 : 陶行知との接點を手がかりに」, 『體育學研究』, 2013.
- 林 陶, 「中國における學校體育目標とその歴史的形成過程に関する研究 : 「體力づくり」の位置づけを中心に」, 『日本教科教育學會誌』 24, 2001.
- 笹島 恒輔, 「中國學制の変遷に伴う學校體育の推移」, 『日本の教育史學』 7, 1964.
- , 「中國學校體育の制度史的研究 : 清朝末期より中華民國初期」, 『體育學研究』 11, 1967.
- 土屋 洋, 「清末の體育思想 : 「知育・徳育・體育」の系譜」, 『史學雜誌』 117, 2008.

4. 參考文獻

- 國家體委體育文史工作委員會，中國體育史學會 編，《中國近代體育史》，北京體育學院出版社，1989。
- 喻本伐，熊賢君，《中國教育發展史》，華中師範大學出版社，1991。
- 陳啓天，《近代中國教育史》，臺灣中華書局印行，1969。
- 蔡建國，《蔡元培與近代中國》，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1997。
- 黃金麟，《歷史，身體，國家：近代中國的身體形成(1895-1937)》，新星出版社，2006。
- 郭學松，「陳獨秀尚武思想研究」，《軍事體育學報》33，2014。
- 金富軍，「周治春在清華學校的教育思想與實踐」，《高等教育研究》27(10)，2006。
- 梁爾名，「全國教育會聯合會與壬戌學制」，《河北師範大學學報》12，2010。
- 梁爾銘，李小菲，「論1922年新學制課程標準的制定」，《教育與職業》14，2012。
- 劉建兵，張永汀，「試論清末學生體育觀的轉變」，《牡丹江大學學報》18，2009。
- 劉廣，「胡適體育教育思想深析」，《學校體育學》9，2019。
- 劉凌宇，趙亮，「五四精神與中西體育文化之爭」，《體育文化導刊》7，2013。
- 劉敏，「中國近代名將蔡鍔軍國民體育思想及其歷史價值」，《南京體育學院學報》31，2017。
- 劉世磊，「我國近代軍國民教育思想下的體育教學特徵及其當今鏡鑑」，《哈爾濱體育學院學報》39，2021。
- 劉勝杰·陳偉強，「馬約翰體育思想與實踐研究」，《體育文化導刊》1，2009。
- 劉宗靈，「身體史與近代中國研究」，《史學月刊》3，2009。
- 李社旺，劉丹婷，「軍國民體育的歷史必然性研究」，《體育文化導刊》5，2014。
- 李遠樂，張子沙，喻丹，「蔡鍔的軍國民體育思想初探」，《北京體育大學學報》32，2009。
- 武展，「徐一冰體育師資培養思想研究」，《黑河學院學報》1，2020。
- 席亞健，張廷，「『壬戌學制』與近代學校體育發展」，《軍事體育進修學院學報》30，2011。
- 柴雲梅，「蔡元培體育教育觀研究及其啟示」，《北京體育大學學報》40，2017。
- 伍小濤，「試析梁啟超的身體政治觀」，《東方論壇》2，2014。
- 伍小濤，「中國體育史：一種身體政治的視角」，《長江論壇》135，2015。
- 王建，易招華，「晚清時期體育教育的發展與演變」，《教育與科技研究》1，2011。
- 王華倬，鄭淑娥，「我國近代壬戌學制與體育課程的改革背景·特點及其歷史意義」，《北京體育大學學報》28，2005。
- 俞祖華，懷培安，「優生·強身·尚武：近代身體史視閥下的民族復興思想」，《人文雜誌》8，2020。
- 張愛紅，黃亞玲，徐翔鴻，「梁啟超“新民”體育思想之研究」，《北京體育大學學報》38，2015。
- 張曉軍，《近代國人對西方體育認識的嬗變(1840-1937)》，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2010。
- 鄭志林，趙善性，「我國近代體育教育家：徐一冰」，《杭州大學學報》4，1981。
- 趙富學，程傳銀，「徐一冰的體育教師教育思想研究」，《北京體育大學學報》39，2016。
- 周景暉，「中國近代體育思想演變研究」，《雲南社會主義學院學報》4，2014。
- 周小等·張威·劉靜民，「馬約翰體育思想對大學體育實踐的影響探究」，《體育教育》72，2013。
- 陳萬妮，潘華，「試論徐一冰對近代體育傳播的貢獻」，《四川體育科學》3，2008。
- 陳旭，「論魯迅體育思想的文化內涵」，《成都體育學院學報》，38，2012。
- 陳日升，劉斌，「爭鋒與反思：近代中國軍國民體育及其價值的再讀」，《論理學研究》4，2020。
- 何敘，「五四新文化運動時期陳獨秀的體育思想」，《教育探索》186，2006。
- 華丹，「從蔡元培體育觀看清末民初體育教育」，《林區教學》252，2018。

黃亦君, 「身體改造：清末民初的軍國民運動與國民覺醒」, 『教育文化論壇』 2, 2012.

영문

Andrew. D. Morris, *Marrow of the Nation : A History of Sports and Physical Culture in Republic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Susan Brownell, *Training The Body For China : Sports in the Moral Order of the People's Republic*,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Nicolas Schillinger, *The Body and Military Masculinity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Lexington Books, 2016.

Graham Gael, "Exercising Control :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in American Protestant Mission School in China(1880-1930)", *Signs* 20, 1994.

Chiung Tzu Lucetta Tsai, Lijun Zhou, "The history of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in China", *World Leisure Journal* 59, 2017

Lu Zhouxiang, "Sport, Nationalism and the Building of the Modern Chinese Nation State (1912-49)",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v 28, 2017.

Lu Zhouxiang & Fan Hong, "From Celestial Empire to Nation State : Sport and the Origins of Chinese Nationalism(1840-1927)", *The International of the History of Sport* 27, 2010.

4. 홈페이지

<http://www.sport.gov.cn/n16/n1092/n16849/312943.html>(검색일자 : 2020.11.25.)

<군국민에서 공민으로 청말민초 ‘체육’ 담론의 변화와 국민 만들기> 토론문

토론자 : 윤숙현

이 논문은 1900년대 중국 사회에 형성되었던 군국민주의 체육과 그 기저에 존재했던 신체 개조론의 영향, 그리고 1910년대 이를 비판하며 새롭게 등장했던 체육사조가 교육 속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는 지식인들의 군국민 교육 논의를 다루고 이러한 논의가 청말과 1922년 학제 개혁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국민만들기’의 일환으로 청말민국시기 체육 담론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는 신문과 잡지를 통한 다양한 체육 담론이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학제 개혁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신체 담론과 교육을 통해 근대 국민 만들기의 한 형태를 보여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토론자가 이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필자는 1900년대 신체 개조론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던 군국민주의 체육의 대두와 이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체육사조가 교육에 반영되어가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로 인해 필자는 ‘신문과 잡지를 통한 군국민주의 체육 담론의 변화’가 ‘학제에 반영되어 가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청조시기 ‘壬寅学制’와 ‘癸卯学制’에서 5·4운동이후 1922년에 시행한 ‘壬戌学制’개혁의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1912년 채원배의 <신교육의 의견>만 언급하고 1912, 1913년의 ‘壬子·癸丑学制’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1912, 1913년의 ‘壬子·癸丑学制’는 신해혁명이후 공화와 민주사상에 근거한 국민양성의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이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국민 만들기’를 위한 체육 담론이 학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려면 반드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따라서 청말에 시작된 병식체조의 폐지가 1922년 학제에서 이루어졌어도, 이 논문이 학제의 개혁을 중시하므로 청말, 1912, 1913년의 ‘壬子·癸丑学制’, 1922년 임술학제 각 학제 시기에서 나타난 담론의 변화와 지속의 측면을 언급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공민과 국민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데, 이 논문의 제목에서는 <군국민에서 공민으로: 청말민초 ‘체육’ 담론의 변화와 국민 만들기>인데, 군국민과 공민, 국민을 서술하고 있는지를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둘째, 필자는 군국민주의 체육 담론의 변화가 학제의 변화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군국민 체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학제 내용은 매우 간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이를 구체화하려면 실천의 측면에서 체육과 병식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셋째, 이 논문의 제목은 <군국민에서 공민으로: 청말민초 ‘체육’ 담론의 변화와 국민 만들기>이다. 먼저 제목에서는 시기의 구분을 ‘청말민초’로 한정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청말부터 1922년 임술학제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구성에 있어서도 1장은 청말 군국민의 논의와 제도화, 2장은 신해혁명이후 기존 체육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 과정을 논하고 3장은 청말부터 시작된 이러한 논의가 1922년 학제 개혁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3장의 (1) 1910년대 체육에 내재된 국민 담론과 이상적 신체’가 다시 청말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다가 (2) 1922년 ‘임술학제의 체육교과 변화’로 넘어간다. 따라서 3장의 (1) 장부분이 전개상 1장에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당시 교육계와 중국 사회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教育雜誌』, 『中華教育界』, 『東方雜誌』, 『新青年』, 『大公報』, 체육계 인사들이 발행하였던 『體育雜誌』와 『體育周報』 등의 잡지와 신문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라고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新民叢報』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920-30년대 상해 공공조계 행정 체계의 변화

김승래(도쿄대)

1 서론

중국사의 일반적인 흐름을 생각할 때, 1920년대는 커다란 변화의 지점이었다. 5·4운동으로부터 5·30운동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민족주의적 운동은 상해 공공조계(公共租界)의 행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시위 중이던 중국인 군중에 대한 공부국 경찰의 발포 사건은, 중국 국내에 조계 자치 행정을 담당하던 상해 공부국(工部局)에 대한 반감과 저항을 확산시켰다. 결과적으로 공부국은 고립되었으며, 영향력도 대폭 축소되었다.

이러한 공부국 영향력의 쇠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심공해(會審公廨)와 월계로(越界路, Extra-Settlement Road)¹⁾의 관할권 반환 교섭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회심공해는 조계 내에 존재하는 중국의 법정으로서, 중국인 간의 안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원고인 안건도 담당하는 혼합법정이었다. 본래 중국 지방 당국에서 관할권을 가지던 이 법정은, 신해혁명의 발발과 함께 조계 측에서 관할권을 장악하였다. 조계 측에서는 임시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중화민국 수립 이후에도 관할권을 반납하지 않았다. 1920년대에 들어서 회심공해는 국권 회수의 목표 중 하나가 되었으며, 결국 1927년 1월 1일부로 상해 임시 법원(Shanghai Provisional Court)로서 재편되어 중국의 관할하에 돌아갔다.

월계로란 공부국 또는 조계 거주 외국인 소유의 도로로서 조계 경계선의 외부에 부설된 도로를 의미한다. 월계로의 부설은 월계축로(越界築路)라고 불렸으며, 상해 조계의 초기부터 있었다. 월계로의 주변에는 점차 외국인을 포함한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그러자 1870

1) 월계축로를 가리키는 표현은 각 언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중국어에서 월계축로라는 표현을 조계 경계선의 외부에 도로를 건설하는 행위를 칭할 때 사용했다. 따라서 월계로는 그 행위의 결과로 건설된 도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영어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여, 중국어의 '월계로'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공부국이나 신문에서는 Outside Road, Extension Road를 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상해 공공조계 공부국의 요청에 의해 공공조계 행정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남겼던 리처드 피덤(Richard Feetham)은 External Road 및 Extra-Settlement Road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월계로를 표현하였다. 이 표현은 현대 유럽과 미국 등지의 연구에서도 여전히 주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영어의 경우 중국어의 '월계축로'와 같이 행위를 별도로 지칭하는 용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어 명칭도 존재하는데, 1930년대 일본에서 월계로를 가리켜 조계외도로(租界外道路)또는 계외도로(界外道路)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중국어의 용법대로 월계축로와 월계로라는 표현을 이용한다. 나아가 월계축로에 관한 영어 문헌에 등장하는 Extension Road Area라는 개념에 따라, 새로이 월계로 지구(越界路地区)라는 용어를 도입하고자 한다. 월계로 지구 월계축로의 결과 조계 행정의 영향권에 들어간 지역이다. 이것은 '월계로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조계 행정의 영향권인 지역'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년대 즈음부터 공부국은 개인 가맹 제도(Private Subscription)를 도입, 이 거주지에 유료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월계로 지구가 형성되었다. 이 제도는 점차 확대되어, 1900년대 초부터는 수도와 전기, 전화 등의 조계 인프라를 월계로 지구에 제공하는 대가로 별도의 특별세(Special Tax)를 부과하였다²⁾. 자연히 중국인들에게 월계축로는 조계 확장의 수단으로 생각되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이용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5·30운동 이후에는 월계로의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반환 교섭으로까지 이어졌다.

회심공해와 월계로의 사례는, 조계 행정의 영향력이 조계의 물리적 경계선, 또는 조계 행정의 범위를 정한 문서화 된 규정의 범위에 제약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조계 행정의 외연의 변화를 확인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들이기도 하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된 분야가 있는 한편, 비교적 검토할 내용이 남아있는 분야도 있다. 우선 회심공해 반환 교섭과 월계로 지구 내 조계 경찰의 운영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 회심공해의 반환 교섭에 대해서, 코테네프(A. M. Kotenev)는 1925년 이후의 회심공해 반환 교섭에 대하여, 그 과정을 상세하게 논하였다³⁾. 그는 회심공해 반환 교섭이 결과적으로 상해 임시 법원에 이어지는 배경을 외국인과 중국인 상인 계층의 현상 유지 지향에서 발견하였다. 또한 토마스 스티븐스(Thomas Stephens)는 1911년부터 1927년까지를 중심으로 회심공해의 반환 과정을 연구하였다.⁴⁾ 특히 법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측이 적어도 1917년부터 회심공해에서 집행된 형의 정당성과 근거 부족을 지적하였고, 그 결과 반환 교섭에 이르렀다는 것이 스티븐스의 관점이다. 다음으로 야오위안(姚遠)은 상해 임시 법원의 성립 과정과 그 특징 등에 주목하였다⁵⁾. 그 가운데 조계의 다양한 사법 문제가 반환 교섭 속에서 논의된 점을 들어, 상해 임시 법원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설치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월계로 지구에서의 경찰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프레데릭 웨이크맨(Frederic Wakeman, Jr.)의 연구를 들 수가 있다. 웨이크맨은 주로 1920년대부터 1930년대를 중심으로 상해의 치안 관리를 연구하였다⁶⁾. 그는 근대적 치안 관리 시스템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근대 국가 건설의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갑북의 경찰 기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월계로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조계 경찰과의 충돌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적 지방 자치 및 지방에서의 경찰 행정의 성립이 국권 회복의 논리에까지 발전하는 과정을 상세히 논하였다.

월계로 교섭에 대해서는 무라타 쇼이치(村田省一)가 주로 1934년부터의 월계로 지구 설정 교섭을 중심으로 그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⁷⁾. 특히 월계축로 문제를

2) 특별세는 기본적으로는 인프라 제공의 대가였으나, 인프라 회사와 공부국의 계약상 인프라 사용 요금은 회사가 별도로 부과하였다. 따라서 사실상의 세금이었다.

樊果『陌生的守夜人——上海公共租界工部局经济职能研究』(天津:天津古籍出版社,2012), 169-170쪽.

3) Anatol M. Kotenev, *Shanghai: Its Municipality and the Chinese*, Shanghai : North-China Daily News & Herald, Limited, 1927.

4) Thomas B. Stephens, *Order and Discipline in China: The Shanghai Mixed Court, 1911-27*,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2

5) 姚遠『上海租界与租界法權』(上海:上海三聯書店, 2016).

6) Frederic Wakeman Jr., *Policing Shanghai, 1927-1937*,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논하기 위해선 우선 월계로 지구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이 시기에는 또한 월계로 지구를 중심으로 조계 측과 중국 측이 근대적 도시 인프라의 제공 권한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상해의 근대적인 도시 인프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주로 인프라 도입과 중국의 근대 국가 설립 과정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840년대부터 1986년까지의 중국에서의 도시 인프라 사업의 역사를 정리한 상해시 공용사업관리국(上海市公用事業管理局)에 의한 연구를 들 수 있다⁸⁾. 따라서 1925년부터 1934년까지의 사이, 월계로 지구에서의 조계 인프라의 공급 체계가 중국 측에 의하여 대체되는 과정에 대해 조계 행정의 관점에서 검토할 여지가 남아있다.

종합하면, 조계 행정의 중심적인 요소들은 1925년을 경계로 하여 조계 내외에서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었다. 특히 1925년부터 중일 전쟁의 직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월계로 지구와 회심공해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이 공공조계의 역사 속에서 가지는 특별한 의미와 그것을 가능케 한 시스템의 존재를 잡아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조계 행정의 역사를 1920년대 중국의 근대 국가 건설 시도와 1930년 중일 간의 대립 격화 속에서 이해하는 관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장의 목적을 5·30운동 이후의 조계 행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회심 공해 반환 교섭, 월계로 지구에서의 경찰 관할권 문제와 인프라 관련 교섭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1925년 이후 조계 행정의 영향력 감소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월계로 지구에서의 행정 운영과 회심공해 관할권의 장악이 1925년의 시점까지 조계 행정 속에서 가진 위치에 대해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우선 상기 3가지 문제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회심공해 반환 교섭에 관하여, 조계 행정에 대한 영향을 논한다. 특히 반환 교섭에서 공부국의 반대 논리의 유무, 공부국 경찰에의 영향, 상해 임시 법원과 공부국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월계축로 관련 교섭에 대해 논한다. 여기서는 경찰 관할권의 문제와 인프라 관련 교섭을 다룬다. 우선 1927년의 상해 특별시의 성립을 계기로, 공부국과 상해 특별시 정부 사이에서 월계로 지구가 이미 관할권 분쟁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한 대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국은 왜 중국 측의 개입에 대처하지 못했는지, 왜 상해 영사단이나 북경 공사단으로부터 협력을 얻지 못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논하고, 5·30운동이 조계 행정에서도 큰 분기점이 되었다는 점을 검토한다. 또한 그 가운데 월계로 지구에서의 상해 특별시와의 공동 경찰 설립 논의와 특별세의 존속 문제를 위치시켜, 최종적으로 중일전쟁 직전의 조계 행정의 모습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회심공해 반환 교섭과 조계 행정에의 영향

7) 村田省一「1930年代における上海越界築路地域の確定と徴税問題について」, 森時彦編『20世紀中国の社会システム』(京都: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09).

8) 上海市公用事業管理局編『上海公用事業(1840-1968)』(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1).

19세기 중반 중국인 난민들의 조계 유입 이래, 조계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법적 문제 해결은 조계 사회의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것이 회심공해였다. 본래 회심공해는 중국의 법정으로, 청 지방 당국에서 재판관인 헌원(憲員)을 파견하였다. 외국인은 각국 영사가 지명한 회심관(Assessor)의 재판 방청만이 허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인들 간의 민사 소송이 잦았던 상해에서, 외국인들은 이익을 위해 회심공해 내에서 더 큰 발언권을 얻기를 원했다. 그 최종적인 결과가 1911년 신해혁명 당시 중국 지방 당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회심공해 관할권을 조계 측이 장악한 사건이었다. 이를 통해 조계 측은 조계 내에서 중국의 사법권을 이용할 수 있었다.

중화민국 수립 후, 새로운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회심공해 회수를 시도해왔다⁹⁾. 때문에 1925년 5월 30일의 발포 사건과 그 이후의 전개 속에서도 회심공해의 반환 문제가 다시금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의 6월 1일 『신보』에서는, 상해총상회(上海總商會)의 앞에 모인 학생들의 연설 속에 있었던, 공부국에 대한 몇 가지 요구안이 게재되었다¹⁰⁾. 그리고 그 가운데 제6조에는 회심공해의 회수가 명기되어 있었다.

상해총상회가 발표한 13조의 요구안 가운데에도 회심공해의 반환을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¹¹⁾. 이 요구안은 이후 북경 공사단으로부터 상해에 파견된 대표단이 중국 측의 대표단과 교섭할 때, 중국 측의 요구안으로서 제출되었다. 그러나 공사단의 대표단은 회심공해 문제에 대한 교섭을 거절하였다¹²⁾. 8월 중순에는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의견의 차이만 확인하였다¹³⁾. 중국 측은 회심공해의 운영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회심관의 활동을 배제, 회심공해 감옥의 관할권을 새로운 법원이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법정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공사단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계 측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1926년 3월 공부국 동사회는 수십 명의 중국인 명망가를 초대하여, 조계의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다¹⁴⁾. 이때 공부국 동사회 의장이었던 페센덴(S. Fessenden)은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연설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회심공해의 반환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관계국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피력하였다¹⁵⁾.

연설의 시기를 고려하면, 이 발언은 북경 공사단이 거절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계 측에 유리한 형태로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단, 페센덴은 회심공해의 관리가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의 이익에 관한 문제라고 하였다. 주지하듯이 공부국은 발포 사건 이후 중국 측으로부터 조계 행정에 중국인의 참가 및 공부국 동사회에 중국인 동사의 선출 등의 요구를 받고 있었다. 만일 그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경우, 바로 이 중국인 명망가들이

9) 張笑川『近代上海閘北居民社会生活』(上海：上海辭書出版社，2009)，pp.63-64.

10) 『申報』1925年6月1日，「南京路發生慘劇後之昨日形勢」.

11) 『上海公共租界工部局董事會會議錄』23, Jun. 14, 1925, “Students Riot and General Strikes”, pp.93-94. 이후 『회의록』으로 통일.

12) 이승휘, 「五卅事件과 上海 公共租界 工部局」(『중국근현대사연구』21, 2004), 11-12쪽.

13) Kotenev, *op.cit.*, pp.173-174.

14) “The situation in Shanghai explained”, The North-China Herald, Mar. 20, 1926.

15) Ibid.

새로운 중국인 동사로 선출될 터였다. 그래서 페센덴은 미리 그들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회심공해를 현재의 중국 정부의 13조 요구안에 따라 반환하는 것은 중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조계 내 기득권의 포기로 이어졌다. 따라서 현상 유지가 가장 바람직한 방침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회심 공해의 문제를 지역 수준의 문제로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¹⁶⁾.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절강 독판(浙江督辦)손전방을 중심으로 상해 영사단이 교섭을 담당하게 되었다¹⁷⁾. 그리고 1926년 8월에 반환 합의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북경 공사단과 상해 영사단이 각기 초안에 동의하였다. 그 결과 1926년 8월 31일에 「회수 상해 회심공해 잠행 장정(收回上海會審公廨暫行章程)」이 발표되었다¹⁸⁾. 그 내용은 총 9개조로서, 그 가운데 제1조, 제3조와 제4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⁹⁾. 특히 제1조는 다시 갑부터 경까지 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그중에서도 갑 항에서는 강소성 정부가 회심공해를 임시 법정으로 개조하고, 영사 재판권의 대상인 안건 이외의 모든 조계 내 민형사 안건을 담당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여 1927년 1월 1일부터 상해 임시 법원이 설립되었다. 또한 제1조의 을 항에서는 임시 법원에서 사용할 법률로서 중국의 현행법과 장래 시행될 중국 법률에 더해, 회심공해에서 이용해온 소송 관례 안에서 이 장정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회심공해의 관례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하는 점은 다른 조항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3조에서는 임시 법원의 부속 감옥을 공부국 경찰로부터 파견된 인원이 관리하도록 정하되, 단 관리 방식을 중국의 감옥 관리 규정에 따라 임시 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임시 법원에서 발행하는 영장과 명령의 집행을 사법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법 경찰은 공부국 경찰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되었다. 제1조 세칙에서는 회심관의 권한을 재판 참관으로 한정하고, 판결이나 영장 및 명령이 시행에 회심관의 서명이 필요했던 규정을 폐지하였다.

결국 상해 임시 법원은 회심공해의 제도와 관례를 다수 유지하였으며, 또한 조계 경찰의 영향력도 여전히 강했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사법 경찰로서 공부국 경찰이 파견되었다는 점은, 이전과 같이 공부국 경찰이 영장의 집행이나 감옥의 관리, 재판의 진행 보조 등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회심관의 권한 축소 등의 조치들은, 중국 측으로부터 본다면 최소한의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중국 측에게 임시 법원의 설립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회심관 제도의 정비는 중국인 재판관의 재량을 상당히 보장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조계 안에서 영사 재판권의 대상이 되는 소송 이외에는 모두 임시 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전까지는 중국 정부가 조계에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기에, 상해 임시 법원은 분명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조계 행정의 면에서 회심공해의 반환과 임시 법원의 설립은 현재 공부국이

16) "Rendition of the Mixed Court", The North-China Herald, May 22, 1926.

17) "Rendition of the Mixed Court", The North-China Herald, May 1, 1926. 당시 공사단과 중국 정부는 발포 사건의 조사와 그 후의 대응 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Kotenev, op.cit., pp.178-179.

18) 姚遠, 전게서, 95쪽.

19) 姚遠, 전게서, 182-184쪽.

놓여 있는 상황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임시 법원의 설립은 회심공해와 관련된 관행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5·30운동 속에서 중국 측은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국권 회수를 목적의 하나로 하였으며, 상해에서는 회심공해의 회수와 중국인 공부국 동사의 선출도 그러한 요구 중의 하나였다. 이에 대하여, 공부국은 가능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공부국 동사회는 중국인 명망가들에 대하여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 같은 기득권층으로서 공통 인식을 형성하려 하였다고 생각된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것은 공부국만이 아니었다. 사실 상해 영사단은 5월 30일의 발포 사건 등에 관한 조사 과정 가운데 공부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부국 동사회가 발포 사건에 관한 독자적인 조사의 발표 여부를 영사단에 문의하였을 때, 당시의 영사단 의장 데 로시(de Rossi)는, 현재 그러한 발표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현 상황 가운데 공부국과 영사단의 계속적인 협력(co-operation)이 불가결하며,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²⁰⁾. 또한 1925년 7월, 사건 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북경 공사단으로부터 상해 영사단에 보내진 결의문의 내용에는 공부국의 해산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적혀 있었으나, 이에 대해 영사단 의장과 영미일 총영사가 강력히 반론을 제기하였다²¹⁾.

결국, 영사단과 공부국은 일치한 이해를 가지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상해 임시 법원의 설치였다. 이에 따라 공공조계의 행정 체계는 우선 극적인 변화는 없는 채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5·30운동의 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존의 행정 체계는 궁극적으로는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3 5·30 운동 이후의 월계축로 문제

월계축로는 1920년대에 들어서도 신설 및 기존 월계로의 확대·연장이라는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수도 등 조계 인프라의 이용에 따른 특별세의 과세도 여전히 시행되었다. 공부국 경찰은 월계로 지구 내에서 치안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공부국의 영향력이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월계로 지구와 월계축로는 사실상의 조계 확장 시도와 같이 이해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전반에 들어서 신민로(新民路)와 대서로(大西路)등의 월계축로가 중국 측으로부터 문제시되었다. 갑북 지역에서는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자치적인 도시 행정이 발전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월계로 지구에서 공부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했다. 특히 갑북의 자치 행정 기구가 갑북 근린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을 파견하자, 같은 지역에서 경찰 서비스를 운영하던 공부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그 가운데 1925년 6월에 상해총상회가 공부국에 대해 제출한 13조의 요구안에는, 조계 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요구와 함께, 월계축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²²⁾. 요구

20) 『회의록』23, Jun. 4, 1925, “Students Riot and General Strike”, pp.71-72.

21) 이승휘, 전개논문, 50-51쪽. 『회의록』23, Jul. 4, 1925, “The Diplomatic Imbroglio”, pp.112-116.

22) 요구안이 13조에 달했던 이유에는, 그 배경에 공부국의 새로운 인쇄물 관련 조례 개정 등 여러 면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공부국 정책에 대한 반대가 5월

안의 제11조에는 「경계선을 넘어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제한한다. 공부국은 조계 경계선을 넘어서 도로를 건설하지 않는다. 이미 건설된 도로에 관해서는 무조건 중국 정부에게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었다²³⁾. 이 요구가 제출된 뒤, 일시적으로나마 월계축로는 실제로 중지되었다. 그러나, 월계로의 반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요구의 수락 여부는 애매한 상태였다. 이 점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공부국이 월계축로를 중지하였으나, 월계로 반환의 요구는 무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⁴⁾.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시 공부국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적은 바와 같이 공부국은 영사단의 요구에 따라 상해총상회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요구안에 회심공해의 반환을 포함한 다양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공부국 단독으로 결정해 회답하기 어려웠다. 이렇듯 요구안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하는 것조차 영사단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던 공부국이, 월계축로 문제에 대해서만 수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시기 조계 측은 가능한 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쪽으로 처신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월계축로의 일시적 중지는 13조의 요구안이 일부 수용된 결과가 아닌, 오히려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를 회피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공부국에게 있어서 13조의 요구안보다도 문제시되었던 것은 중국군이 상해에 주둔하게 된 점이었다. 발포 사건 직후 중국 지방 당국의 요청에 따라 장학량이 군을 이끌고 상해에 와 있었다. 그런 가운데 1925년 6월 15일, 월계로인 대서로와 케즈윅로(Keswick Road)의 교차 지점 인근에서 영국인이 중국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²⁵⁾. 이 건에 대하여 장학량은 6월 17일 공부국에게 연락하여, 사건 현장의 방위를 위하여 조계를 통과해 부대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²⁶⁾.

공부국은 중국 측이 이 사건을 구실로 대서로 인근 월계로 지구의 관할권을 회수하려고 들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²⁷⁾. 동사회는 만일 이 지역의 도로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경우 매우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17일에 장학량의 연락을 받았을 때, 공부국은 이를 월계로 관할권의 문제로 인식하여 거절하였다.

다음날인 18일에는 장학량과의 회담이 진행되었는데, 장학량은 법화 지역(法華地域)²⁸⁾에 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⁹⁾. 단 그는 부대의 주둔지를 공부국 소유의 도로에서 떨어진 장소에 두겠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공부국이 장학량을 비교적

30일의 발포 사건 이후 나타난 보이콧 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은 상해 조계의 경우에서만 볼 수 있었던 특징이었다. 吉澤誠一郎『愛国とボイコット』(名古屋:名古屋大学出版会, 2021), 202-210쪽.

23) 『회의록』23, Jun. 14, 1925, “Students Riot and General Strikes”, pp.93-94.

24) Wakeman, *op. cit.*, p.339.

25) “British Consul Protests Slaying of Mackenzie to High Chinese Authorities”, The China Press, Jun. 17, 1925.

26) 『회의록』23, Jun. 17, 1925, “General Strikes”, p.100.

27) 『회의록』23, Jun. 16, 1925, “General Strikes”, p.98.

28) 법화 지역은 상해현 내에서 조계로부터 서부에 위치한 농촌 지역으로, 지방 자치 실시 이후에는 법화향(法華鄉)으로 불렸다. 高橋孝助「1920年代はじめに至る上海県法華郷の変遷—消滅しつつある小さな水郷—」(『宮城教育大学紀要』第25巻第一分冊人文科学・社会科学, 1990).

29) 『회의록』23, Jun. 18, 1925, “General Strike”, p.101.

협력적이라고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³⁰⁾. 6월 19일의 동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장학량은 월계로에 관한 공부국의 관할권을 인정한다고 발언하였다³¹⁾. 물론 장학량이 그러한 권한을 가졌는지의 문제가 남아있었지만, 당시의 공부국에게는 현재 눈앞에 있는 중국군이 공부국의 월계로 지구 관할권을 침범할 것인지가 더 중요했다. 공부국 동사들은 중국군의 치안 유지 활동을 허용하면 공부국이 충분히 치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였다³²⁾. 공부국은 이 당시 월계축로를 진행 중이었으며, 조계 내외의 치안 문제로 경찰 인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월계로 지구의 치안 확보는 중요했다. 결국 달리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던 공부국은, 공부국 소유 도로에 주둔하지 않는 조건으로 장학량의 부대와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³³⁾.

한편 또 다른 문제는 월계로 지구 내 중국 경찰의 활동이었다. 특히 1926년 3월부터 손전방은 상해의 서부 월계로 지구에 경관을 파견하여 순찰하도록 하고 있었다³⁴⁾. 이것은 이 지역 내 공부국의 영향력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었다. 당연히 공부국 내에서도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공부국 경찰 쪽에서는, 공부국이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중국 측에서는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할 것이기에, 강경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⁵⁾.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국 내부는 물론 영사단 내에서도 논의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6월경에 영사단과 중국 당국 간 협의가 시작되어, 월계로 지구에서의 중국 경찰을 철수시키는 데에 합의하였다³⁶⁾. 또한 현재 중국과 외국 사이에 진행 중인 교섭에 대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교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특별세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시기의 특별세 문제는 공부국 라이선스(Licence)의 관리와도 연관되어,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공부국은 조계 내에서 주점 등 특정한 사업을 하거나 위험물의 소지, 특정한 직업의 취득 등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이들을 관리해왔다. 라이선스는 온전히 공부국의 관할로서, 공부국 경찰이 담당하여 관리하였다. 공부국 경찰은 정기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사업장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만일 규정이 지키지지 않은 경우, 시정 조치 또는 라이선스 박탈도 가능했다.

하지만 당시의 치안 불안 속에서, 라이선스 관리도 어려워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카페와 주점 등의 라이선스는 본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이를 엄수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동사회에서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³⁷⁾. 그러나 라이선스 규정 위반을 단속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공부국의 영향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이미 프랑스 조계 측

30) 『회의록』23, Jun. 19, 1925, "General Strike", p.102.

31) Ibid.

32) 『회의록』23, Jul. 6, 1925, "New Roads beyond Limits", pp.118-119.

33) Ibid.

34) Wakeman, *op. cit.*, p.66.

35) 『회의록』23, Jul. 9, 1926, "Functioning of Chinese Police on Municipal Roads", pp.267-268.

36) 『회의록』23, Jul. 23, 1926, "Functioning of Chinese Police on Municipal Roads Outside Limits", p.272.

37) 『회의록』23, Oct. 21, 1925, "Licensing of Cafes", pp.169-170.

에서도 프랑스 관할 하의 점포에 대해 공부국 라이선스의 적용을 무시하고 있었다³⁸⁾. 동사회는 월계로에 접한 점포들에게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기로 하였으나,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한편으로 공부국은 특별세 정책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갑북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미 월계로 지구의 특별세 납부 대상자들은 특별세를 공부국과 중국 지방 당국 중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³⁹⁾. 실제로 1926년 중엽에는 특별세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특별세의 수입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동사회에 접수되었다⁴⁰⁾. 특별세의 납부 거부에 대한 공부국의 기본 방침은 단수 등의 공급 중단 조치였으나, 동사회는 여기에 더해 중국 측의 개입을 배제할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사회 내에는 납세 거부자의 비율이 비교적 작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영미 총영사도 지금 당장 과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공부국은 이 문제에 대해 그다지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물론 공부국이 특별세의 징세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특별세 제도는 그 징세 액수와 상관없이 월계로 지구 내에서 조계 인프라를 제공할 때 공부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특별세는 월계로 지구에 대한 공부국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동사회는 특별세 제도의 중요성을 다른 정책보다도 높게 판단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부국 전기 부문에서는 특별세 납세 거부 문제에 관한 내부 논의 중, 오히려 월계로 지구에서 공부국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주민의 경우 특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⁴¹⁾. 아마도 이는 특별세의 면제라는 이점을 부여하여 전기 부문의 가입자 수를 늘리고자 하는 목적의 제안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동사회는, 원칙적으로 「특별세의 납부와 관련된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 우선 사항이며, 전기 부문의 수입 감소는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특별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액이나 면제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관점이었다. 특히 공부국의 전기 부문은 공부국 소유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여, 공부국 공공 인프라 정책 내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납세 거부에 의하여 전기 부문의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전기의 공급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은, 동사회가 전기 부문보다도 특별세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국으로서는 중국 측 공공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갈수록 심화되어, 1927년 초에는 스콧로(Scott Road)근린의 특별세 대상 지구 전체로부터 징세가 어려운 사태까지 발생하였다⁴²⁾. 이 지구에서는 중국의 세금 사무소에서 발행한 각 가구의 등록 번호판이 공부국의 등록 번호판 위에 덧씌워지듯

38) 『회의록』23, Nov. 18, 1925, "Cafes", p.184.

39) 『회의록』23, Jul. 21, 1926, "Collection of Rates and Police Protection beyond Settlement Limits", pp.281-282.

40) Ibid. 공부국의 추산에 의하면 월계로 지구 내 징세 대상 가옥의 약 10%가 납세를 거부하고 있었다.

41) 『회의록』23, Aug. 4, 1926, "Electricity Supply in Outer Western Roads", pp.290-291.

42) 『회의록』23, Feb. 9, 1927, "Collection of Municipal Rates beyond Settlement Limits", pp.378-379.

설치되었다. 동사회 내에서는 강경론과 신중론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엔 영사단 및 교섭원공서(交涉員公署)와의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공부국은 1927년 5월이 되자 방침을 바꾸어, 특별세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인프라 공급의 대가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또한 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은 가옥에 대해서는 근린의 가옥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인프라의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⁴³⁾. 그리고 6월부터는 경찰 서비스도 동일한 관점에서 대응하기로 하였다⁴⁴⁾.

이렇듯 공부국이 특별세의 징수를 중시한 이유는 월계로 지구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만이 아니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공부국의 재정 그 자체였다. 이제까지 공부국이 금융 면에서 신용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조계 운영을 통해 건전한 재정 구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었다⁴⁵⁾. 그런만큼 5·30운동 이래 조계 내외의 혼란은 공부국의 신용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그러한 불안으로부터 이미 공부국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찰 예산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재정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었다⁴⁶⁾.

이에 따라 공부국은 교섭원공서와 남경 정부가 저항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지만, 교섭원공서도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 외에는 가능한 것이 없었다. 그 결과, 공부국은 다시 한번 중국인 사회의 대규모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4 월계로 반환 교섭과 조계 행정

공부국은 1927년에 들어서 세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진행하며, 동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할 예정이었다⁴⁷⁾. 세율 인상의 대상은 조계의 지세(地稅)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일반세(General Municipal Rate)였다. 하지만 특별세는 일반세의 세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중국인 납세자들의 저항이 예상되었다. 공부국은 영사단이나 교섭원공서와 연락을 취하여 대응책을 강구하였으나, 그다지 효과 있는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부국은 1927년 7월부터 일반세 증세를 감행하였고, 당연히 중국인 납세자들의 납세 거부가 이어졌다. 일반세 인상 직후부터 조계 거주 중국인들 간에는 납세 거부의 움직임이 나타났다⁴⁸⁾. 그 뒤 공부국과 중국인 납세자 사이에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이 시점에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월계로 지구에서는 조계 내의 납세 거부와 관련되어 특별세의 납세 거부도 이어지고 있었다. 공부국의 징세 담당자들은 북사천로 근린 등의 월계로 지구에서 특별세의 징수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⁴⁹⁾. 그러나 당시 납세화인회(納

43) 『회의록』23, May 25, 1927, "Collection of Special Rate beyond Settlement Limits", p.444.

44) 『회의록』23, Jun. 8, 1927, "Collection of Special Rate beyond Settlement Limits", p.450.

45) Isabella Jackson, *Shaping Modern Shanghai : Colonialism in China's Global Cit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23-24.

46) Wakeman, *op. cit.*, pp.69-70.

47) 『회의록』23, Jun. 28, 1927, "Protest against increase of General Municipal Rate", pp.456-459.

48) "Municipal Gazette News", The North-China Herald, Jul. 18, 1927.

稅華人会)와의 교섭이 진행 중이었기에⁵⁰⁾, 공부국으로서는 교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단수 조치 등의 대응을 취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특별세의 납세 거부는 중국인들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 시기, 특별세 납세 거부의 중심이었던 북사천로 근린의 월계로 지구에는 이전부터 일본인 거리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상해 일본인 사회의 중심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일본인 거주민 가운데 일본인 거리가 비상시에는 조계의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특별세의 납부를 거부하는 케이스가 나타났다⁵¹⁾. 이 때문에 인프라 공급의 차단 조치가 더욱 어려워졌다. 동사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영사단과도 논의하였으나, 영사단도 교섭 중에 강경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반대였다.

이처럼 월계로 지구에서 공부국이 영향력을 잃어가는 양상은 경찰권의 문제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중국 측은 지속적으로 월계로 지구의 경찰권을 회수하려 해왔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르면, 실제로 일부의 월계로의 경찰 관할권을 중국 측이 장악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예를 들어 1927년 10월에는 홍교로(虹橋路 Hungjiao Road)에서 공부국 경찰과 중국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⁵²⁾. 공부국은 파출소를 설치 여부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경찰 관할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해당 도로에서 철수하게 되었다⁵³⁾. 그 뒤에는 중국 경찰이 홍교로 상에서 순찰을 하게 되었다. 심지어 1928년이 되면, 북사천로에서 중국 경찰이 공부국의 등록 번호판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었다⁵⁴⁾.

이렇듯 공부국의 경찰권의 동요는 특별세 수입에도 영향을 주었다. 홍교로의 건에서 보듯 이 공부국 경찰이 일부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한 경우, 공부국은 해당 지역에서 공부국의 경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그만큼의 재정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상기한 북사천로의 건에서는 총 5곳에서 특별세의 징세가 어려워져, 그 손실은 연액 약 8천 달러에 이른다고 계산되었다⁵⁵⁾. 이것은 20년대 일반적인 공부국의 전체 수입 속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비율이었으나, 공부국의 수입에서 세금의 비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공부국의 지출은 확대 일변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기도 하였다⁵⁶⁾.

또한 공부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서부 월계로 지구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예측이 제시되었다. 공부국의 조사에 의하면, 북부와 서부의 월계로 지구를 둘러싸고 총 21곳의 중국 경찰서가 관할 구역을 두고 운영되고 있었으며, 각기 15명에서 100명까지의 경관이 활동 중이었다⁵⁷⁾. 이 경찰서들은 주로 북부 월계로 지구를 중점적으

49) 『회의록』24, Feb. 15, 1928, “Collection of Special Rate”, p.20.

50) 蒯世勳「上海公共租界華董產生的經過」(徐公肅外著『上海公共租界史稿』上海：上海人民出版社，1980)，564—568쪽.

51) 『회의록』24, May 30, 1928, “Collection of Special Rate in Northern Area”, pp.69-70.

52) 『申報』1927年10月6日，「取締華產向外人註冊之進行」.

53) Wakeman, *op. cit.*, p.67.

54) 『회의록』24, Feb. 29, 1928, “Chapei Authorities and Dixwell and North Szechuen Roads Extension”, pp.25-26.

55) 『회의록』24, Mar. 14, 1928, “Chapei Authorities and Dixwell and North Szechuen Roads Extension”, pp.29-30.

56) Jackson, *op.cit.*, pp.28-47.

57) Ibid.

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서부 월계로 지구에서도 이미 근린의 중국 경찰서들과 관할이 중복되는(dual control)상태에 있다고 지적되었다. 결국 서부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상황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실제로 1930년대가 되면 대서로에 중국 측 경찰서가 설치되었으며, 그 외의 월계로 인근에서도 중국 경찰이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⁵⁸⁾.

그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남경 국민 정부와 상해 특별시가 성립을 기점으로 월계로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1928년 10월에는 상해의 국민당부가 남경 정부에 연락해, 조계 측에 월계로의 반환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였다⁵⁹⁾. 민간에서도 각마로상계연합회(各馬路商界連合會)로부터 월계축로의 위법성을 비판하는 성명이 발표되는 등⁶⁰⁾, 월계축로 문제에서 공부국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런 가운데 공부국이 1925년 이래 추구해왔던 현상 유지의 방침은, 적어도 이 시기의 월계축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부국의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한 방패처럼 작용하였다. 현상 유지가 제시된 것은 공부국의 과격한 조치를 통제하기 위해서였지만, 오히려 공부국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30년이 되면, 피덤(Richard Feetham)이 상해에 도착하여, 조계 행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⁶¹⁾. 조계 측과 중국 측 모두 피덤의 조사 결과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1931년이 되어야 비로소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그사이 대서로의 연장 공사를 둘러싸고 공부국과 상해 특별시 간의 충돌이 있었다. 특히 상해 특별시의 시장은 공부국이 토지장정의 제6조를 근거로 하여 월계축로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 토지장정의 제2조에 의하면 월계축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⁶²⁾. 토지장정 제2조란 외국인이 토지를 빌리거나 가옥을 구입할 때에는 조약에 근거하여 해야만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었다. 아마도 그는 2조의 조문 내에「기존의 경계선 안에서(within the said limits)」라고 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이렇게 주장하였다고 생각된다. 월계축로가 조약 위반이라고 하는 관점은 청조의 시기에도 이미 존재하였으나, 이 주장은 토지장정으로부터 근거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 문제는 1931년 3월까지 논의가 이어진 결과, 중국 측이 대서로의 연장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⁶³⁾.

1931년 7월에 피덤 보고서의 마지막 제3권이 발표되었다. 발표 직후 동사회 회의에서는 보고서에서 제안된 월계로의 공동 관리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였다⁶⁴⁾. 그리고 7월 24일에는 상해 특별시 정부와 교섭원공서와 협의를 시작하였다⁶⁵⁾. 이 교섭은 1932년에 잠정 합의안의 작성까지 성공하였다⁶⁶⁾. 그 내용은 월계로 지구에서 상해 특별

58) "Policing Outside Roads", The North-China Herald, Jul. 22, 1922.

59) "Agitation against Outside Roads", The North-China Herald, Oct. 27, 1928.

60) "The Outside Roads Again", The North-China Herald, Mar. 9, 1929.

61) 『회의록』24, Jan. 22, 1930, "Appointment of Judge Feetham", pp.309-310.

피덤은 남아프리카 출신의 법률가로, 이미 인도 등에서 유사한 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경력이 있었다. 피덤의 조사는 공부국이 의뢰한 것으로, 공부국은 이 조사를 통해 공부국 주도의 조계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62) "The Road Policing Question", The North-China Herald, Jun. 24, 1930.

63) "Outside Roads Question", The North-China Herald, Mar. 24, 1931.

64) 『회의록』25, Jul. 15, 1931, "Outside Roads", p.84.

65) Wakeman, *op.cit.*, pp.217-218.

66) "Outside Roads Negotiations", The North-China Herald, Jun. 28, 1932.

시 정부가 경찰 관할권을 보유하나, 공부국 경찰은 긴급 시에 월계로 지구까지 경관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⁶⁷⁾. 또한 이전 공부국과 계약을 맺은 인프라 회사들은 상해 특별시 정부가 계약을 인수하기로 결정되어, 공부국 특별세의 폐지는 기정사실이 되었다⁶⁸⁾.

그런데 공부국도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는데, 도로와 하수도의 관리 및 상해 특별시 정부의 대리로서 월계로 지구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가능했다. 물론 징수한 세금은 상해 특별시의 세금이므로 공부국의 수입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아마도 월계로 지구에 여전히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력을 지역 내에 어떤 식으로든 남겨두기 위한 요구였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 잠정 합의는 영사단 내에서 논의되던 중 일본 측의 강한 반대에 의하여 승인받지 못하였다. 일본 측은 새롭게 조직된 월계로 지구의 경찰 기구 내에 일본인을 반드시 일정 수 이상 배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반대로 중국 측에서는 해당 기구 내에 외국인 경찰을 다수 배치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⁶⁹⁾. 1935년에는 월계로 지구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는 등 약간의 진전이 있었으나⁷⁰⁾, 전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을 맞이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논의가 난항을 겪으며 결론을 내지는 못하였으나, 1928년부터 1937년까지 월계로 지구에 대한 공부국의 영향력은 이미 기능 부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고 생각된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관할권은 공부국이 가지고 있었을 터이지만, 이 시기에는 다시금 납세 거부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공산주의자에 대한 대응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었다. 따라서 특별세와 개인 가맹 제도는 이미 이전과 같이 충분히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중일전쟁의 발발 후, 조계의 「고도(孤島)」시대가 시작하면서, 공부국은 이전처럼 월계로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5 결론

조계 행정의 관점으로부터 생각하더라도, 5·30운동은 공공조계의 행정체계를 크게 흔들었던 대사건이었다.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공부국은 교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동을 제한당하는 등, 현상 유지를 요구받았다. 그 사이 회심공해의 반환 교섭이 진행되어, 1927년에는 상해 임시 법원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공부국은 중국의 사법권을 전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공공조계의 행정 체계도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동 시기 월계로 지구에서는 납세 거부와 경찰 관할권 문제가 등장했다. 이 시기 공부국은 현상 유지 방침 때문에 특별세의 납세 거부 문제에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조계 경찰은 월계로 지구에서 중국 경찰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1928년에 들어서도 공부국은 현상 유지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조계

67) Wakeman, *op.cit.*, pp.217-218.

68) 예를 들어 전화 서비스는 1933년 잠정 합의에 도달하여 1934년에 중국 측의 인수가 확정되었다. "Telephone Agreement", *The North-China Herald*, Apr. 26, 1933. "Permanent Phone Pact Sought", *The North-China Herald*, Jun. 6, 1934.

69) "S.M.C. had the Outside Roads", *The North-China Herald*, Sep. 20, 1933.

70) 村田省一, 전계논문, 303-308쪽.

내외에서 중국인 민간단체와 중국 지방 당국에게 월계로 지구의 기득권을 반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었다. 결국 공부국은 전문가 피덤의 조언에 따라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공부국이 예상과는 약간 다른 결론이었으나, 피덤은 실제로 공부국에게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해주었다. 공부국은 이에 근거하여 상해 특별시 정부 및 교섭원공서와 협의하여, 월계로 지구 문제의 해결에 근접해갔다. 그러나 일본 측의 요구가 논의를 지연시켜, 결국 중일전쟁 개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리하자면, 5·30운동 이래 공공조계의 기존 행정체계는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그 가장 큰 계기는 회심공해의 반환과 납세 거부였다. 또한 배경으로서 5월 30일의 발포 사건 이래 공부국의 기본 방침으로서 요구되었던 현상 유지 방침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공부국은 거의 대부분의 대응 수단이 봉쇄된 가운데 3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시점에서 기존의 조계 행정 체계는 사실상 이미 해체된 것과 같았다.

「1920-30년대 상해 공공조계 행정 체계의 변화」(김승래)에 대한 토론문

김승욱(충북대)

이 논문은 상해 조계행정의 외연을 관찰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으로 회심공해, 월계로의 사례를 지목하고, 그것을 둘러싼 중,서 간의 관할권 분쟁의 추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1920~30년대, 특히 5·30운동 이후 조계 행정의 변화(결론적으로는 영향력의 축소 또는 해체, 붕괴) 양상을 살펴본 글이다. 상해 조계의 행정 체계에 관한 연구는 근대 이후 상해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분야이지만 그 동안 사료 장악 등의 한계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으며, 특히 민족주의적 시각 하에서 그 행정 체계를 시스템 자체로 놓고 분석, 평가하는 작업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왕의 연구에서 여지로 남겨진 공백을 메우면서 기존 연구 시각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량해가는 데 시사를 던져주는 실증 성과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세밀한 사안에 대해서 논하기보다, 필자가 개별 논문으로서 구성과 논리를 견고히 하는 데 혹 고려하면 좋을 듯한 문제들에 대해(이 글은 필자의 박사논문 가운데 한 장을 분리해 별도의 논문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략히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조계행정에서 월계로 지역의 의미에 대해

필자는 회심공해, 월계로의 사례가 조계행정의 외연을 관찰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로 지목하고 이를 분석했는데, 이를 통해 공공조계 행정체계의 변화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계행정의 외연을 관찰할 수 있는 사례는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또한 월계로 지역은 조계행정에서 주변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를 통해 조계행정 변화의 전반적인 면모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듯하다. 물론 박사논문의 다른 분석과 함께 읽어야 할 부분이지만 개별논문으로서의 논지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결론 부분의 서술이 다소 거친 일반화로 받아들여진다. 분석된 내용을 반영하자면 “1920~30년대 조계 행정체계 변화”라는 제목의 분석 주제보다 “월계로 지역 관리에서의 공공조계 행정력의 영향력 추이”에 초점을 두고 서술을 압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월계로 사례의 지역적 특성(다른 조계 지역과 비교해서)에 대해 더 분명히 논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관할권 분쟁의 교섭 주체들에 대해

필자는 회심공해, 월계로 지역 관할권을 둘러싼 중,서 간의 분쟁이 전개된 양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그 교섭 주체들 간에 어떤 입장 차이가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주지하듯이 이 시기 상해에서는 국민혁명 하에서 이 지역의 관리 주체를 둘러싸고 큰 격변이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는 조계 권력(공부국 등), 중국 권력(국민정부, 지역 군벌 등)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변수로 작용했던 주체들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도 언급하고 있는 5·30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했던 화인참정안과 같은 자치운동, 시정운동의 흐름은, 이후 국민정부에의

‘합류’가 있기 전에 별도의 교섭 주체로 다룰 필요가 있을 듯하다. 공부국과 영사단의 입장도 비록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내포한 의미에 대해 더 충분히 서술하면 좋을 듯하다.

3. 중,서 이원론의 시각

필자는 조계 행정 체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20년대 중국의 근대 국가 건설 시도와 1930년 중일 간의 대립 격화 속에서 이해하는 관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이 연구가 민족주의적 시각, 요컨대 중,서 이원구조의 시각을 넘어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실제 논지의 전개 방식과 결론을 보면 이러한 의도를 달성했는지 다소 의문을 갖게 된다. 필자가 의도한 이원론적 구도를 벗어난 시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적으로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건국 초기 부녀연합회의 선전 역량 확대

- 상해시 항미원조운동을 중심으로 -

손동훈(고려대학교)

<목차>

I. 들어가며

II. 上海市 婦女聯合會와 抗美援朝運動

1. 건국 초기 선전과 부녀연합회의 역할
2. 항미원조운동의 전개

III. 항미원조 宣傳의 개시

1. 부녀연합회의 時事宣傳과 反美大衆運動
2. 愛國公約·捐獻運動

IV. 선전의 심화

1. 6.1 호소와 선전 조직의 확대
2. 修訂愛國公約運動
3. 武器捐獻運動

V. 나가며

I. 들어가며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中國共產黨(이하 중공)은 새롭게 接管한 도시에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구축하고 간부를 훈련시켜야 했다. 행정력이 不備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여러 정책은 대부분 대중을 동원하여 실행했다는 특징이 있다.¹⁾ 대중운동의 발동에는 강압보다는 그들의 정치의식(“政治覺悟”)을 提高시켜 정책 실행에 대한 공감과 적극성을 이끌어내고자 했고, 이를 위한 선전(propaganda)이 매우 중요시되었다.²⁾ 본고는 이러한 선전 수행의 실재와 발전 양상을 건국 초기 최대의 정

- 1) 박상수, 「1950년대 중국 혁명 연구의 다섯 가지 논쟁적 테제 述論」, 『史叢』 第85輯, 2015, 177-182쪽.
- 2) 「黨在宣傳戰線上的任務」(1951.5.2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二冊, 中央文獻出版社, 1993, 297쪽. Julian Chang에 따르면, 당-국가의 건설에서 인민 대중들의 높은 정치의식은 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이었으며, 선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었다. Julian Chang, “The Mechanics of State Propagand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 the 1950s”, in Timothy Cheek and Tony Saich eds, *New Perspective on State Socialism in China*, Routledge, 2015, p.76.

치-사회동원 운동이었던 抗美援朝運動 속에서 婦女聯合會의 활동을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중공은 한국전쟁을 통해 민족주의적 열정과 애국주의를 자극함으로써 신정권의 합법성을 인민들에게 입증하고자 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사회 각계각층의 열정을 전 국가적 이슈를 향해 쉽게 결집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³⁾ 항미원조운동은 동시기에 전개된 土地改革, 反革命鎮壓運動과는 달리 특정 사회-정치적 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사회계층과 부문에 걸쳐 전개되었으므로, 건국 초기 여러 조직의 선전 역량은 이 대중운동을 거치며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각지각처의 항미원조운동 가운데 본고는 上海의 基層⁴⁾, 즉 里弄⁵⁾에서 婦女聯合會(이하 부련)가 전개한 항미원조 선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 상해의 기층 사회는 중공의 혁명 근거지였던 농촌과 비교해 인구가 밀집해 있고 주민의 분산성, 이동성이 강한 공간이었다. 또한 시민 중 대다수는 里弄의 '조직되지 않은 군중(無組織群衆)'으로서, 공장, 학교, 기관 등 소속 직장(후일의 '單位')의 부서 및 기술을 통해 관리되는 '조직화된 군중(有組織群衆)'과는 달리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선전에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里弄의 주민들을 이후 居民委員會로 수렴되는 자치 조직과 부련을 활용하여 동원하고자 했다.⁶⁾ 무조직 군중의 대부분은 노동인민의 家屬, 즉 노동자의 배우자가 차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전의 중심은 부녀자 계급의 대중조직인 부련이 되었다.⁷⁾ 따라서 상해의 里弄에서 부련의 항미원조 선전을 탐구하는 것은 제한적이었던 부녀 대중에 대한 영향력 확대 과정을 미시적 차원에서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건국 초기 선전 공작들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⁸⁾ 그중 항미원조운동에 주

3) 박두복 編著,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164-168쪽.

4) 손장훈은 기층을 정부가 설치된 최말단 행정단위보다 하부에 위치한 지부, 위원회, 파출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손장훈, 「中華人民共和國 初期(1949-1959) 上海市 '기층 국가(grassroots-state)'의 구조와 작동 -里弄 주민 관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쪽. Jeremy Brown과 Matthew D. Johnson은 기층이라는 용어가 지방, 현, 공사, 그리고 지방 공무원과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괄한다고 설명한다. Jeremy Brown and Matthew D. Johnson eds, *Maoism at the Grassroots: Everyday Life in China's Era of High Soci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4. 기층 탐구의 의미에 대해 Ching Kwan Lee와 Yong Hong Zhang은 기층에 집중하는 것은 정부에 요구하는 불만 있는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정부가 안정 유지 관행을 통해 지역사회로 더 깊이 확장하는 근원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Ching Kwan Lee and Yong Hong Zhang, "Seeing like a Grassroots State: Producing Power and Instability in China's Bargained Authoritarianism", in Vivienne Shue and Patricia M. Thornton eds, *To Govern China: Evolving Practices of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301.

5) 上海의 里弄은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전근대 시기 里는 縣 이하의 행정구역을 일컫는 것이었고,弄은 작은 골목(小巷)을 의미하는 남방 방언이었다. 張濟順, 『遠去的都市: 1950年代的上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5, 366쪽. 본고에서는 里弄을 基層 공간의 일부로서, 單位(기업, 공장, 학교 등)를 제외한 인민들의 실제 '거주 공간'을 나타낸다.

6) 高麗와 徐選國은 상해시 H區 부련의 사례를 기반으로 대중조직이 국가와 개인을 연결하는 매개체였다는 점을 언급한다. 高麗, 徐選國, 「中央群團改革視域下地方婦聯購買服務的實踐邏輯及其理論擴展-基與對上海H區的經驗觀察」, 『婦女研究論叢』, 2020年 第2期. Wang Zheng 또한 부련의 조직들은 국가와 여성 사이의 "가교(bridge)" 혹은 "연결 고리(linkage)"의 역할을 하며 국가 정책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Wang Zheng, *Finding Women in the State: A Socialist Feminist Revolu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64*,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7) 손장훈, 앞의 글, 87-91쪽.

8) 건국 초기 선전과 관련된 연구의 대다수는 宣傳·報告員制度를 통한 선전망 확대에 주목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王炎, 「新中國歷史上的宣傳網制度」, 『中共黨史資料』, 2007年 第3期; 硃至剛, 「試析建國初期宣傳網的建立和撤銷: 以黨的組織力量考察背景」, 『現代傳播(中國傳媒大學學報)』, 2012年 第11期; 代天喜, 「建國初期宣傳教育工作及其啓示」, 『長江大學學報(社科版)』, 2017年 第4期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郭雲峰은 北京市 선전부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선전 기제의 작동을 다섯 단계로 구

목한 연구들은 상이한 관점에도 대체적으로 선전 확대와 운동 사이에 밀접한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⁹⁾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앙의 지시나 『人民日報』의 기사들을 중심 자료로 활용하며 단편적인 수치만을 제공하거나 운동의 결과에만 집중하여 구체적인 ‘과정’은 짚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선전의 작동이 국가 에이전트 이외에 대중조직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대중조직의 선전 과정에 대한 집중적 사례 분석은 선전의 확대에 대한 심화된 이해에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의 탐구 대상인 부련의 향미원조 선전을 연구한 것으로는 판덩성(范登生)과 진징(金晶), 스신(士心)의 것을 들 수 있다. 판덩성은 北京의 부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선전을 진행하며 향미원조운동에 투신해 왔다는 점을 규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광범위한 선전 공작은 기층 부녀조직의 건립을 촉진시켰고, 그러한 조직들은 북경에서 부녀들의 향미원조운동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게 했다.¹⁰⁾ 진징과 스신은 蘇南 지역 부련의 사례를 제시하며 부련의 각 하부조직들과 여러 회의를 통해 중앙의 지시를 전달하고, 부녀대표가 각 지역의 부녀 대중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단계적 운영으로 기층에까지 선전이 파급되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¹¹⁾

본고는 선행 연구들의 학술적 성과에 기반하면서도 상술한 연구들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내지 못한 기층에서의 선전 역량 확대와 그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향미원조운동 중 부련의 時事宣傳, 反美大衆運動, 그리고 愛國公約 및 捐獻와 관련한 선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탐구하여 선전 조직의 작동과 형성 과정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부련의 기층에 대한 선전 역량 확대, 나아가 대중조직을 매개로 한 선전이라는 국가 권력 운용 기제의 한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上海市 婦女聯合會와 抗美援朝運動

1. 건국 초기 선전과 부녀연합회의 역할

건국 초기, 국가 건설(State-Building)에 들어간 중공에게 선전은 토지개혁부터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획들을 실행해 가는데 불가결한 것이었기에, 선전의 확대는 우선적인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¹²⁾ 당정은 『人民日報』를 비롯한 신문, 라디오, 좌담회 등을 활용하여 당의 이념을 전파하고 각종 운동에 따른 선전을 진행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방식들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인적 자원’과 ‘대중조직’을 이용한 선전이었다.

인적 자원의 활용은 당원뿐만 아니라 非당원 인력인 선전원을 통한 것으로써 당의 선전 역량

분하기도 한다. 그는 각 단계가 엄밀하게 연결되어 선전공작이 상급의 요구에 따라 순조롭게 전개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郭雲峰, 「建國初期的中共宣傳制度(1949-1956年)-以北京市爲例」, 『首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9年 第1期.

9) 먼저 향미원조운동이 선전의 범위 확대를 야기했다는 주장으로는 최승현, 「중국의 “향미원조운동” 시기 선전동원네트워크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第83輯, 2017; 楊麗萍, 「1949-1952年宣傳員制度建設研究」, 『當代中國史研究』, 2019年 第3期; 劉少華, 「建國初期中共建立宣傳網初探-以南京地區爲中心」, 『安慶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1年 第8期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는 대조적으로 선전망의 형성이 향미원조운동을 활성화시켰다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 예컨대, 孫丹, 「論抗美援朝戰爭的國內宣傳工作」, 『當代中國史研究』 2009年 第4期; 黃利新, 「論北京市城區基層組織在抗美援朝運動中宣傳工作」, 『北京社會科學』, 2011年 第5期를 들 수 있다.

10) 范登生, 「抗美援朝運動中的北京婦女」, 『北京黨史』, 2009年 第2期.

11) 金晶、士心, 「蘇南婦女的抗美援朝運動」, 『檔案與建設』, 2010年 第5期.

12) Julian Chang, *op. cit.*, p.76.

확대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전원은 1950년 이래 각지에서 선발되어 공작에 투입되었고, 본고의 연구 대상인 상해에서도 1951년 초까지 1,200여 명이 활동하며 항미원조 운동을 비롯한 각종 운동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¹³⁾ 이와 같은 선전원의 활용은 1951년 1월 1일의 「全黨의 인민군중에 대한 선전망 건립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全黨建立對人民群眾的宣傳網的決定)」¹⁴⁾을 통해 전국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층에서 선전을 진행하기 위해 선전원을 활용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상해시의 경우 그들의 절대적인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분포가 불균형하여 대부분이 공장과 학교 등 단위에 집중되어 있었다.¹⁵⁾ 상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층 인민들에게 선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중조직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¹⁶⁾ 여러 대중조직은 항미원조운동 기간 동안 각종 선전 활동을 수행했고,¹⁷⁾ 특히 부련은 노동자의 배우자와 가족의 비중이 큰 상해 기층 里弄의 특성상 선전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상해시 부련의 건설은 1949년 3월 中華全國民主婦女聯合會(이하 전국부련)의 성립 이후, 동년 6월 36개 부녀단체 연합이 장윈(章蘊)을 주석으로 하는 上海市民主婦女聯合會籌委會를 설립함에 따라 시작되어 1950년 8월 上海市第一屆婦女代表大會에서 정식 성립되었다.¹⁸⁾ 이는 인민정부의 방침과 정책에 따라 부녀 군중들을 대상으로 선전, 조직,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인민정부에게 부녀 군중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¹⁹⁾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 기층 里弄에서 원활한 공작을 위해 부련은 그 하부조직인 家庭婦女聯合會(이하 가정부련)와 婦女代表會議(이하 婦代會)를 적극 활용했다. 먼저 가정부련은 가정부녀들을 정부의 모든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도록 하고 상해시의 각종 건설 공작에 참가시키도록 한다는 목적 아래, 각 區에 가정부련 분회를 설치하여 里弄에서 항미원조, 冬防, 反特 등의 임무와 그와 관련된 선전을 진행했다. 이로써 부녀들을 집 밖으로 나서

13) 예를 들어, 동북지역에서는 1950년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 東北局 선전부의 공작소조가 瀋陽의 皇姑屯 철도공장에서 선전원 건립을 시험했고, 黑龍江省 肇東縣의 현 위원회와 鞍山市, 撫順市의 시 위원회 또한 3-4월 간 선전원을 배양했다. 또한 5월 工礦企業宣傳工作會議 이후 瀋陽, 大連 등의 공장에 선전원을 두었다. 수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동북지역에서는 1950년 말 이미 117,283명의 선전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人民出版社編輯部 編, 『怎樣建立宣傳網』, 人民出版社, 1951, 13; 85; 86쪽.

14) 해당 결정에서는 당의 각급 조직이 선전을 소홀히 함에 따라 발생하는 반동적인 선전, 유언비어를 극복하고 상시적인 선전망 건립을 위해 선전·보고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선전원을 “당과 인민대중을 연계하는 중요한 가교”라 일컬으며 당이 직접 관리하고자 했다. 「中共中央關於在全黨建立對人民群眾的宣傳網的決定」(1951.1.1.),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第二冊, 1-5쪽.

15) 1952년 12월 31일 上海市의 선전원은 57,685명으로 인구의 1.01%를 담당했는데, 그 구성을 보면, 공장의 선전원이 35,003명, 가도 5,350명, 학교 5,408명, 기관 5,011명, 농촌 3,531명, 기타 2,280명, 里弄 1,102명이었다. 段春義, 「新中國初期的對人民群眾宣傳網建設-以上海為例」, 『黨的文獻』, 2016년 第5期, 98쪽. 楊樹浦區의 경우, 18명의 선전원이 8개의 공장에 나누어져 있었고, 蓬萊區에서는 38명의 선전원이 3개의 학교와 4개의 공장에 분포해 있었다. 常熟區에서도 18명의 선전원 중 6명이 6개 공장에, 12명이 8개의 학교에 분포하고 있었다. 『怎樣建立宣傳網』, 97쪽; 101쪽.

16) 중공중앙은 지시를 통해 선전원과 더불어 당의 지도 아래 공회, 청년단, 부녀단체 등 군중단체의 선전을 장려했다. 「中共中央關於健全各級宣傳機構和加強黨的宣傳教育工作的指示」(1951.2.25.),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第二冊, 76-77쪽.

17) 상해시 紡織工會의 경우 시사선전을 위해 책임자를 공장에 파견하여 시사 보고를 진행했고, 다양한 문화 오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전을 진행했다. 「中國紡織工會上海市委員會關於抗美援朝運動的初步總結(草案)」, 1951년 7월, 檔號: A22-2-45. 青年團 또한 항미원조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군사간부학교 학생 모집 선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馬聖強, 「抗美援朝初期上海市動員學生參加軍事幹校述評」, 『韓國研究論叢』, 2006년 第1期.

18) 上海市婦女聯合會 編, 『上海婦聯六十年』,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0, 2쪽.

19) 「關於城市婦女工作的幾個問題」(1950.9.18.), 中華全國婦女聯合會 編, 『蔡暢、鄧穎超、康克清 婦女解放問題文選』, 人民出版社, 1988, 199쪽.

게 하고(“走出家門”) 민주선거의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하여 짧은 기간 동안 4만 명 이상의 부녀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기본적인 기층 부녀대표조직의 건설을 완료했다.²⁰⁾ 婦代會는 10-20 戶로 편제한 거민 소조마다 조직된 부녀 소조에서 각 1명씩 부녀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되었다.²¹⁾ 婦代會는 부녀 군중의 의견과 요구가 빠르게 반영되도록 했고, 임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街道辦事處의 지원 아래 識字班, 夜學, 讀報組 등을 건립하여 이전까지 사회 활동이 많지 않았던 가정부녀들을 공동체의 임무에 동원했다.²²⁾

상해시 부련은 1950년에 이르러 기본적인 구조와 조직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는 市級 조직에 한정되었을 뿐, 기층 조직들의 발전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항미원조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까지 시 부련과 가정부련은 기층의 부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里弄의 동원을 담당하는 婦代會 또한 소수의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련에 대한 부녀들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부녀대표, 적극분자를 충원할 필요가 있었다. 1950년 중반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항미원조운동은 그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이에 따라 부련의 선전 역량은 기층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2. 항미원조운동의 전개

한국전쟁 개전 이후 중국은 1950년 10월 이전까지 참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적으로는 외교전을 펼치고, 대내적으로는 반침략운동을 전개했다.²³⁾ 항미원조운동은 10월 19일 군사적 개입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양상에 따라 ‘초보적 단계’와 ‘심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초보적 단계는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까지로 時事宣傳과 反美大衆運動, 그리고 愛國公約·捐獻運動이, 이후 1952년 초까지의²⁴⁾ 심화 단계에서는 修正愛國公約運動과 捐獻武器運動이 수행되었다. 단계의 전환은 단순히 세부적인 운동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의 경험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1950년 10월 26일 당은 미군의 조선 침략과 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해 인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과 控訴 등의 방식으로 친미(親美), 숭미(崇美), 공미(恐美) 사상을 적대시(仇視), 경멸(鄙視), 멸시(蔑視)의 태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 시사 선전 진행에 관한 지시(中央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이하 10.26 지시)²⁵⁾를 발표했다. 해당 지시 이후, 각 기관은 항미원조운동의 대중적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사선전과 반

20) 『上海婦聯六十年』, 4쪽; 1951년 7월까지 上海의 모든 區에서는 가정부녀 대표회의가 조직되었다. 1951년 말까지 전 시 20개 구에 가정부련이 설치되었고, 120개의 派出所 범위의 위원회, 위원 1,257명, 총대표 6,150명, 기층 대표 36,739명이 있었다. 「上海市婦聯關於抗美援朝的各項工作報告」, 1951년, 檔號: C31-1-41(文件 제목을 확인할 수 없어, 案卷 제목으로 대신한다).

21) 손장훈, 앞의 글, 88쪽.

22) 『上海婦聯六十年』, 4쪽.

23)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1950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를 ‘평화선언 서명운동 주간’으로 설정했고, 중국세계평화보위대회(中國保衛世界和平大會)는 8월 13일 통지를 발표하여 해당 운동을 더욱 확대하고자 했다. 나아가 ‘미국의 타이완과 한반도 침략에 대한 중국인민반대운동위원회(中國人民反對美國侵略臺灣, 朝鮮運動委員會)’는 7월 17일부터 한 주 동안을 ‘미국의 타이완과 한반도 침략 반대운동주간’으로 지정하여 활동할 것을 지시했다.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部 著,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編,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第1卷,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이하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72-74쪽).

24) 항미원조운동은 명목상 휴전까지 전개되었으나, 1952년 중반부터 휴전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일 단락되고 선전공작은 三反·五反 등의 운동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 孫丹, 앞의 글.

25) 「中央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1950.10.26.), 中共中央宣傳部辦公廳, 中央檔案館編研部 編, 『中國共產黨宣傳工作文獻選集(1937-1949)』, 學習出版社, 1996, 139-142쪽.

미대중운동을 시행하고 운동의 진행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항미원조총회²⁶⁾는 각 민주당파와 인민단체로 하여금 적극분자와 연계하여 대규모 군중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시사·정치 교육의 보급을 통해 인민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도록 만들라고 촉구했다.²⁷⁾

시사선전과 반미대중운동으로 고취된 애국 열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애국공약운동과 기부운동으로 발전했다. 애국공약운동은 1950년 11월부터 北京, 天津, 上海 등의 대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었고, 1951년 2월 2일 중공중앙의 「진일보한 항미원조 애국운동 전개에 관한 지시(關於進一步開展抗美援朝愛國運動的指示)」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²⁸⁾ 이는 공약을 통한 각급 기관과 인민의 통제, 그리고 인민의 단결을 통한 애국심의 함양을 목표로 했다. 기부운동은 인민들이 위문편지, 위문대(慰問袋), 위문금 등으로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을 지원 하는 것이었다. 1950년 말부터 다수의 기관과 조직은 기부를 장려했고, 1951년 1월 14일 항미원조총회의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을 위로하고 조선난민을 구제하는 사업을 발기하는 것에 관한 통지(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關於在全國發起慰勞中國志願軍和朝鮮人民軍及救濟朝鮮難民的通知)」에 따라 기부는 더욱 확대되었다.²⁹⁾

상술한 초보적 단계는 전체 흐름 속에서 향후 진행되는 운동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인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참여를 독려할 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강제하는 모습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51년 6월 항미원조총회가 「애국공약, 비행기와 대포 기부, 열속과 군속 우대에 관한 호소(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關於推行愛國公約、捐獻飛機大炮和優待烈屬軍屬的號召)」(이하 6.1 호소)를 발표하면서부터 항미원조운동은 강력한 영도 아래 진행되었다.

심화단계에서는 수정애국공약운동과 무기기부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기존의 운동들에 있던 동원의 한계, 선전의 공백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인민 대중을 상대로 한 동원이 강화되었다. 먼저, 수정애국공약운동에 대해 항미원조총회는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자신의 업무(일상생활, 생산 공작, 학습 등)에 기초하여 항미원조를 둘러싼 구체적인 공약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수정하도록 했다.³⁰⁾ 이 과정에서 수정애국공약운동은 단순히 애국적 구호를 외치는 것을 넘어, 당-국가가 인민의 일상생활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생활 운동으로 발전했다. 무기기부운동은 인민지원군의 열악한 장비를 지원한다는 표면적인 목적 아래 전 인민의 생산과 기부가 촉구되었다. 이 대중운동은 단순한 무기 기부를 넘어 애국운동의 일환으로 국가 건설을 강화하고 인민의 생활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³¹⁾

심화 단계를 거치며 이전에 존재하던 동원 능력의 미비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주목해야 하는

26) 10.26 지시 이후 중국세계평화보위대회와 미국의 타이완과 한반도 침략에 대한 중국인민반대운동위원회의 대표들은 전국에서 항미원조운동을 통일 지도하기 위해 두 조직을 합병하여 ‘중국인민 세계평화 보위 및 미국침략반대위원회(中國人民保衛世界和平反對美國侵略委員會)’(1951년 3월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로 개칭)를 설립했다. 또한 동북, 화북, 화동, 중남, 서남, 서북 6대 행정구와 내몽고 자치구는 ‘항미원조총분회’를 설립하고 각 성과 시에는 ‘항미원조분회’를 설치하여 각각의 행정구와 도시의 운동을 지도했다.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第1卷, 285-286쪽.

27) 「中國人民保衛世界和平反對美國侵略委員會關於當前任務的通告」(1950.11.22.),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宣傳部 編, 『偉大的抗美援朝運動』, 人民出版社, 1954.(이하 『偉大的抗美援朝運動』), 66쪽.

28) 대도시의 상공업계에서는 애국공약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경영, 물가안정, 자진납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人民日報』, 1950年 12月 28日 社說: 「中共中央關於進一步開展抗美援朝愛國運動的指示」(1951.2.2.),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二冊, 26-27쪽.

29) 예컨대, 南京市 인민들은 중국의 인민지원군이 평양을 수복한 이후 4-5일 만에 2만여 통의 위문편지를 쓰고 5,000여 개의 위문대를 보냈다. 항미원조운동 개시 이후, 약 2개월 간 위문편지 45만 통, 위문대 36만여 개, 위문금 113억여 원(元)을 보냈다.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第2卷, 425; 412-413쪽.

30)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關於推行愛國公約、捐獻飛機大炮和優待烈屬軍屬的號召」(1951.6.1.), 劉金質、楊淮生 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彙編 1(1949-195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179-180쪽.

31)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關於全國人民捐獻武器運動的總結」(1952.6.25.), 같은 책, 333-338쪽.

것은 이상의 전개 과정에서 대중조직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이다. 향미원조운동을 주관하는 향미원조총회는 각 성과 대도시에 분회를 건설하여 운동을 관리하면서도 기층 영역에는 또 다른 조직을 만들지 않고 인민단체와 각계 인사들로 공작과 선전을 진행했다.³²⁾ 따라서 향미원조총회와 당 중앙의 지시들은 대중조직들을 통해 기층 인민에게 전파되었으며,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중조직과 기층 사이에는 지시-실행-감독의 반복적인 작용이 발생했다. 전술한 과정은 운동의 성공적 전개를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조직의 기층 인민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결과를 낳았다.

Ⅲ. 향미원조 宣傳의 개시

1. 부녀연합회의 時事宣傳과 反美大衆運動

시사선전과 반미대중운동의 목표는 인민들로 하여금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국내에서 전개될 다양한 정책의 타당성을 인식시키는 것에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애국공약과 기부운동 등 후속되는 대중운동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부련은 향미원조운동의 개시 이후 12월 이전까지 “우선 대략적으로 하고 이후 세밀하게 추진하는 방식(先粗後細的辦法)”³³⁾을 통해 간부와 적극분자를 중심으로 선전 방법을 연구하며 대중들의 정서를 파악한 후, 일반 부녀 대중에 대한 선전으로 이행해 나갔다. 부련과 가정부련은 각각 11월 3일과 7일에 간부들을 소집하여 10.26 지시의 내용을 전달하고 미국의 만행을 소개했다. 이어 11월 10일에는 약 1,500여 명의 간부, 적극분자, 각 구 선전선동원이 참여한 上海各界婦女抗美援朝衛國保家大會를 개최했다.³⁴⁾

상술한 바와 같이 부련은 간부, 적극분자 등을 우선적으로 시사선전을 진행함과 동시에 일반 대중들의 시사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들을 종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³⁵⁾ 이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부녀들 중 다수가 시사에 관심이 없었다. 둘째,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남의 일에는 무관심했다(“各人自掃門前雪，不管他人瓦上霜”). 셋째, 미국을 두려워하거나 숭배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는 것이다.³⁶⁾ 이와 같은 사상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련은 다양한 선전 방식을 활용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으며, 좌담회·공소회와 里弄 선전대 등의 방식이 적극 활용되었다.

좌담회와 공소회는 인민들의 사상적 문제를 해결하며 향미원조의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반미심리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개되었다.³⁷⁾ 경험했던 사실을 고발하는 控訴는 각종 회의들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된 선전 방식으로, 회의 참여자들의 호응 유도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에서 활용된 이야기는 대부분 여성에게 가해진 미국의 잔인한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공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 「中國人民保衛世界和平反對美國侵略委員會關於當前任務的通告」(1950.11.22.), 『偉大的抗美援朝運動』, 66-67쪽. 3장에서 설명하는 支/分會는 향미원조총회가 아니라 부련 산하의 기관이었다.

33) 「關於上海市抗美援朝運動材料」, 1951年, 檔號: C31-2-59.

34) 「關於抗美援朝保家衛國時事宣傳報告」, 1951年, 檔號: C31-1-41.

35) 「關於上海市抗美援朝運動材料」, 1951年, 檔號: C31-2-59.

36) 「關於抗美援朝保家衛國時事宣傳報告」, 1951年, 檔號: C31-1-41.

37) 가정부련은 각종 소형 좌담회(간부 시사 좌담회, 대중 문화오락 좌담회 등)를 개최하여 주민들 사이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폭로했다. 일례로 常熱區에서는 한 여성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유언비어를 듣고 물가 상승을 두려워하며 연탄을 투매했다가 이후 큰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파하여 유언비어의 폐해를 인식시켰다. 같은 자료.

슈잉(秀英)은 貨公司 百貨部の 직원이었는데, 하루는 미국인 병사 몇 명이 계산대로 걸어와 순식간에 슈잉을 끌어내 지프에 태웠다. 그녀는 차 안에서 강도들에게 발버둥 치며 싸우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에 의해 백주대낮에 불길한 곳으로 끌려갔다. 2일 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하체는 미군에 의해 윤간당해 매우 부어올라있었다.³⁸⁾

里弄에서의 선전은 부련과 관련 단체들이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실제로 많은 공장의 여공부(女工部)와 부련 선교부가 결합하여 만화와 그것의 해석을 통해 여공을 교육했고, 벽보를 읽는 조직(讀黑板報)을 만들어 식자층 여성이 문맹 여공에게 벽보의 시사 내용을 설명했다. 교육공작자들 중 일부는 학생들에게 애국주의 행동을 위한 교육과 가정방문을 진행했다.³⁹⁾ 虹口區에서는 60여 명의 학습반을 선전대로 조직해 里弄에서 시사선전을 수행했다.⁴⁰⁾

각종 선전과 활동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부련의 조사에 따르면, 부녀 대중으로 하여금 시사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했고 친미, 숭미, 공미 사상을 반미 심리로 전환했다. 무엇보다도 선전의 과정에서 새로운 적극분자들을 발굴하고 기존에 연계하지 못하던 부련의 회원들을 다시금 동원했다.⁴¹⁾ 虹口區의 경우 대표회의를 거치며 적극분자 75명 이상을 발견했고, 常熟區와 榆林區에서도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이고 연계하지 못하던 기존의 회원들을 운동에 참가시켰다.⁴²⁾ 이와 같은 상황은 1951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시위(이하 3.8 시위)의 준비 과정 속에서 더욱 개선되었다.

부련은 3.8 시위를 통해 향미원조운동을 더욱 광범위하고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시위의 준비 과정에서 (시사) 학습과 공작, 그리고 特務分子와 유연비어 소탕에 방점을 두었다.⁴³⁾ 해당 시위의 조직을 위해 부련은 시, 구, 里弄에 각각 부녀위원회, 민주부련 구 판사처, 가정부련을 위주로 한 준비·지원기구를 설립했다. 각 기구에는 區人代會 대표, 區政府派出所 및 각계각층의 부녀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시위의 준비작업 뿐만 아니라 선전을 진행하여 대중을 조직했다. 구체적으로 里弄에서는 만화, 표어, 흑판보(黑板報)를 이용하여 여교사, 여학생 등 단위에 소속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선전을 주도했고, 가정부련은 선전대, 결사대(突擊隊)를 조직해 선전을 진행했다. 나아가 里弄에서 婦代會의 역할은 상당하여 婦代會가 설립된 지역의 동원은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더 많았다.⁴⁴⁾ 결과적으로 3.8 시위에는 평소에 사회 정치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가정부녀들이 참여했고,⁴⁵⁾ 부련의 종합(總結) 보고에

38) 「抗美援朝運動中的上海家庭婦女」, 1951年, 檔號: C31-1-41.

39) 「關於上海市抗美援朝運動材料」, 1951年, 檔號: C31-2-59.

40) 「關於抗美援朝保家衛國時事宣傳報告」, 1951年, 檔號: C31-1-41.

41) 회원과의 연계 문제는 당시 부련의 영향력 확장에 있어 해결해야 하는 지점이었다. 실제로 蓬萊區 가정부련의 경우 4,000여 명의 회원 중에 일상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000명이 되지 않았다. 또한 榆林區의 부녀 군중은 약 8만여 명인데, 1만여 명의 여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정부녀였음에도 해당 구의 가정부련 회원은 400여 명에 불과했고, 이들 중에 일상적으로 연계하는 회원은 1/3 혹은 1/4 정도였다. 「關於上海市抗美援朝運動材料」, 1951年, 檔號: C31-2-59.

42) 「關於抗美援朝保家衛國時事宣傳報告」, 1951年, 檔號: C31-1-41.

43) 「上海市民主婦聯關於紀念‘三八’國際婦女節方案」, 1951年, 檔號: C31-1-38.

44) 黃浦區에서는 70명의 교사가 26개조로 편성되어 각종 좌담회를 개최했다. 靜安區에서는 3월 2일부터 8일까지 매일 300명의 여학생들이 부련, 파출소와 연합하여 선전을 진행했고, 선전 중에는 부녀 군중의 공소를 유도하여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자극했다. 가정부련 선전대는 盧灣區에서는 40여 차례의 공소회를 개최하고 선전을 위해 개별 가호를 방문했다. 「‘三八’國際婦女節工作總結報告」, 1951年, 檔號: C31-1-38.

따르면 시위의 준비 과정 속에서 개최된 각종 회의를 통해 다수의 새로운 적극분자들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⁴⁶⁾

상술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상해시 부련은 중앙의 요구에 발맞추어 부녀 대중들의 향미원조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향후 선전 공작을 주도할 적극분자와 회원들을 충원했다. 물론, 이상의 성과만으로 부련이 기층에까지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는 없다. 여전히 일부 계층의 부녀들은 선전의 범위 밖에 있었다.⁴⁷⁾ 따라서 시사선전과 반미대중운동 선전은 인민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과정으로서 후속되는 여러 운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愛國公約·捐獻運動

시사선전이 향미원조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애국공약과 기부운동은 실제 행동을 통한 향미원조였다. 두 운동을 추동하기 위해 다양한 선전 방식이 활용되었고, 공약 제정과 기부는 1951년 6월 이후 진행되는 운동들의 기초가 된 것이었다.

애국공약은 애국결심과 애국운동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향미원조를 위한 실제 행동을 공약 형식으로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었다.⁴⁸⁾ 따라서 공약의 내용은 가능한 한 대중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어야 했다. 상해시 부녀들의 애국공약 제정은 1950년 11월부터 시작되었고,⁴⁹⁾ 1951년 2월 이후에는 정해진 공약 범위⁵⁰⁾ 아래 부련과 산하 조직들은 자발적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애국공약을 제정해 나갔다. 일례로, 가정부련은 연탄을 다투어 구매하지 말라, 미국의 라디오 방송을 듣지 말라 등을 공약의 내용으로 했다.⁵¹⁾

애국공약운동은 시사선전과 반미대중운동을 통해 대중들의 향미원조에 대한 의지가 제고됨에 따라 더욱 발전했다. 특히 공소회와 좌담회에서의 선전은 부녀들이 애국공약을 맺도록 독려했다. 3.8 시위는 더 많은 부녀들을 참여시킴으로서 애국공약운동을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했고, 1951년 5월까지 상해의 부녀들은 1/4 혹은 1/3 이상이 공약을 맺었다.⁵²⁾

45) 「中華全國民主婦女聯合會關於在婦女群眾普及和深入抗美援朝運動的指示」(1951.4.13.), 『偉大的抗美援朝運動』, 729-731쪽.

46) 각 구별로 다수의 크고 작은 회의가 개최되다. 여교사는 총 415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참가 인원은 30,112명이었다. 가정부녀는 3,769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참가 인원은 286,992명이었다. 개최된 회의의 총 수는 4332 차례였고, 327,949명이 참가했다. 기록에 따르면 개최된 動員會, 座談會, 回憶會 등에서 진행된 선전과 공소에 대한 부녀들의 호응은 열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부련은 새로운 가정부녀 적극분자 4,985명과 교사, 학생 방면의 807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婦代會가 개최되지 않던 지역에서 새롭게 婦代會를 조직했다. 「‘三八’國際婦女節工作總結報告」, 1951년, 檔號: C31-1-38.

47) 이에 대한 설명은 3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48)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第2卷, 421-422쪽.

49) 11월 중순 대표회의에서는 각 방면의 공작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선전 방식을 토론했다. 그중 부녀 대표 李希孟은 부녀계 향미원조 시사선전공작을 소개하고 애국공약 구호를 제출했다. 「關於抗美援朝保家衛國時事宣傳報告」, 1951년, 檔號: C31-1-41.

50) 상해시 부련은 1951년 2월 2일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직책에서 애국운동에 참여,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기부, 반혁명 진압운동을 돕고 간첩 고발 및 유언비어 일소,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학습/선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의 범위를 정했다. 「上海各界婦女愛國公約」, 1951년, 檔號: C31-1-44.

51) 「關於上海市抗美援朝運動材料」, 1951년, 檔號: C31-2-59.

상해시 부녀들의 기부는 1950년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각 구에서는 위문편지 쓰기, 위문대 제작, 방한 물품 봉제, 그리고 총탄 기부운동 등이 이루어졌다. 기부의 방식은 다양하여 생산을 하지 않는 가정부녀들은 현금이나 금붙이들을 기부했다.⁵³⁾ 기부를 위한 선전 또한 애국공약과 마찬가지로 공소회, 좌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중 3.8 시위의 준비공작의 일환으로 진행된 라디오 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⁵⁴⁾

1951년 6월 이전까지 상해시 부련은 부녀들의 애국공약 제정과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공약의 체결은 선전 이후 인민의 ‘자발성’에 의지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부족했다. 공약의 내용 중 다수는 실생활과 연관되지 못하여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각 구마다 운동의 추진 속도가 다른 경우도 발견된다.⁵⁵⁾ 나아가 공약의 대다수가 기부와 같은 구체적인 항미원조의 행동과 연결되지 못했고, 里弄에까지 조직적인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기부 역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부련은 6월 이후의 심화 단계에서 선전기구를 신설하며 선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대중들과 연결되도록 노력했다.

IV. 선전의 심화

1. 6.1 호소와 선전 조직의 확대

1951년 6월 1일 항미원조총회는 6.1 호소를 발표했다. 6.1 호소 이후 상해시 부련은 수정애국공약운동과 무기기부운동을 전개하며 다수의 기층 인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갔다. 나아가 이전의 선전 과정에서 타개하지 못한 대상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는 항미원조운동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항미원조총회는 6.1 호소를 통해 수정애국공약운동과 무기기부운동의 의의와 방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정애국공약운동은 “일상 업무, 생산, 공작과 학습을 애국적 총 임무, 항미원조, 반혁명 진압, 그리고 봉건적 토지제도를 소멸하는 투쟁과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으로서, “각 가정과 기타 생산단위 등에서 모두 자신의 업무에 기초하여 항미원조를 둘러싼 애국공약을 만들거나 기존의 공약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무기기부운동은 “애국적 생산 증가와 수입 증가운동을 전개하여 그 수입의 일부, 혹은 전부로 비행기 등의 무기”를 사기 위한 운동이었다. 나아가 해당 호소에서는 무기기부를 수정애국공약에 포함시키며 중요 내용으로 하는 것을 주문했다.⁵⁶⁾ 항미원조총회는 6.1 호소의 발표 이후에도 수정애국공약 제정과 기부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⁵⁷⁾

52) 예를 들어, 榆林區에서는 부녀의 1/4가 공약을 맺었고, 徐匯區에서는 90%의 부녀대표(가족과 개인을 포함)가 애국공약을 맺었다. 「家庭婦女檢査、修訂愛國公約情況報告」, 1951年, 檔號: C31-1-44.

53) 왕제(王潔)는 가정부련 봉사부(服務部)의 영향을 받아 총탄을 구매하기 위한 황금 두 냥을 기부했다. 「關於抗美援朝保家衛國時事宣傳報告」, 1951年, 檔號: C31-1-41; 40대 여성인 양구이팡(楊桂芳)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으나,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도 팔지 않았던 그녀의 결혼반지를 기부했다. 「關於上海市抗美援朝運動材料」, 1951年, 檔號: C31-2-59.

54) 「‘三八’國際婦女節工作總結報告」, 1951年, 檔號: C31-1-38.

55) 「家庭婦女檢査、修訂愛國公約情況報告」, 1951年, 檔號: C31-1-44.

56)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關於推行愛國公約、捐獻飛機大炮和優待烈屬軍屬的號召」(1951.6.1.),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彙編 1(1949-1952)』, 178-180쪽.

57)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號召全國人民繼續加強抗美援朝運動」(1951.7.4.), 같은 책, 193-194쪽;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關於紀念志願軍出國作戰一週年並加強抗美援朝工作的通知」(1951.10.13.), 같은 책, 212-213쪽.

상해시 부련이 중앙의 요구에 따라 상기의 운동을 기층까지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심화된 체계가 필요했다. 1951년 9월의 上海市婦女界第二次抗美援朝代表會議(이하 제2차 항미원조대회)는 이를 위해 개최되었다. 해당 대표회의에서는 적극분자와 간부를 동원하여 수정애국공약과 기부 선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각 區에 항미원조 支會와 分會를 건설하도록 했다. 대표회의 종합 보고에 따르면, 회의 이후 16개 구에서 區대표회의가 개최되었고, 구 수준의 支/分會가 설립되었다.⁵⁸⁾ 支/分會의 설립 목적은 상해시 항미원조분회, 부련과 기층의 공작을 원활하게 연결하며, 특히 里弄의 가정부녀들을 대상으로 선전을 진행하는 것에 있었다.⁵⁹⁾ 이러한 기층조직의 성립은 선전의 공백지대에 놓여 있던 里弄의 부녀들을 항미원조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⁶⁰⁾

2. 修訂愛國公約運動

6.1 호소가 발표된 이후 전국부련은 수정애국공약운동 선전에 대해 시사 학습 강화와 정치 인식 제고를 기본으로 하도록 했다. 나아가 공약의 범위는 크지 않아야 하며 그 항목은 기억하기 쉽고 집행 및 검사가 수월하도록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⁶¹⁾ 상해시 부련이 6.1 호소와 전국부련의 결정에 따라 선전을 진행하며 공약 체결을 직접 영도하고 검사·수정했기 때문에 공약의 체결은 이전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변모해 나갔다.

수정애국공약 체결의 대다수는 다양한 회의에서의 정치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이루어졌고, 토론회, 回憶會 등에서는 애국공약을 맺는 의의를 반복적으로 토론했다. 이 정치보고와 토론의 내용 대부분이 정부를 도와 호구를 명확히 하고, 반혁명 분자 검거에 협조하고, 기부하고, 里弄의 위생과 복지에 신경 쓰고, 집안일을 잘 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녀들을 향한 선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⁶²⁾ 여러 區와 里弄에서 맺어진 수정애국공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北站區의 한 里弄의 애국공약 - (1) 항상 戶口에 빈틈이 없도록 주의하고, 대담하게 악한 자를 고발한다. (2) 잡비를 절약하며, 향을 피우고 염불하는 비용을 줄이고, 무기를 기부하도록 하며 돈이 없는 자는 매일 위문편지 1통을 쓰도록 한다. (3) 매월 2일과 16일에는 본 里弄의 군인 가정을 돕는다. (4) 아이들이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나 야채껍질 등은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며, 수시로 깨끗이 씻고 매주 1회 里弄 대청소를 하도록 한다. (5) 매일 1시간 동안 공부하고, 식자반에 참여하는 여성은 참여하지 않는 여성에게 글을 가르친다. (6) 매일 집안일을 하고, 아이의 공부를 봐주며, 시부모를 존중하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이웃과 싸우지 않는다.⁶³⁾

58) 「婦女界第二次抗美援朝代表會議總結報告」, 1951年, 檔號: C31-1-42.

59) 「上海市婦女界抗美援朝支會委員會(第一次)」, 1951年, 檔號: C31-1-45.

60) 1951년 10월 4일 개최된 上海市婦女界抗美援朝支會工作人員聯席會議에서는, 支/分會의 설립 의미에 대해 “조직이 확대되면 많은 적극분자가 공작에 참가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고, 전문기구가 책임지고 영도하여 공작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上海市婦女界抗美援朝支會工作人員聯席會議」, 1951年, 檔號: C31-1-45.

61) 「中華全國民主婦女聯合會關於響應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號召的決定」(1951.6.7.), 『偉大的抗美援朝運動』, 838-839쪽.

62) 「上海市婦聯關於抗美援朝的各項工作報告」, 1951年, 檔號: C31-1-41.

63) 「家庭婦女檢查、修訂愛國公約情況報告」, 1951年, 檔號: C31-1-44.

부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정애국공약을 맺음으로서 얻은 결과는 다양했다. 다수의 부녀들이 기부에 참여했고, 위생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예컨대, 長樂里의 경우 공약을 맺기 이전 49명 만이 기부에 참가했으나 공약 체결 이후 79명으로 증가했다. 德興里의 전체 부녀는 함께 거리로 나가 대청소를 실시했으며 대표들이 앞장서서 쓰레기를 줍기도 했다.⁶⁴⁾

수정애국공약운동은 다수의 부녀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1년 9월 이전까지 향미원조총회나 전국부련이 요구하는 “광범위하고 深入”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⁶⁵⁾ 실제로 선전이 제대로 파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간부와 대중들은 애국공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나아가 상/하급 간부가 부녀를 대신해 공약을 맺기도 했고, 정치 구호로 나아가지 못한 채 단순한 생활 공약에 머무르는 사례도 발견되었다.⁶⁶⁾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련은 1951년 9월 제2차 향미원조대회를 개최하며 향후 운동의 심화를 꾀했다.

제2차 향미원조대회에서 상해시 부련의 주석인 장윈은 향미원조 支/分會를 통한 공작을 전개하는 것으로 공백지점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1951년 말까지 수정애국공약 체결과 기부 공작을 완성을 목표로 내세웠다.⁶⁷⁾ 회의 이후, 부련은 支/分會를 통해 里弄에서 기존에 참가하지 않았던 부녀들을 대상으로 선전을 진행했다. 支會는 특히 부녀들의 수정애국공약 검사를 임무로 삼고, 3개월간의 공작 계획을 세웠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크고 작은 각종 좌담회를 개최했다.⁶⁸⁾ 결과적으로 1951년 말까지 里弄의 부녀와 거민 중 평균적으로 70% 이상이 수정애국공약을 맺었고, 일부 區에서는 80% 이상의 체결률을 달성했다.⁶⁹⁾

6.1 호소로부터 시작된 수정애국공약운동은 인민들의 일상생활과 향미원조운동을 밀접하게 연계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나 선전의 과정에서 발견된 간부들과 인민들의 오류를 극복하고 넓은 범위의 부녀 대중이 공약을 맺도록 동원한 것은 단순히 향미원조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의 제고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 즉 기부까지 이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운동의 심화와 성과는 기층에까지 미친 부련의 선전 역량 확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3. 武器捐獻運動

향미원조총회와 전국부련은 6.1 호소의 발표 이후 인민들의 기부 참여를 위해 선전과 조직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유관조직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선전과 기부 계획을 정하도록 했고, 기부는 “自覺과 自願의 원칙” 아래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도록 주문했다.⁷⁰⁾ 상해시 부련

64) 「家庭婦女檢査、修訂愛國公約情況報告」, 1951年, 檔號: C31-1-44.

65) 부녀계 제2차 향미원조 대표회의의 총결 보고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약 50% 정도만 공약을 맺었다. 「婦女界第二次抗美援朝代表會議總結報告」, 1951年, 檔號: C31-1-42.

66) 일부 간부들은 “군중이 애국공약을 맺으면 임무가 있을 때 응당 수행해야 한다”, “애국공약은 군중이 하는 것이지, 간부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고, 대중들은 “애국공약을 맺는 것은 대표의 사정이다”, “나는 공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 애국공약은 나와 관련 없는 것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家庭婦女檢査、修訂愛國公約情況報告」, 1951年, 檔號: C31-1-44.

67) 「婦女界抗美援朝代表會議章蘊同志報告」, 1951年, 檔號: C31-1-42.

68) 「上海市婦女界抗美援朝支會三個月工作綱要」, 1951年, 檔號: C31-2-59.

69) 『偉大的抗美援朝運動』, 1206쪽; 松山區의 경우, 762개의 里弄이 있고, 이미 616개가 공약을 체결하여 80.8%의 체결률을 보였다. 또한 北站區에 있는 203개의 里弄 중 172개가 이미 공약을 체결하여, 84.7%의 체결률을 보였다. 「上海市婦聯關於抗美援朝的各項工作報告」, 1951年, 檔號: C31-1-41.

은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라 ‘上海家庭婦女號’ 6대와 ‘上海婦女號’ 1대, 총 7대의 비행기를 기부한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⁷¹⁾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련은 산하 조직의 역량을 활용함과 더불어 ‘有錢出錢(돈이 있으면 기부하자)’, ‘合理節約(합리적으로 절약하자)’, ‘設法生產(생산하는 방법을 궁구하자)’ 3개 구호를 통한 선전으로 기부를 독려했다.⁷²⁾

무기기부운동 중 부련의 기부 선전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상층부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有錢出錢 방면이었다. 상층부녀를 향한 기부 요구는 6.1 호소 이래 계속되어온 것⁷³⁾이지만, 기부 공작의 중점은 중하층의 가정 노동 부녀(전업 주부이거나 소일거리, 혹은 직업을 가진 부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간부들은 상층부녀들이 부유하지만 정치적으로 낙후되었고, 공작을 개진하기 어렵다고 여겨 그들이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⁷⁴⁾ 부련은 상층부녀 좌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상층부녀 좌담회의 목적은 상층부녀의 기부 증진과 더불어 그들과 선전을 진행하는 간부들 사이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간부들은 기부 독려를 하기 위해 상층부녀들을 찾아갔을 때, 냉대 받거나 만남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상층부녀들은 기부에 따른 회의 참석에 피로감을 느꼈고, 그 필요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련은 이 같은 태도가 상층부녀와 간부 모두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좌담회를 개최하기 이전 준비 공작의 일환으로 간부들에게는 통일전선 사상교육을 실시하며 상층부녀를 단결하고 개조하는 것은 단순한 기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작의 일환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동시에 상층부녀들에게는 애국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 중 적극 분자 배양에 주의를 기울였다.⁷⁵⁾

준비공작을 거친 이후 개최된 좌담회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회의에서는 시사 선전과 상층부녀의 기부 및 애국 행동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부녀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회의 이후, 참석한 부녀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선도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였다.⁷⁶⁾ 미흡했던 상층부녀들에 대한 일련의 공작은 단순히 기부금 증액이 아니라 부련의 선전 범위를 비교적 충분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대상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1951년 6월 이후 부련이 각 계층의 부녀들을 선도하여 무기기부운동을 전개한 결과, 9월 이전까지 上海家庭婦女號 기부금 모금액은 37억 元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 수치는 기존에 정

70) 항미원조총회의 통지에 따르면, 인민폐 15억 元을 전투기 1대로 간주했다.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關於捐獻武器支援中國人民志願軍的具體辦法的通知」(1951.6.7.), 『偉大的抗美援朝運動』, 835-836쪽; 「中華民主婦女聯合會關於響應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號召的決定」(1951.6.7.), 같은 책, 839쪽.

71) 6.1 호소에서는 “각지에서 기부한 비행기, 대포 등에는 기부 단위의 이름을 앞에 써서 영광스러운 기념으로 한다”고 서술한다.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關於推行愛國公約、捐獻飛機大炮和優待烈屬軍屬的號召」(1951.6.1.),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彙編 1(1949-1952)』, 179쪽. ‘上海家庭婦女號’가 가정부녀의 기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上海婦女號’는 부련의 영도를 받는 각 부녀단체, 예를 들어 女青年會, 職業婦女會 등의 부녀조직들의 기부로 했다.

72) 有錢出錢은 부유한 부녀(상층 부녀)들이 가진 것을 내는 기부 방식을 말한다. 合理節約은 일상적인 지출에서 절약함으로써 기부하는 것이고 設法生產은 생산(대부분 가내수공업)에 의한 기부를 일컫는다. 「上海婦女界關於捐獻運動情況的初步報告」, 1951년,檔號: C31-1-41.

73) 1951년 6월 7일의 통지에서는 “도시의 기타 富戶들이 용감하게 애국기부운동에 참가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關於捐獻武器支援中國人民志願軍的具體辦法的通知」(1951.6.7.), 『偉大的抗美援朝運動』, 835쪽.

74) 「上海婦女界關於捐獻運動情況的初步報告」, 1951년,檔號: C31-1-41.

75) 「通報第二號」, 1951년,檔號: C31-2-59.

76) 좌담회 이후 榮業里 부녀들의 경우 회의를 열어 기부공작의 진행을 논하고, 자신들이 솔선하여 다른 사람들을 동원할 것을 다짐했고, 그 후 해당 里弄에서 기부공작의 진행 정도가 크게 진척되었다. 부련의 통계에 따르면, 회의 후 이러한 선도 역할을 맡은 자가 참석 인원의 2/3에 이르렀다. 같은 자료.

한 기부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것이었다.⁷⁷⁾ 9월에 개최된 제2차 항미원조대회에서는 애국 주의와 부녀해방, 한국전쟁을 위해 상해 부녀들이 해야 할 책임,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의 목표에 대해 선전했다. 이 회의에서는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상층부녀들의 열등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표들의 발언으로 애국 열정과 기부 의지를 높였다.⁷⁸⁾

부련이 무기기부운동에 있어 해당 회의를 통해 얻은 것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중상층 부녀들을 각 구 支/分會 공작에 참여시켰고 일반 간부들로 하여금 통일전선공작의 중요성과 그 방식을 인지시켜 기부 국면을 타개하도록 했다. 그 결과 9월 이전까지 37억 元에 불과하던 기부금은 회의 이후 20일이 지나지 않아 75억 元에 달했으며, 10월 말까지 목표 금액의 90%를 달성했다.⁷⁹⁾ 이는 부련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상층부녀(넓게는 중상층 부녀)를 겨냥한 선전 공작을 전개함으로써 공백지대를 해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상술한 과정에 따른 무기기부운동의 완수는 단순한 전비 확충의 의미를 넘어 부련의 선전 역량이 확대되었다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 우선, 기부가 수정애국공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부련의 영향력이 부녀들의 생활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항미원조운동의 개시 이후 증가한 적극분자와 婦代會 및 다양한 기층 조직을 활용하여 기존에 선전이 미치지 못한 계층을 선전의 영향력 아래 두는데 성공했다. 요컨대, 무기기부운동을 거치며 부련은 넓은 범위의 부녀들에 대한 선전 역량을 확대한 것이다.

V. 나가며

이상 본고에서는 건국 초기 상해의 기층에서 부녀연합회가 수행한 항미원조 선전 활동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부련의 기층에 대한 선전 역량 확대의 과정을 조명하고자 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공에게 선전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써 필수적인 것이었다. 대중조직은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며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었고, 본고의 탐구 대상인 상해 기층에서는 그 특성상 부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상해시 부련은 기층에서 선전을 수행하기 위해 가정부련, 婦代會, 그리고 적극분자를 이용했는데, 이러한 기층 선전의 주체들은 항미원조운동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나갔다.

항미원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1950년 10월 이후부터 1951년 6월 이전까지의 초보적 단계에서 부련은 시사선전, 반미대중운동과 애국공약·기부를 위해 다양한 선전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부련은 부녀들의 정치 인식을 높이고 운동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새로운 적극분자들을 발견하고 기존에 연계하지 못하던 회원들을 동원하는 등 기층 선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비록 애국공약과 기부 방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후속되는 여러 운동의 기초 작업이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련의 준비 과정으로써 의미가 있다.

부련은 6.1 호소로부터 시작된 심화 단계에서 기층 전반에 걸친 선전의 역량을 확대해 나갔다. 수정애국공약운동과 무기기부운동의 과정 속에서 부련은 대중들이 갖고 있던 오류들을 발견 및 개선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관여했고, 선전의 공백지대를 해소하여 넓은 범위의 부녀들을 영향력 아래에 두었다. 특히 1951년 9월 개최된 제2차 항미원조대회에서는 각 구에 支/分會를 건립함으로써 기층 선전에 일조했다.

77) 「上海市婦女團體聯席會議記錄」, 1951年, 檔號: C31-1-45.

78) 「婦女界第二次抗美援朝代表會議總結報告」, 1951年, 檔號: C31-1-42.

79) 같은 자료. 신화사는 “인민지원군의 출국 기념일을 맞이하여, 上海市 부녀는 이미 90억 元을 납부했고, 6대의 ‘上海家庭婦女號’ 비행기 기부 계획을 완성했다”고 서술한다. 「全國婦女一年來在抗美援朝運動中的貢獻」(1951. 10. 27.) 『偉大的抗美援朝運動』, 905쪽.

이상의 과정에서 부련은 첫째, 각종 회의를 통해 부녀 대중 가운데 적극분자를 발탁, 동원함으로써 기층 조직 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둘째, 정치의식을 제고시켜 선전의 공백지대에 있던 부녀들까지 동원함으로써 전 계층까지 영향력을 확장했다. 이 같은 부련의 선전 역량 확대는 건국 초기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국가가 대중조직을 매개로 기층 인민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는 정권 공고화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 문헌

1. 사료

(1) 당안 자료

上海市檔案館 所藏 檔案 文件

- 「中國紡織工會上海市委員會關於抗美援朝運動的初步總結(草案)」, 1951年 7月, 檔號: A22-2-45.
- 「上海市民主婦聯關於紀念‘三八’國際婦女節方案」, 1951年, 檔號: C31-1-38.
- 「‘三八’國際婦女節工作總結報告」, 1951年, 檔號: C31-1-38.
- 「抗美援朝運動中的上海家庭婦女」, 1951年, 檔號: C31-1-41.
- 「關於抗美援朝保家衛國時事宣傳報告」, 1951年, 檔號: C31-1-41.
- 「上海婦女界關於捐獻運動情況的初步報告」, 1951年, 檔號: C31-1-41.
- 「上海市婦聯關於抗美援朝的各項工作報告」, 1951年, 檔號: C31-1-41(文件 제목을 확인할 수 없어, 案卷 제목으로 대신한다).
- 「婦女界第二次抗美援朝代表會議總結報告」, 1951年, 檔號: C31-1-42.
- 「婦女界抗美援朝代表會議章蘊同志報告」, 1951年, 檔號: C31-1-42.
- 「上海各界婦女愛國公約」, 1951年, 檔號: C31-1-44.
- 「家庭婦女檢查、修訂愛國公約情況報告」, 1951年, 檔號: C31-1-44.
- 「上海市婦女團體聯席會議記錄」, 1951年, 檔號: C31-1-45.
- 「上海市婦女界抗美援朝支會委員會(第一次)」, 1951年, 檔號: C31-1-45.
- 「上海市婦女界抗美援朝支會工作人員聯席會議」, 1951年, 檔號: C31-1-45.
- 「關於上海市抗美援朝運動材料」, 1951年, 檔號: C31-2-59.
- 「上海市婦女界抗美援朝支會三個月工作綱要」, 1951年, 檔號: C31-2-59.
- 「通報第二號」, 1951年, 檔號: C31-2-59.

(2) 사료집 및 사료성 저작

- 人民出版社編輯部 編, 『怎樣建立宣傳網』, 人民出版社, 1951.
-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宣傳部 編, 『偉大的抗美援朝運動』, 人民出版社, 1954.
- 中華全國婦女聯合會 編, 『蔡暢、鄧穎超、康克清 婦女解放問題文選』, 人民出版社, 1988.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二冊, 中央文獻出版社, 1993.
- 劉金質、楊淮生 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彙編 1(1949-195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 中共中央宣傳部辦公廳、中央檔案館編研部 編, 『中國共產黨宣傳工作文獻選集(1937-1949)』, 學習出版社, 1996.

2. 연구서

<국문>

박두복 編著,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部 著,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編,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영문>

Brown, Jeremy and Matthew D. Johnson eds, *Maosim at the Grassroot: Everyday Life in China's Era of High Soci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Zheng, Wang, *Finding Women in the State: A Socialist Feminist Revolu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64*,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중문>

上海市婦女聯合會 編, 『上海婦聯六十年』,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0.

張濟順, 『遠去的都市:1950年代的上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5.

3. 연구 논문

<국문>

박상수, 「1950년대 중국 혁명 연구의 다섯 가지 논쟁적 테제 述論」, 『史叢』 第85輯, 2015.

최승현,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시기 선전동원네트워크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第83輯, 2017.

손장훈, 「中華人民共和國 初期(1949-1959) 上海市 ‘기층 국가(grassroots-state)’의 구조와 작동 - 里弄 주민 관리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영문>

Chang, Julian, “The Mechanics of State Propagand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 the 1950s”, in Timothy Cheek and Tony Saich eds, *New Perspective on State Socialism in China*, Routledge, 2015.

Lee, Ching Kwan and Yong Hong Zhang, “Seeing like a Grassroots State: Producing Power and Instability in China's Bargained Authoritarianism”, in Vivienne Shue and Patricia M. Thornton eds, *To Govern China: Evolving Practices of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중문>

馬聖強, 「抗美援朝初期上海市動員學生參加軍事幹校述評」, 『韓國研究論叢』, 2006年 第1期.

王炎, 「新中國歷史上的宣傳網制度」, 『中共黨史資料』, 2007年 第3期.

郭雲峰, 「建國初期的中共宣傳制度(1949-1956年)-以北京市爲例」, 『首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9年 第1期.

范登生, 「抗美援朝运动中的北京妇女」, 『北京黨史』, 2009年 第2期.

孫丹, 「論抗美援朝戰爭的國內宣傳工作」, 『當代中國史研究』 2009年 第4期.

金晶、士心, 「蘇南婦女的抗美援朝運動」, 『檔案與建設』, 2010年 第5期.

黃利新, 「論北京市城區基層組織在抗美援朝運動中宣傳工作」, 『北京社會科學』, 2011年 第5期.

劉少華, 「建國初期中共建立宣傳網初探-以南京地區爲中心」, 『安慶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1年 第8期.

硃至剛, 「試析建國初期宣傳網的建立和撤銷:以黨的組織力量考察背景」, 『現代傳播(中國傳媒大學學報)』, 2012年 第11期.

段春義, 「新中國初期的對人民群眾宣傳網建設-以上海爲例」, 『黨的文獻』, 2016年 第5期.

代天喜, 「建國初期宣傳教育工作及其啓示」, 『長江大學學報(社科版)』, 2017年 第4期.

楊麗萍, 「1949-1952年宣傳員制度建設研究」, 『當代中國史研究』, 2019年 第3期.

高麗, 徐選國, 「中央群團改革視域下地方婦聯購買服務的實踐邏輯及其理論擴展-基與對上海H區的經驗觀察」, 『婦女研究論叢』, 2020年 第2期.

손동훈, 「건국 초기 부녀연합회의 선전 역량 확대 - 상해시 향미원조운동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장수지(이화여대)

이 논문은 향미원조운동 시기 상하이에서 부녀연합회가 기층부터 상층까지 다양한 부녀들을 상대로 조직화와 꾸준한 선전과 설득 등을 통해 향미원조의 실천을 행하도록 만든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과정의 ‘선전 역량 확대’라고 하는 것은 부련(혹은 향미원조운동)조직의 확대와 선전원들의 정치적 각성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중국 공산당의 기층까지의 영향력 확대, 대중동원의 성공이라는 스토리를 보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서 볼 수 있습니다.

석사논문이기 때문에 주제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다만 연구자로서 왜 부녀연합회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는지 좀 큰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서 ‘부녀’가 아니라 대상을 ‘상인’, ‘실업청년’, ‘소상공인’ 등으로 바꾸더라도 비슷한 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들의 시사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에 대한 언급에서 “첫째, 부녀들 중 다수가 시사에 관심이 없었다. 둘째,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남의 일에는 무관심했다. 셋째, 미국을 두려워하거나 숭배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라고 인용하셨는데, 여기서 ‘부녀들’을 ‘자영업자’로 바꾸더라도 당시 공산당의 대중들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녀’라는 집단을 공산당 혹은 부련이 어떻게 다른 집단 - 노동자, 청년, 농민 등 - 과 질적으로 다르게 보았을까요? 이 점이 더 분명해져야 향미원조운동에서 부련만이 해낸 성과, 선전 역량의 확대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향미원조운동의 성격을 우리가 더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문의 흐름은, 선전 대상의 양적인 확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전 대상이 더 많은 대중들로 확대되면서 애국공약을 맺은 인구가 늘어나고, 기부금의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이것이 선전역량의 증대, 혹은 영향력의 확대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애국공약운동의 내용에서 일부 가정부녀들을 대상으로만 가능해 보이는 공약들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 어떠한 ‘다른’ 노력을 했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스토리를 농민, 혹은 농회(農會)를 대상으로 서술했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당시의 ‘대중’이 마치 균질적이고 수동적이며 개인이나 집단별로 놓인 상황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녀연합회는 왜 향미원조운동을 ‘잘’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선전을 확대하려고 했을까요? ‘선전 역량 확대’를 이름으로써 부녀연합회가 하려는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부녀연합회는 향미원조운동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부련의 의도, 그리고 양적인 확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발표자께서 쓰신 ‘선전역량 확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본문에서도 다소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향미원조운동의 개시 이후 증가한 적극분자와 婦代會 및 다양한 기층 조직을 활용하여 기존에 선전이 미치지 못한 계층을 선전의 영향력 아래 두는데 성공했다. 요컨대, 무기부운동을 거치며 부련은 넓은 범위의 부녀들에 대한 선전 역량을 확대한 것이다.”

라고 서술하신 부분에서 ‘선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을 듣고 그에 따르는 경향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의미인지요? 이것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항미원조운동에 제한된 의미인지요? ‘부녀들에 대한 선전 역량을 확대’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여성들에게 부련의 사업, 사상 등을 선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항시적인 소통의 창구가 확대되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선전 방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효과를 보게 되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뜻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기 부련 조직 자체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간부층이 부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항미원조운동은 인적, 물적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는, 그래서 적극분자 중 일부를 간부로 성장시키거나, 기존의 간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간부양성 혹은 간부들에 대한 교육 등이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제목의 ‘선전 역량 확대’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부련 간부들의 실력 증진, 다양한 선전 방식의 적용 등이었습니다. 결론부분의 “기층 선전의 주체들은 항미원조운동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나갔다”라는 문장이 그러한 내용을 압축해서 서술하신 것인지, 혹시 연구하신 내용에서 이 점에 대해서 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사료 이용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건국초기 상해시 부녀연합회의 기관지로는 잡지 형태의 『現代婦女』가 있고, 전국부련의 기관지로는, 논문에서 다루는 시기에 한정하면 『新中國婦女』가 있습니다. 『新中國婦女』에서도 상해시부련의 활동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 자체가 여러 기관과 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부련의 선전도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생동감 있는 사례들도 많고 간부들의 교육과 활동 경험들도 담겨 있는 사료인데, 왜 이용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농촌 '國家糧食市場' 운용과 폐지(1954~1957)

이승아(한양대)

- 1 머리말
- 2 '統購統銷' 시행과 농촌 문제
- 3 국가식량시장의 운영과 '三定'정책
- 4 자유시장 문제와 국가식량시장의 폐지
- 5 맺음말

1 머리말

1950년대 중국 정부는 식량을 시작으로 주요 상품들을 산지에서 매입하여 시장 대신 유통을 통제했다. 주지하듯 식량의 '계획수매'와 '계획공급'(즉, 統購統銷)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가는 시장에서 상인의 식량 거래를 금지하고, 개인의 식량 소비를 결정하였다. 도시 거주민은 배부받은 '량표'의 수량만큼 국가 상점에서 필요한 식량이나 식품을 구매하였고, 농민은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나 소수의 식량 생산이 부족한 '결량호(缺糧戶)'를 제외하면 식량 자급이 보편화되었다.

그렇다면 농민이 식량이 필요한 경우 혹은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은 어떻게 구하였을까? 아마도 과거 촌과 초급시장을 오갔던 소상인을 대신하여 공소합작사나 국가 식량 기관인 량참(糧站)¹⁾이 농촌에 필요한 공산품과 부족한 식량을 공급했을 것이다. 그리고 농촌 구성원 간 혹은 촌과 촌 사이 전통적인 물물 교환의 관행이 남아있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식량의 통구통소의 시작과 함께 식량 거래는 사라진 것일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농촌의 식량 거래가 바뀌어 간 것일까? 농촌시장은 모두 폐쇄된 것인가? 그런데 통구통소 정책에 관한 규정²⁾을 보면 국가 상점이나 합작사에 더하여 국가가 설립한 식량시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통구통소 정책 규정에서 언급하는 '국가식량시장³⁾'이란 무엇인가? 이 글은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1) 량참은 처음 공소합작사가 국가의 식량 대리매매를 위해 설립하였고, 식량제도의 재편과정에서 국가 '식량창고' 체계에 편입되었다. 이후 량참이 공소합작사를 대신하여 국가의 공량 수납과 통구통소의 임무를 맡아 농촌에서 식량을 수매하고 결량호에게 식량을 제공했다.

2) 1953년 11월 통구통소 명령과 함께 발표된 '糧食市場管理暫行辦法'의 6조는 도시와 집진(集鎮)의 식량교역 장소를 필요에 따라 '國家糧食市場'으로 바꾸고, 식량 교역은 모두 여기서 진행하도록 명시한다. 그리고 7조와 8조는 도시와 농민이 식량이 남거나 혹은 식량품종 교환이 필요한 경우, 국가 식량점(혹은 국가식량기관), 합작사, 혹은 '국가식량시장'에서 상호간에 조절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糧食市場管理暫行辦法(1953.11.19.)』, 中央人民政府糧食部辦公廳編, 『糧食工作法令彙編(1952.9~1953.12)』, 1954, pp.4-6.(이하 『糧食工作法令彙編(1952.9~1953.12)』로 약칭한다.)

3) 본고에서 논의할 '國家糧食市場'은 통구통소의 제도와 함께 만들어진 국가 제도로써, 본문에서는 1953년 통구통소 관련 규정과 이후 자주 쓰이는 '國家糧食市場'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와 '국가식량시

초보적인 탐색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국가식량시장’은 왜 주목받지 못했는가. 기존 연구 경향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통구통소 정책이 자유시장과 대칭되는 정책으로 우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시장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잘 알려진 1956년 가을부터 약 1년간 존재했던 농산물 ‘자유시장’⁴⁾의 개폐에 집중되어 있다.⁵⁾ 기존 연구들은 자유시장에 대한 정확한 밝힘 없이, 자유시장이 통구통소 정책 이후 농촌의 물자 부족과 농촌 부업생산의 감소, 그에 따른 농가 수입의 하락과 수출입 영향으로 개방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농산물 자유시장에 식량 등의 국가통제 물자가 유입되면서, 결국 반우파투쟁과 함께 빠르게 종결되는 것으로 설명된다.⁶⁾ 이상의 일반적인 이해는 국가의 통제와 시장을 더욱 대비시켜, 통구통소 이후 농촌은 ‘밀거래’를 제외하면, 농촌에서 개인 간 식량 거래가 부재한 상태로 상상되기 쉬웠다.

또 다른 연구 경향은 보통 도시에서 식량 ‘통소[계획판매]’와 농촌에서 식량 ‘통구[계획수매]’를 주제로 다룬다는 점이다. 예컨대 농촌의 연구들은 통구통소의 정책 발전에 따라 발생한 식량 수매 문제나 기층의 식량행정 조직, 통구통소 정책에 따른 도농분리 등의 주제가 주를 이룬다. 간혹 식량의 통구통소를 다루는 학위논문에서 ‘국가식량시장’에 대해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한 절을 빌려 규정과 운영을 소개하는 정도로, 국가가 왜 식량시장을 운영했는지, 그 추이가 어떠한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⁷⁾ 그러나 농촌에서 국가가 식량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만크이나 농촌에 식량이 초과 공급되거나 제때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농민들에게도 식량을 누가, 언제,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국가식량시장을 설립했던 이유와 과정, 그리고 한계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농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부 연구는 1950년대 ‘국가식량시장’의 연원과 시행에 대해 초보적인 해석을 시도했다.⁸⁾ 王春英 등의 2017년과 2019년의 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사회주의의 ‘국가시

장’이라고 번역했다. 그 밖에 사료에서 “국가가 건립한 식량시장”, “국가가 지도하는 식량시장”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 4) 이후 본문에서 상술하겠지만, ‘자유시장’이란 일반적인 자유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자유시장은 일종의 국가 통제 아래 있는 시장으로, 국가의 계획수매와 통일 수매의 대상인 제1류, 제2류 상품 및 일부 주요 토산품과 수출입 상품은 이곳에서 거래될 수 없었고, 그 밖에 농산물에 대해서만 개인들의 자유 거래를 허락했던 시장이었다.
- 5) 일찍부터 구미 경제학자들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중국의 1956년 ‘자유시장’을 주목했고, 이를 논하는 과정에서 관련 연구가 집중되었다. 이후 1956년 자유시장의 개폐에 관한 내용은 개설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도 1956년 농촌자유시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왔고, 대표적으로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武力, 「社會主義改造完成後引入市場機制的先聲—陳雲與1956年農村自由市場的開放」, 『當代中國史研究』, 2007-5; 夏林, 董國強, 「一九五六年至一九五七年有限開放自由市場政策述論」, 『中共黨史研究』, 2015-2; 林超超, 「一九五六年前後的自由市場政策與城市商品供應」, 『中共黨史研究』, 2019-1 등.
- 6) 林超超의 2019년 연구가 대표적인데, ‘국영상점’으로 대표되는 “계획시장”과 1956년 이후 “자유시장”을 대조적으로 이해하고, 자유시장의 개폐 원인을 통구통소 정책과 직접 연결 짓는 경향이 강하다.
- 7) 예컨대 田錫全의 논문에서 국가양식시장의 건립과 폐지에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때 그가 인용한 하남성 국가식량시장 조직 판법과 설립 규모를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田錫全, 「糧食統購統銷制度的形成及其在唐河縣的運作(1953-1957)」,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pp.60-62; 국내 윤들의 2008년 논문도 국가식량시장의 운영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도 국가식량시장의 연원이나 전개를 밝히는데 관심을 둔 글은 아니다. 윤들, 「중국의 사회주의 이행기농촌시장 재편과 농민-국가 관계 변화—투자자에서 농업노동자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8, pp.18-24.
- 8) 王春英, 王之含, 「“國家市場”與新中國基層市場制度的轉變—以江津縣為例」, 『中共黨史研究』,

장'의 건립이란 관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과 이후의 시장을 구분한다.⁹⁾ 따라서 이 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직후의 일련의 시장정책¹⁰⁾을 거쳐 교역소로 대표되는 '국가시장'의 건립을 국가의 시장통제, 즉 통구통소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설명하고, 국가식량시장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국가시장'의 형성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통구통소 이후 설립된 국가식량시장은 역할이나 상인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아행을 대신한 것에 불과한 식량교역소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식량교역소는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정부"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국가에 맞게 새로 만든 신시장"이라기보단 전시체제 아래 발전한 제도였다. 반면 국가식량시장은 통구통소의 시행 과정 중 필요에 의해 설립된 농민의 교역장소로 양자가 어떤 연속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긴 힘들 것이다.¹¹⁾ 이러한 주장은 식량교역소의 공간이나 시설이 '糧庫' 또는 '糧站' 설립에 활용되었고, 소수는 '국가식량시장'으로 활용된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식량의 통구통소 전후 관련 제도들의 행방과 전후 식량 거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생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최근 연구로 唐正芒 등의 2020년 연구가 있다.¹²⁾ 이 논문은 통구통소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시기를 나누어 '農村初級糧食市場'¹³⁾의 개폐 원인과 과정을 정리하고 개혁개방이 야말로 농촌 식량시장의 개방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한다. 이 연구는 장기간의 농촌시장을 다루는 만큼 주장에 대한 논증이나 분석이 대체로 소략되어 있고, 논문의 성격에서 이 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1954-1957년간 초급식량시장 폐쇄 원인 중 하나로 합작화에 따른 농촌 식량시장의 사회적 필요가 사라졌음을 지적한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합작화는 통구통소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합작화로 개인간 거래의 필요가 감소해 갔다면, 1956년의 농산물 자유시장의 개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식량시장과 농산물 자유시장은 같은 시장을 가리키는 것인가?

최근 국가시장과 자유시장의 문제에 대해 본고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문이 한 편 있다.¹⁴⁾ 그러나 이 논문은 국가식량시장과 자유시장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음에도, 본문은 국가시장이 폐쇄된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하여, 오히려 국가식량시장의 제도화 과정에 대해 소략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식량시장이 건립된 이후 1954년에서 1957년간 제도와 농촌 상황, 정부의 대응 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논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시기의 사례들을 한 데 모아 근거로 제시한다는 점이다.¹⁵⁾ 또한 논문은 결론에서 농촌의 자유시장과 국가식량시장

2019-6; 王春英, 張豔梅, 「向社會主義過渡: 建國初期的糧食市場與國家調控」, 『史林』, 2017-5; 唐正芒, 莫慶紅, 「統購統銷後農村初級糧食市場的演變」, 『井岡山大學學報』 41(4), 2020; 何帥波, 「一九五四年至一九五七年國家糧食市場研究」, 『中共黨史研究』, 2020-3.

9) 특히 2019년 연구는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국가는 경기인 혹은 아행으로 대표되는 중간상인과 동업공회 등을 통해 시장을 간접 관리하면서 중간 상인들의 봉건적 착취와 투기 등의 폐단이 계속되었지만, 1949년 이후 "신정부"의 국가시장인 교역소가 건립되면서, 정부가 시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국가와 시장 관계가 변화했다고 본다.

10) 국가의 "신시장관리 체계"란 상업등기, 시장정돈, 시장관리위원회의 교역소와 교역원의 직접 징세로 대표된다.

11) 1949년 이후 정부가 새운 식량교역소의 구성과 성격은 전쟁시기 교역소와 차이가 없다. 또한 식량교역소는 주로 도시나 현성에 설립된 도매상이 주로 찾았던 거래장소였던 반면, 1954년 이후 농촌의 '국가식량시장'은 농민이 출입하는 장소로 교역소와는 공간적 성격이 구분된다.

12) 唐正芒, 莫慶紅, 「統購統銷後農村初級糧食市場的演變」, 『井岡山大學學報』 41(4), 2020.

13) 저자는 '농촌초급식량시장'을 "식량 생산자와 식량 소비자 및 경영자가 직접 식량을 교환하는 장소로, '農村糧食集市貿易'이라고도 부른다"고 정의한다. 또한 "...자유매매 시장이 폐쇄되고, 국가가 지도하고 관리하는 식량 교역장소이므로, '國家糧食市場'이라고도 한다"고 정의한다.

14) 何帥波, 「一九五四年至一九五七年國家糧食市場研究」, 『中共黨史研究』, 2020-3.

15) 예컨대 국가식량시장을 설명하는 본문 2장의 경우, 논문은 정부가 국가식량시장을 강제하여 간부들

을 서로 다른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본문에서 두 제도에 대한 분석 없이 주장만 담고 있어 그 설명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¹⁶⁾

이상의 선행연구를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국가식량시장의 배경과 통구통소 정책 변화에 따라 농촌에서 국가식량시장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1956년의 자유시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질문들과 국가식량시장에 대한 이해가 통구통소 정책이후 농촌에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統購統銷’ 시행과 농촌 문제

1) ‘통구통소’와 농촌 문제

1953년 10월 10일 열린 전국식량회의에서 천원(陳雲)은 식량의 공급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국가가 나서 농촌에 남은 식량을 수매(征購)하여 도시에서 직접 적정량을 배급(配給)하는, ‘統購統銷(이하 통구통소)’¹⁷⁾을 제안하였다. 천원으로 대표되는 당 중앙 지도부는 오랜 논의 끝에 단기간 내 식량 증산이 불가능한 중국의 현실에서 식량난의 해결은 통구통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도부는 자유시장과 투기 상인의 존재가 농민들이 식량을 팔지 않고 식량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게 부추겼고, 식량이 부족하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조절하는 정책으로는 더 이상 식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이 식량난을 수입에 의존하여 해결할 경우, 국가의 경제발전 투자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천원은 식량회의에서 결국 통구통소 외에 대안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1953년 가을과 1954년 여름까지 국가가 약 340억 근의 식량을 수매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했으며, 지난 이년간 농촌에서 방출된 식량이 약 600억 근 이상으로 절대 무리한 임무가 아님을 설명했다.¹⁸⁾

천원이 전국 식량회의에서 제안한 통구통소의 구상은 뒤이어 통구통소 실행 결의(10.16)와 명령(11.23 반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통구통소 정책은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식량 공급을 장기간 확고한 기초위에 두기 위해 ... 전국을 범위로 아래 시책을 취한다: 1) 농촌에서 여량호에게 식량 계획수매(‘統購’로 간칭) 정책을 실행한다, 2) 도시의 인민과 농촌의 식량이 부족한 인민들에게 식량 계획공급(‘統銷’로 간칭) 정책을 실행한다. ... 3) 국가가 식량 시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사영(私營) 식량 공업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며, 사영 상인의

이 어쩔 수 없이 농민에게 국가시장에서 식량을 팔게 하였고, 농민이 식량을 팔기 꺼리자 정부가 농민의 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周轉糧’을 도입했던 과정을 서술한다. 이 장의 문제는 우선 정부가 국가식량시장을 도입했을 때 처음부터 농민의 ‘주전성(周轉性)’ 거래, 즉 농민의 식량 유통과 상호거래를 고려하여 설립했다는 사실이다. 즉 ‘周轉糧’에 관한 규정은 이후 정립되었지만, 시장의 설립 의도는 처음부터 농민이 식량을 유통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었다. 또 이 장의 다른 문제는 주장의 요지마다 근거하는 사료의 시기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문단에서 인용하는 정책과 그 인과에 대한 예시가 1954년과 1956년을 넘나드는데, 이 논문은 밝히지 않지만 1954년과 1956년 사이 국가식량시장 제도는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고, 농촌의 물자 유통 상황도 전혀 달랐다.

16) 何帥波, 앞의 논문, pp.111-112.

17) 공산당 지도부는 식량의 농촌 “징구(征購)”와 도시 “배급(配給)”을 각기 ‘계획수매(計劃收購)’와 ‘계획공급(計劃供應)’으로 칭하고, 이를 합하여 “통구통소(統購統銷)”로 부를 것으로 정하였다. 천원은 “配給”을 ‘계획공급(計劃供應)’이라 부르는 것은 식량부(糧食部) 부장 章乃器的 생각으로, 일제 점령 아래 실시된 강제 배급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정부 당국의 도시에서 배급이 일제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陳雲在全國糧食會議上的講話」(1953.10.10.), 宋永毅 主編, 『中國五十年代初中期的政治運動資料庫:從土地改革到公私合營(1949-1956)』,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14. (CD판) (이하 ‘『政治運動資料庫』(CD판)’으로 약칭한다.)

18) 「陳雲在全國糧食會議上的講話」(1953.10.10.), 『政治運動資料庫』(CD판).

식량 자유 경영을 엄금하는 정책을 실행한다.¹⁹⁾

정부는 편의상 농촌의 여름과 가을 수확 이후 공량을 징수할 때 식량을 함께 수매했다. 수매할 식량의 수는 중앙 계획위원회가 내려보낸 '통제숫자(控制數字)²⁰⁾'를 근거로 각 급마다 나누어져, 최종적으로는 현 정부가 자신에 현에 할당된 통제숫자를 공포하고 각 촌마다 민주평의(民主評議)²¹⁾를 열어 식량이 남는 농호와 식량이 부족한 농호, 그리고 각기 수매량과 판매량을 결정했다. 1953년 전국의 시행보고를 살펴보면, 대체로 계획수매는 농촌에서 과도기 총노선과 통구통소 정책을 선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동시에 각급 회의를 통해 촌의 실제 식량현황을 파악하여 수매 임무를 분배한 후, 농촌 당원이나 현지 간부가 앞장서서 생산량을 보고하여 농민이 스스로 생산량을 보고하도록 유도했다. 그 이후 민주평의를 소집해 각 호에 수매량을 확정했다. 수매량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현 정부가 식량수매와 공급계획을 만들고, 다시 각급 정부를 거쳐 중앙에 보고되었다. 계획이 공포되면, 각 지방의 성정부가 공작조를 "購糧重點縣"에 파견하여 '시험사업(試點工作)'을 시행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계획수매가 대략 1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다.²²⁾

정부는 통구통소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해결방안들을 미리 논의했다. 특히 중앙 지도부는 농민이 식량 판매를 거부하여 계획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농촌에 일시에 많은 화폐가 유통되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예상했다. 천원은 농촌 수매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때려 폭동에 이르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농민이 식량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려 팔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량을 수매할 때 "돈뿐만 아니라 물자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아직 정부가 "26만 개의 향과 백만 개의 자연촌" 모두에 농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를 공급할 역량이 없음을 지적했다.²³⁾

중앙 정부는 이상의 문제들을 대비하여 성급 간부가 농촌에서 식량 수매를 지휘하는 한편, 농촌에 적극 국가 정책을 홍보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정부는 농촌에 식량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먼저 농민들에게 과거 춘궁기 식량 거래를 통해 얻었을 이득 일부를 예금이자를 통해 보상해줌으로써, 저축을 장려하고 농민의 식량 대금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었다. 동시에 상업부는 약 4조원의 농촌에 판매할 공산품을 준비했으며, 국영기업과 공소합작사는 농촌에서 식량 수매와 공산품 공급을 위해 서로 협력했다. 또한 정부는 농촌에 공산품을 판매하고 식량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상인, 특히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19) 「中共中央關於實行糧食的計劃收購與計劃供應的決議」(1953.10), 中國社會科學院中央檔案館 編,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商業卷』, 北京: 中國物價出版社, 2000. p.123 (이하 '檔案資料選編-商業卷'으로 약칭한다.)

20) 통제숫자는 중앙이 전국종합계획 편제를 위해 정해놓은 틀과 같은 것으로, 사회경제 각 부문과 지방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된다. 통구통소 명령은 당시 재정경제위원회가 계획위원회가 편제한 통제숫자를 근거로 대 행정구의 통제숫자를 결정하였고, 차례로 대행정구와 省, 專區에서 하급 단위의 통제숫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통제숫자는 당시 문건에서 "임무숫자", "통구숫자" 등으로 표현되는데, 사실상 중앙에서 할당한 수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당시 통구통소 과정에서 민주평의의 시행은 지역마다 다 달랐던 것 같다. 정부의 의도는 기층 촌 조직을 동원하여 농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식량 생산 정황을 보고하여 국가의 수매 임무를 협의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민주평의는 계급투쟁으로 흘러, 일부 농민들에게 임무가 과중하게 지워지거나 계급 성분에 따라 불공평하게 수매량이 분배되기도 했다. 葛玲, 「從“民主評議”到“隨征帶購”—1954年廣東糧食統購的制度化的嘗試」, 『黨史研究與教學』, 2015-4, pp.22-24.

22) 「全國各地糧食統購統銷工作情況」(1953.11.27.), 『政治運動資料庫』(CD판); 「關於實行糧食的計劃收購和計劃供應的命令」(1953.11.19), 『糧食工作法令彙編(1952.9~1953.12)』, pp.1-4.

23) 「陳雲在全國糧食會議上的講話」(1953.10.10.), 『政治運動資料庫』(CD판).

소도매상과 도시와 농촌 집진의 소매상, 탄판(攤販)을 활용했으며, 초급시장에 ‘물자교류회’를 열어 지역 공산품과 농촌 자금 교환을 장려했다. 정부는 상인들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공산품을 판매함으로써 합작사 조직과 함께 농촌에도 ‘국가자본주의식 소매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²⁴⁾

이상의 국가의 식량 통제 구상은 처음에는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각지에서 식량 통구통소 회의가 현 단위까지 차례로 열렸고, 11월에는 전국 대부분의 성 간부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시험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11월 초에 대도시에서부터 쌀과 밀가루 등을 시작으로 차례로 거래가 금지되고, 식량 구매를 증빙하는 세량증(細糧證) 발급이 완료되었다. 이상의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국가 계획과 공급표준에 따른 도시의 정량 공급이 시작되었다. 물론 일부 도시에서 계획공급 직후 비주류 식량의 사재기와 식량 급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보고되었지만, 문자 그대로 시행착오에 불과했다.²⁵⁾ 12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농촌의 계획수매도 선전과 과거보다 약간 높은 수매 가격, 예금이자 등의 정책에 힘입어 일부 소란을 제외하면 비교적 순조로워 보였다. 농민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남는 식량’을 구매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는 지방 간부의 의욕에 힘입어 계획보다 빠르게 식량의 초과 구매를 달성했다. 그러나 국가의 ‘이상’과 달리, 현실은 복잡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농촌에서 발생했다.²⁶⁾

농촌에서 첫 수매 목표는 순조롭게 달성했으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 중앙의 예상보다 ‘민주평의’를 거친 계획 수립 과정은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했고, ‘민주평의’ 과정과 실상이 지역마다 달랐다. 1953년 11월 각지의 보고들은 중앙이 자신했던 것과 달리, 다양한 문제들을 담고 있었다. 농촌 간부들은 농촌의 계획수매를 시행하는 것에 훨씬 큰 부담을 느꼈고, 농민을 마주했던 기층 간부들은 식량회의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고 난색을 보였다. 이는 농촌에서 수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데, 실제 수매 과정에서 농민의 구타나 유언비어 등 동요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민주평의 과정에서 자살소동도 보고되었다.²⁷⁾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농촌 지역의 초과 수매와 식량 유통에 있었다. 농촌 간부들이 식량의 수매에만 열중했던 결과 농촌 식량 공급의 홍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일부 농민들이 자신이 소비해야 하는 식량을 판매한 것에 있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간부가 국가수매량을 늘리기 위해 농민들에게 식량을 사서 국가에 재판매하도록 장려했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은 식량을 국가에 판매한 직후 다시 합작사에 식량 구매를 요구하거나, 직접 현이나 진의 식량상점과 량참(糧站)에서 식량 구매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농민은 국가 상점이나 도시에서 구량증이 없어 식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했다. 또한 어떤 농민들은 식량을 팔고 저축한 예금으로

24) 「中財委關於提高農民數量儲蓄限額和利率的指示」(1953.12.3.); 「商業部關於積極推銷工農品配合購糧的指示」(1953.11.4.),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46-149, pp.144-146

25) 예컨대 둥베이 지역은 5일 정식으로 시작했고, 화베이 지역은 1~10일 사이 전역에서 시작되었으며, 산둥과 허난 등지는 7일까지 주요 도시에서 우선 시작했다. 계획공급 품목도 화베이는 우선 세량만 대상으로 했고, 화베이 지구와 허난성은 밀가루를 우선 시행하였다. 다른 지역과 성에서도 늦어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지역의 주식을 우선 시행하고 점차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시행초기 상황과 문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고. 「糧食統購統銷工作情況簡報」(1953.11.17.),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53-156.

26) 「全國各地糧食統購統銷工作情況」(1953.11.27.), 『政治運動資料庫』(CD판); 「中共中央關於認真做好農村中的糧食計劃供應工作的指示」(1954.3.24.),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75-178.

27) 「糧食統購統銷工作情況簡報」(1953.11.17.),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53-156; 「全國各地糧食統購統銷工作情況」(1953.11.27.), 『政治運動資料庫』(CD판).

국가에 식량이나 기타 물품을 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돈을 출금해주지 않는 일도 빈발했다. 1954년 봄에 이르면 각지 농촌에서 국가에 식량 판매를 요구했다.²⁸⁾

다급해진 정부의 무분별한 식량 공급정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농민들 사이에는 국가에 판매한 식량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조성되었고, 이는 농민이 국가가 농촌에 공급하는 식량을 앞다투어 구매하는 경향을 조성했다. 일부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식량을 구매할수록 또 다른 농민들은 식량부족을 체감했고, 정부는 계획보다 많은 식량을 농촌에 공급했음에도 이미 농민은 국가의 식량 공급을 신뢰하지 않았다.²⁹⁾ 이런 상황에서 식량 밀거래가 발생했음은 물론이었다.³⁰⁾ 국가는 여름의 농촌 수매를 걱정해야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중앙 정부는 농촌 '국가식량시장' 건립에 나섰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이미 농촌에는 국가에 식량을 판매하지 않으려는 정서가 확대되었고 식량 판매의 근거가 되는 생산량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해마다 농촌에서는 초과 식량 판매가 지속되었다.

2) 농촌 유통 경색과 국가식량시장의 설립

농촌에서 식량의 통구통소가 시행된 이후, 농촌 거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처음에 국가가 농민이 사용하고 남는 식량을 구매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던 만큼, 농민은 원칙적으로 공량을 납부하고 국가와 약속한 식량을 국가에 판매한 이후, 자신의 식량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 다만 통구통소 정책이 상인의 식량 거래를 금지했던 만큼, 농민은 식량을 국가 식량 기관이나 합작사, 혹은 "국가가 설립한 식량 시장"에서 직접 거래해야 했다. 정부는 식량 자급이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시장을 대신하여 식량 판매를 약속했고, 상인의 도시와 농촌 간 물자교류를 장려하여 농촌의 화폐를 회수하고, '국가자본주의식 소매망'을 형성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후 농민들은 남는 식량을 합작사나 국가시장에 팔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국가의 '소매망'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제도화된 것일까?

'통구통소' 시행 직후, 정부의 기대와 달리 농촌과 도시를 잇는 상인들이 사라지면서 도시와 농촌 사이 물자 유통 문제가 발생했다.

식량의 계획수매가 시행되고, 초급시장이 거의 멈추었다. ... 소수 지역은 이미 회복되었으나 절대 다수의 지역은 여전히 이상 침체에 있다. 초급시장의 침체는 일련의 문제를 일으켰다; 식량의 사회 조절이 중단되자 농민이 앞다투어 국가로부터 식량을 구매하여 국가의 공급 임무가 증가했다. 적지 않은 지구에서 식량 판매량이 국가계획을 초과했다. 부업 원료는 구매할 곳이 없고, 대량의 副食作坊³¹⁾이 폐업하였다. 허베이³²⁾의 불완전한 통계에 근거하면 폐업한 면방과 두부방이 6만여 호에 달한다.

28) 「中共中央批轉華東局關於加強糧食統銷工作的緊急指示」(1954.02.06.), 『政治運動資料庫』(CD판); 「中共中央關於認真做好農村中的糧食計劃供應工作的指示」(1954.3.24.),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75-178.

29) 「中共中央批轉華東局關於加強糧食統銷工作的緊急指示」(1954.02.06.), 『政治運動資料庫』(CD판); 「中共中央關於認真做好農村中的糧食計劃供應工作的指示」(1954.3.24.),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75-178.

30) 林洪, 「政法部門應保障糧食統購統銷政策的貫徹執行」, 『人民日報』(1954年3月7日).

31) 식량을 원료로 한 재래식 식품가공업장을 말한다. 농촌 내 대표적으로 양조장(糟坊), 제당방(糖坊), 기름집(油坊), 면방, 두부방 등이 있었다.

32) 「華北財委黨組關於努力活躍初級市場,增進城鄉物資交流的報告」(1954.3.15.),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83-185.

이 보고는 초급시장의 침체 원인으로 ①식량과 기름이 자유시장에서 이탈하여 초급시장의 상품과 거래 감소, ②과도한 시장과 상업 규제, ③국영 상업과 합작사의 역량 부족, ④도시와 농촌의 낮은 가격 차이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초급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식량시장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통구통소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농촌 식량은 영세 상인들을 통해 초급시장으로 유입되었다. 물론 농민이 식량이나 돈 등을 가지고 초급시장에서 직접 거래를 했으며, 어떤 경우 농민들이 비교적 많은 식량을 시장에 직접 운반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마을 혹은 농민 개인과 거래하는 량판(糧販)이 농촌에서 식량을 운반하여 초급시장에서 농민을 대리하여 식량을 판매하였다. 농민도 식량을 량판에게 대리하는 것이 편리할 뿐 아니라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³³⁾ 전국의 량판은 지역에 따라 운신 범위와 영업 규모, 명칭, 역할 등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농촌에서 식량을 초급시장의 식량상인이나 중개상(즉 아행)의 창고에 매집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모인 식량은 일부는 지역에서 소비되고 대부분은 상급시장으로 운송되었다. 농촌 초급시장에서 상급시장으로 식량을 유통하는 주체는 다양했는데, 량판을 포함한 크고 작은 도매상이나 전운상일 수도 있고, 중개상이나 도시의 량상이 직접 방문하여 수매하는 경우도 있다.³⁴⁾

이상의 상인들은 식량과 주요 농산품을 수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촌이나 농촌 집시로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향진을 오갔던 소도매상의 주 수입은 농민을 대신하여 식량을 시장에 출매하는 것으로, 이들이 농촌에 공산품을 공급한 것은 거래처 확보 경쟁에서 생겨난 일종의 서비스로 거의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 반면 상인을 대신하여 농촌에서 발전했던 공소합작사 조직은 상인과 시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다. 지역에 따라 공소합작사의 규모 차이가 컸고, 합작사 간부들은 식량 수매는 중시했지만 돈이 되지 않는 농촌의 상품 공급은 등한시하는 경향도 보였었다. 농촌에 농민과 물자의 왕래가 줄어들면서, 농촌의 집시나 초급시장이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통구통소의 시행 이후 농촌에 상품 종류와 수는 빠르게 감소했고 농민들은 돈이 있어도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것에 불만이 컸다.

또한 농민은 자급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였더라도 식량 거래가 필요했다. 농민들은 당장 사용하지 않는 식량을 팔아 급무를 처리하거나 부업생산 자금으로 활용했으며, 차후 부업수입이나 자금을 유통하여 먹을 식량을 다시 구매했다. 또한 일상적으로 농민들은 서로 생산한 식량을 소량으로 교환했는데, 이 모든 교환을 국가가 대신할 수는 없었다. 앞에서 소개한

33) 보통 량판은 주거래 중개상이나 식량상인이 있었고, 이들은 고객의 관리 차원에서 량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식량 가격을 과도하게 절하할 수 없었다. 반면 농민이 직접 시장에서 대량 판매할 경우, 량판보다 좋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또 량판 역시 주 고객인 농민을 경쟁 상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고, 그중 하나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공산품을 량가로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

34) 이 글에서는 농촌의 식량 상인이 농민과 비정기시장[스키너는 ‘minor market’ 혹은 ‘green vegetable market’ 이라고 표현했고 농민생산품의 수평 교환의 장소로 설명한다]으로부터 식량을 일차로 매집했던 초급시장과 그 상급시장으로 식량 시장을 비교적 단순하게 구분하였다. 초급시장은 스키너의 용어를 빌려 설명하면, 기층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빌린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기층의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스키너가 중간시장과 중앙시장으로 분석한 시장을 역시 사료에서 용어를 빌려 단순히 상급시장으로 칭하였다. 스키너에 따르면 기층시장이란 “농촌시장의 일종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품을 접할 수 있는 장소”로, 농민이 자급자족 외에 생산품을 교역하고 생산하지 않는 필수품을 구입하던 장소이다. 또한 농산품과 수공업이 상급시장으로 보내지는 출발점이자 농민소비에 충당되는 상품의 마지막 종착점이다. 스키너 G 윌리엄, 양필승 옮김, 『중국의 전통시장』, 신서원, 2000, pp.20-21; pp.28-32; pp.51-55 등 참고; 또한 본문의 농촌시장의 유통에 대한 이해는 다음 글을 참고했다. 許道夫, 『中國近代農業生產及貿易統計資料』, 上海人民出版社, 1981, pp.149-159.

국가의 초과 구매 달성에는 농민의 이러한 거래들이 포함되었을 것인데, 농민들은 뜻밖에 국가로부터 식량 재구매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상의 농민들의 경제 활동은 최종적으로 식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국가가 합작사나 상점에서 농민들에게 자유로운 식량 거래를 허용할 경우, 농민들이 국가 계획을 초과하는 양의 식량을 소비하거나 사재기하여 도시에 밀반입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 반면 농촌에서 개인의 식량 거래를 일괄 금지할 경우, 농촌 부업생산이 감소하고 농민의 경제활동과 농업생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촌의 물자 부족과 농민의 식량거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식량시장관리판법'은 정부가 처음부터 국가식량시장의 설립을 염두에 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가식량시장이 어떤 형태일지는 당시 구체화되지 않았다. 처음 통구통소의 시행 과정에서 지역의 간부들은 국가식량시장을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 정부도 식량 판매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농촌에 국가식량시장을 세우고 경험을 보고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중앙의 지시 이후, 각 지방에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국가식량시장 건립을 보고했다. 예컨대 산둥의 경우 "식량교역소"를, 산시는 농촌 "초급량식시장"을, 허베이 한단(邯鄲)에서는 "국가식량시장"을 설립했음을 보고했다. 이들 식량시장은 처음 각 지방에서 불렀던 명칭은 다양했지만, 아래의 허베이 보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역할은 대체로 '식량시장관리판법'에 따른 것이었다.³⁵⁾

식량 상인을 없애는 동시에 농민들간 식량 품종 교환과 유무(有無)를 교환하는 것을 제한하여, 식량 시장이 현재 사멸상태를 보인다. ...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지위(地委)는 ... 식량 문제에서 모든 것을 국가가 다하는 잘못된 사상을 비판하고, 국가식량시장 건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회의 후, 일 개월 이상 사업을 거쳐, 전구(全區)에 이미 72개의 국가식량시장을 건립하여, 시장마다 상시량이 일반적으로 1천근(斤)에서 3천근 가량, 많게는 7천근(량종은 참마, 소맥, 옥수수, 수수, 녹두, 기장 등)에 이른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공시가격과 서로 같고, 국가 공급이 부족한 개별 식량 품종은 즉 공시가격보다 조금 높게 한다. ... 다음 문제들을 주의한다: (1)국가식량시장의 건립 지점은 마땅히 국가식량 공급점 및 구 식량시장의 기초가 있는 집시를 선택함이 옳고, 너무 많이 세우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군중 교환을 해결하는 것을 [설립] 원칙으로 한다. (2)교역원은 구교역원 중 사상이 진보적이며, 충실하고 믿을 수 있으면서 사무 능력이 있는 자를 뽑아 맡긴다.³⁶⁾

정부는 1954년 3월 24일 농촌의 식량 계획공급 지시에서 농촌의 식량 구매와 공급에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농촌에 다시 민주평의를 열어 결량호를 정하고 부족한 식량을 공급했다. 또한 "집진(集鎮) 중 국가가 관리하는 식량시장을 설치하여, 농민과 소비자가 시장에서 정부의 법령에 따라 직접 교역"하도록 하고, 농민이 식량시장 밖에서 소량의 식량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했다.³⁷⁾ 이후 정부가 설립한 '국가식량시장'에 대해서는 다

35) 「中共中央批轉華東局關於加強糧食統銷工作的緊急指示」(1954.02.06.); 「中共中央批轉山西省委關於積極組織農村初級糧食市場的指示」(1954.04.09.), 『政治運動資料庫』(CD판)

36) 「中共中央批轉邯鄲地委關於建立國家糧食市場的幾點經驗向河北省委的報告」(1954.3.22.), 中央檔案館,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中共中央文件選集(1949年10月-1966年5月)』 第15冊(1954年1月-3月), 北京:人民出版社, 2013, pp. 495-496; 497-498; 선행연구도 이상의 보고를 일부 인용했다. 何帥波, 앞의 논문, p.100, 재인용.

37) 「中共中央關於認真做好農村中的糧食計劃供應工作的指示」(1954.3.24.),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 175-178.

음 인민일보 사론을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국가가 설립한 식량시장은 ... ‘증빙’에 따른 ‘계획공급’과는 다르고, 식량 통구통소 이전 사영 상인이 참여했던 ... 식량의 ‘자유교역’과도 다르다. 즉, 국가가 관리하고 상인의 참여가 없는 농촌 상품량의 유통을 조절[調劑]하는 식량 시장으로, 농촌의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수요자 사이 교환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직접 조절하고, 서로 간에 있고 없음[有無]을 통하게 하는 교역장소다.

인민일보 사론은 국가가 식량을 전부 수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에 남는 식량이 있고, 혹은 남는 식량이 없어도 농민들이 기회가 있으면 “주전성(周轉性)” 거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식량시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주전성’이란, 바로 농민이 부업생산이나 기타 경제 활동을 위해 자신이 먹을 몫의 식량을 팔고 이후 다시 구매함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식량시장의 이용은 설립 목적에 따라 식량 거래가 필요한 농민과 식량을 원료로 한 부업생산자로 제한되었고 식량상인은 물론 출입할 수 없었다.³⁸⁾

국가식량시장은 과거 교역소와 역할은 달랐지만 운영방식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정부는 국가식량시장에 “교역원”을 두어 거래 등기와 물건의 무게를 재어 거래를 돕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게 했다. 항 정부는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민이 부업 등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식량 구매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등기를 해주었고, 농촌 소매점이 경영에 필요한 식량을 구매할 경우 소개 편지를 주어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국가식량시장은 농민간 거래량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았는데, 특히 식량을 판매하는 것에는 전혀 제한이 없었다. 거래 가격은 국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 희소 상품들은 공시가격 보다 조금 높게 거래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거래 쌍방이 공시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정했으며, 다만 고의로 식량을 매집하는 경우는 엄격히 단속했다.³⁹⁾

이상의 국가식량시장은 중앙 정부의 의지와 달리 전국에 설립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중앙 정부는 5월 27일 ‘限期建立國家糧食市場的指示’를 내려 6월까지의 전국 농촌에 국가식량시장을 보편적으로 세울 것을 지시했다.⁴⁰⁾ 그 이후 국가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7월 22일 까지 전국에 총 22,342개의 국가식량시장이 설립되었다. 각기 지역별로 화베이구에서 3,157개, 동베이 748개, 內蒙古 187개, 화동 5,452개, 중난 7,929개, 시베이 1,058개, 시난 3,811개 등이 세워졌다. 식량부의 종합 보고는 9월 말까지 식량시장이 30,361개로 늘어났고, 특히 동베이에 1,408개, 화동 7,345개, 중난 10,647개, 시난 5,547개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⁴¹⁾ 천원의 연설을 근거로 1953년 전국에 대략 26만개의 향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략 8~9개 향에 하나의 국가식량시장이 세워진 것이다. 스키너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대략 5만 8천개의 기층시장을 추정했고, 이것에 비교해본다면 국가식량시장의 밀도는 대략 농촌 기층시장 두 곳 중 한 곳에 설립된 정도로 작은 규모는 아니었다.⁴²⁾

조사에 따르면 국가식량시장의 설립 장소는 다음 몇 가지로 분류되었다: ①현성 집진(集鎮)에 설립된 전문 식량시장; ②일반 초급시장에 증설한 식량시장; ③식량 기관의 ‘공급점[供應點]’과 공소합작사가 부설한 “수매, 공급, 조절[調劑] 기능이 결합된” 교역 시장, ④장시[逢集]

38) 「認真組織國家領導的農村初級糧食市場」, 『人民日報』, (1954.5.18.).

39) 위의 글, 『人民日報』, (1954.5.18.).

40) 「中共中央關於限期建立國家糧食市場的指示」(1954.5.27.),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86-187.

41) 「糧食部關於國家糧食市場情況的報告」(1954.7.30.); 「糧食部關於第三季度工作綜合報告」(1954.11.12.)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87-190, pp.190-191.

42) 양필승, 앞의 책, p.160.

조직의 정기 식량 시장과 농촌 노천시장. 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은 주로 비 주식(主食) 상품으로, 북부의 소맥과 잡량을 주식으로 하는 곳에서는 농민간 품종교환이 많았고, 남방에서는 주로 서로 부족한 식량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보고 내용을 통해 정부의 의지에 따라 농촌에 식량 거래 장소가 빠르게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어떤 곳은 농촌 장시에서도 식량 거래가 가능했을 것이고, 어떤 곳은 공소합작사가 식량 수매를 위해 만든 창고에 부설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곳은 겨우 현성이나 진에 한 두 곳이 설립된 지역도 있었을 것이다. 조사보고는 농민들이 대체로 국가식량시장에 대해 환영과 안도감을 표했으며, 국가식량시장이 농민의 여량 판매와 농촌의 통구과정에서 품종의 부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⁴³⁾

3 국가 식량시장의 운영과 '三定'정책

1) 국가식량시장의 운영과 농촌 문제

국가가 설립한 식량시장은 정부의 농촌에 대한 식량 공급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의 식량 수요를 지역 내에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식량시장은 1954년까지도 통일된 규정 없이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제각기 운영되었다. 이것은 국가의 식량수매와 분배 정책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왔다. 1954년 상반기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이 국가에 식량을 판매하는 것과 국가식량시장에서 식량 거래를 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예컨대 산시, 허난, 산둥 등지에서는 국가식량시장에서 계획수매(즉 통구)에 해당하는 식량 거래를 허락하고, 농민이 통구 식량을 판매한 경우 증명을 발급하여 그의 임무 수량으로 인정해 주었다. 또한 국가식량시장에서 농민이 식량구매 시 필요를 증빙하도록 하고, 이렇게 판매한 수량을 국가의 계획공급량에 포함시켰다. 이들 지역에서는 국가의 통구통소 식량과 국가식량시장에서 유통되는 식량을 함께 취급했고, 국가식량시장에서 식량 판매가 국가의 식량 공급량의 확대로 이어졌다.

반면 허베이에서는 농민이 국가식량시장에서 통구에 속하는 식량을 교역할 수는 있었지만, 이것을 통구 임무로 인정해 주지는 않았다. 즉 허베이에서는 통구통소 식량과 지역 내 농민의 식량 거래를 위한 “주전량(周轉糧)”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장수, 저장, 안후이, 광시, 후베이 등의 지역은 국가식량시장에서 통구 식량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자연히 이들 지역에서는 국가식량시장의 거래량이 제한적이었고 시장의 이용률도 높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54년 가을 계획수매를 앞두고 국가식량시장을 닫을 것인지 혹은 개방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식량시장을 계속 운영한다면, 농민이 국가식량시장에서 사고파는 “주전량”을 국가의 계획수매로 인정해 줄 것인가도 문제가 되었다.⁴⁴⁾

중앙 정부는 국가식량시장의 운영을 규정하지 않고, 당지 상황에 맞게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각 지역은 가을 수매를 전후하여 각자 운영 방법을 바꾸었다. 예컨대 허난은 국가수매 기관이나 국가식량시장에 통구 식량을 판매할 경우, 이전처럼 모두 통구 임무로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산시와 허베이는 허베이에서 하던 방식으로 통구 식량을 국가식량시장에서 판매할 수는 있지만, 지정된 곳에 팔지 않는 이상 임무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산둥, 광둥, 산시(陝西), 네이멍구, 랴오닝, 지린, 구이저우 등은 국가식량시장에서 통구 식량을 국가에게 판매한 것은 임무량으로 인정해 주었고, 개인에게 판매한 것은 임무량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장수, 후베이를 포함한 후난, 쓰촨, 윈난은 통구통소 기간동안 국가식량시

43) 「糧食部關於國家糧食市場情況的報告」(1954.7.30.),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87-190.

44) 「糧食部關於國家糧食市場情況的報告」(1954.7.30.); 「糧食部關於第三季度工作綜合報告」(1954.11.12.)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87-190, p.191.

장에서 통구에 해당하는 식량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저장, 푸젠, 장시에서는 국가의 예약구매나 계획수매 완성을 증빙한 경우에만 국가식량시장에서 통구 식량의 교역을 허락하였고, 이때 판매된 수량은 통구 임무로 인정해줬다. 이상의 지역간 각기 다른 운영 방식은 현장의 혼란을 더하였으며, 국가의 계획수매 동안 식량 거래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국가식량시장의 이용율이 높지 않아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다.⁴⁵⁾

무엇보다 1954년간 국가식량시장 운영만으로는 농민의 식량부족과 유통경색의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 1954년 11월의 공작보고는 농촌 식량 공급 문제가 정부에게나 농민에게나 여전히 가장 큰 불만 거리였음을 보여준다. 어떤 농촌은 식량이 과다하게 분배되었고, 어떤 농촌은 정말 식량이 부족했다. 허난 鞏縣 八量鄉에서는 농민이 식량 부족량을 과다하게 보고해왔음이 드러났던 반면, 허베이와 한 현에서는 식량이 부족하거나 제때 공급되지 못하여 농민이 굶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또한 장수에서는 농민들이 “통소권은 너희들에게 있지만 통구권은 우리에게 있다”거나 “작년에 내가 속았지만 올해 나에게 24번을 나리마님으로 불러도 식량을 안 팔 것이다”, “너희들은 입당을 쟁취할 것만 생각하고 전촌을 해롭게 한다”고 말하는 등 농촌 곳곳에서 가을의 국가 계획수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보고되고 있었다.

농민들은 일 년간 국가의 식량 통제를 경험하면서 정부가 ‘남는 것을 구매’하겠다는 구호를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가져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농촌에는 보편적으로 식량판매 대상인 ‘여량호’가 되는 것을 꺼렸고, 소수의 식량이 부족한 ‘결량호’는 국가에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을 공급받지 못할까 걱정했다. 자급자족 농가는 식량을 국가나 국가식량시장에 판매하면 나중에 식량을 구매하지 못할 것을 염려했고, 이런 경향은 농가의 농업부업 생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농민과 간부는 각자 생산량과 소모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했다.

하북 현삼급(縣三級) 간부회의 보고는 ... 이중장부를 만드는 현상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즉 한 장부는 비교적 실제에 가깝거나 혹은 조금 속인 것이고, 한 장부는 생산량을 비교적 크게 숨긴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가장 적게 속인 보고가 생산량의 10% 가량을 속였고, 가장 많은 경우 30%를 속였다. 정확한 생산량과 소비량을 평정하는 것은 하나의 크고 복잡한, 정확히 하기 어려운 일로, 통구의 양대 관건이다.⁴⁶⁾

이처럼 농촌의 식량 유통 문제는 이상과 같은 농촌 생산량의 은폐와 결량의 허위 보고를 심화시켰다. 그 밖에 멀리 떨어진 식량 공급처와 수량의 제한, 저질의 식량과 부족한 식량 종류, 소매식품점의 축소, 부식품 및 생필품 공급 부족 등 농촌의 식량 유통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불만이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었다.⁴⁷⁾

반면 중앙 정부의 농촌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었다. 예컨대 단순히 생산이나 결량 수량의 허위 보고만 아니라, 사망이나 심각하게 보고된 사건들이 재조사 과정에서 과장이나 허위로

45) 「糧食部關於第三季度工作綜合報告」(1954.11.12.),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90-191.

46) 「糧食統購統銷工作情況簡報」(1954.11.19.),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78-180.

47) 11~12월간 각지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關於西北農村一些情況給中央的報告」(1954.12.30.); 「中共中央華北地區工作部關於參加河北省委擴大幹部會議中所了解到的農村一些情況和問題向中央的報告」(1954.11.9.), 中國社會科學院中央檔案館 編,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綜合卷』, 北京: 中國物價出版社, 2000, pp.986-990, pp.982-986(이하 『檔案資料選編-綜合卷』으로 약칭한다.); 「熱河省餘糧戶抵抗購糧的各種方法」(1954.11.23.) 宋永毅 主編, 『中國大躍進-大饑荒數據庫, 1958-1962』,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14. (CD판)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다. 통구통소 시행 일 년간, 정부는 누가 국가에 얼마의 식량을 판매하고, 누구에게 식량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를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계획보다 많은 식량을 농촌에 판매했음에도 1955년 봄까지도 각 지에서 농촌에 공급할 식량이 여전히 부족함을 중앙에 보고하고 있었다. 실제로 1955년의 국가가 농촌에 식량을 판매한 수량은 1954년보다 증가하였다.⁴⁸⁾ 정부는 식량 통구통소를 둘러싼 농촌 물자 경색, 식량의 초과 판매 문제, 국가식량시장 운영 등의 농촌 내 혼란을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간 물자교류를 신장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2) '삼정' 정책과 농촌 유통의 변화

정부는 농촌에서 식량 수매량과 판매량을 결정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삼정(三定)' 정책⁴⁹⁾을 도입했다. 정부는 먼저 전국 농촌의 식량 생산량과 사용량을 새로 조사하여, 식량 수매량과 판매량을 산정한 후 3년간 고정했다. 또한 농민에게 식량이 남아도 강제로 구매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증산을 장려함으로써, 정부는 대부분의 농촌에서 여량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농촌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1955년 봄부터 1954년 통구기간 동안 폐쇄된 국가식량시장이 우선 재건되었으며, 삼정정책의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농촌 량식 통구소 명령이 공포되었다. 이 명령은 줄곧 문제가 되었던 국가식량시장 운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⁵⁰⁾

새로운 규정은 통구통소 식량과 국가식량에서 거래하는 식량을 확실히 분리했다. 농민이 국가식량시장에서 국가에게 식량을 판매해주는 경우 "주전량증(周轉糧證)"을 발급하여 농민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 수량만큼 재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시장에 수납된 "주전량(周轉糧)"은 통구통소 식량과 별도로 관리되었다. 국가식량시장에서 개인간 거래는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 별도의 증빙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농민은 국가식량시장에서 식량 재구매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식량을 팔아야 했고, 개인간 거래는 남은 식량을 서로 교환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구분되었다.

또한 국가의 계획수매 기간 국가식량시장의 운영에 관해서도 명시되었다. 계획수매가 선언되면 계획수매에 해당하는 식량은 국가식량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되었다. 이후 현 인민위원회가 계획수매 완료를 선언하면 해당 식량의 거래가 재개되었으며, 반면 기타 식량들은 계획수매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국가식량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식량시장은 점차 상설 기관으로 자리하였고, 국가식량시장을 관리하는 교역원도 겸직이나 임시가 아닌 전담인원이 배치되었다.⁵¹⁾ 이처럼 정부는 삼정정책을 통해 계획된 수량의 식량을 확보하고, 일부 농촌

48) 「糧食部關於當前糧食購銷情況及幾項主要工作執行情況的簡報」(1955.4.26.); 「中共中央國務院關於加緊整頓糧食統銷工作的指示」(1955.4.28.),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56-158, pp.180-181.

49) 농촌 식량의 "정산(定產)", "정구(定購)", "정소(定銷)"를 뜻한다. 1955년 봄부터 농촌 통소 정돈 사업과 함께 시험되어 5~6월간 성과가 있었다. 6월 개최된 전국 식량회의는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農村糧食統購統銷暫行辦法"와 "城市糧食定量供應暫行辦法"을 초안하였고, 8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이른바 농촌 '삼정' 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한다. 「關於農村糧食統購統銷暫行辦法的命令」(1955.8.25.), 中央人民政府糧食部辦公廳編, 『糧食工作法規彙編(1955)』, 1955, pp. 1-8.

50) 「糧食部關於加強國家糧食市場工作的指示」(1955.4.2.); 「糧食部關於當前糧食購銷情況及幾項主要工作執行情況的簡報」(1955.4.26.),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91-193, pp.156-158

51) 「關於農村糧食統購統銷暫行辦法的命令」(1955.8.25.) 제7조, 제8조 참고.

제7조 농민은 경제적 주전(周轉) 혹은 상품의 조절(調劑) 수요로 인하여, 스스로 사용할 식량을 식량 통구 가격에 근거하여 국가에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구매할 수 있다. 국가는 응당 수매하고 '周轉糧證'을 발급한 이후 식량의 통소 가격에 근거하여 구매를 증빙(證憑)해준다. 다만 농민의 주전

의 부족한 식량은 내부 식량망을 통해 가능한 지역 내에서 자체 조절하도록 장려했다.

정부는 통구통소와 국가식량시장의 운영을 정돈하는 동시에 농촌 부식품과 유통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했다. 다음 장에서 논할 자유시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여기서 농촌 유통에 대해 잠시 설명을 덧붙이면, 1955년 이전까지 농촌 물자는 사실상 공소합작사가 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공소합작사는 국가를 대리하여 농촌에서 식량과 면화, 기름 등의 국가 계획유통 물자를 수매하고 공급했을 뿐 아니라, 각종 공산품과 식품 등 주요 생활 필수 물자들을 농촌에 공급했다. 그러나 1954년 말까지도 공소합작사 유통망은 여전히 상인들의 유통망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반면, 농촌 상인들은 나날이 자취를 감추어 농촌의 물자 유통 문제는 심화되고 있었다.⁵²⁾

촌에서는 식용유와 면, 두부, 가공식품 등의 공급이 부족하며, 설탕, 석탄과 석유, 기타 공산품도 공급이 빠듯해 여기저기 줄을 서야 했다. 많은 지방에서 10여 종의 상품은 모두 줄을 서야 살 수 있고, 멀리 달려가야 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농민들은 “합작사는 바빠서 죽고, 농민은 기다리다 죽으며, 사영상인은 한가해서 죽는다”라고 반응했다. 농민들은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농산물을 팔려고 하지 않았다.⁵³⁾

정부는 처음에 농촌 소상공인들을 지도하여 ‘국가자본주의 소매망’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물자 유통을 보조한다는 구상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인들이 폐업하거나 전업함으로써 농촌 물자경색이 심해지고 암거래가 성행하자, 정부는 농촌 소상공인들을 공소합작사에 직접 소속 시킴으로써 국가 상업망에 포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소합작사 지도부는 1955년 1월 농촌 사영사업 개조 회의를 개최하여 농촌의 사업을 사회주의로 적극적으로 개조하는 방안들을 채택했다. 지도부는 농촌 무역을 사회주의 경제에 속하는 국영무역과 합작사무역, 그리고 사영무역과 농민무역⁵⁴⁾으로 분류하고, 사영무역을 개조 대상으로 삼았다. 사영무역은 다시 상업자본가, 부농겸상, 소상공판 세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각기 특성에 맞는 개조 방침이 정해졌다. 예컨대 상업자본가는 합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소합작사의 직판점[門市部] 혹은 부속기업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했고, 부농겸 상인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여 그 수를 제한하였다. 반면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합영보다는 대리매매를 장려하고, 특히 원래 이들이 해왔던 영업 방식을

량 출매를 독려할 수 없다. 주전량은 마땅히 통구, 통수의 식량과 별도로 통계한다.

제8조 식량 수확 이후, 식량 통구 사무가 끝나기 전까지 통구 식량 품종은 오직 국가에만 판매할 수 있고 사인에게 판매를 허락하지 않는다. 비 통구 식량 품종은, 국가의 식량시장에서 수시로 교역을 허락하고 제한하지 않는다. 식량의 통구임무 완성 후, 현급 인민위원회는 마땅히 정식으로 식량 통구 완료를 선포하고, 통구 식량 품종이 국가식량시장에 진입하여 교역하는 것을 허락하고, 국가식량시장의 업무를 시작한다. 국가식량시장에서 식량 교역을 진행하는 구매측과 판매측은 모두 어떤 증빙도 불필요하며, 다만 식량의 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격히 금지한다.

52) 공소합작총사의 1955년 자료는 1954년간 농촌에서 사라진 상인이 약 69만 가구, 1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며, 이는 1953년 말 농촌 전체 상업종사자의 약 22%에 해당했다. 국영상점과 합작사가 경영하는 “사회주의 상업”은 농촌 수매에서 거의 70%에 달하는 농부산품을 장악했으며, 농촌 소매에서 비중은 1953년 말 약 44%에서 1954년 말에 약 60%로 증가했다. 「全國供銷合作總社黨組關於對農村私營商業進行社會主義改造的報告」(1955.3.7.),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470-484.

53) 「中共中央關於進一步加強市場領導、改造私營商業、改進農村購銷工作的指示」(1955.04.12.), 『政治運動資料庫』(CD판).

54) 여기서 농민 무역은 서로 필요한 상품을 교환하는 거래로, 전체 농업거래에서 비중이 적지만 농민수입을 증가시키고 생산 의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 시장을 열어주고 거래를 돕게 했다. 지도부는 “성시에 지구를 나누어 정하여, 시장을 세우고 경기인, 보관인 등을 배치”하였으며, 농민들의 활동을 장려하여 도시와 농촌의 소통과 도시 농부산물 공급을 증가하도록 했다.

무분별하게 바꾸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상의 정책을 거쳐, 전 농촌에 약 255만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국가 상업망을 건설하는 이상향을 제시하였다.⁵⁵⁾

이후 국가의 농촌의 유통체계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계획 물자의 도소매망과 합작사와 조직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공산품과 소토산품으로 나누어졌다. 정부는 공소합작사가 소매망을 건설하여 공산품과 기타 토산품의 유통에 전념하게 하고, 국가의 계획수매와 판매 물자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이 직접 경영하도록 했다. 이로부터 식량부가 기존에 공소합작사가 맡았던 농촌에서의 식량 수매와 분배 업무를 직접 관리하였고, 공소합작사의 량참을 비롯한 식량의 구매와 판매 기구는 모두 식량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기름작물과 양돈과 같은 다른 국가 수매 상품도 상업부의 전담 기관들이 직접 관리했고, 지역의 주요 특산품도 국가의 수매 부서가 새로 설립되어 수매를 전담했다.⁵⁶⁾

그러나 1956년까지도 공소합작사의 농촌 상인들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보고되었는데, 특히 일부 영세 상점과 떠도는 상판까지도 합병함으로써, 농촌의 영세한 물자 수매와 소토산품 거래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었다.⁵⁷⁾ 또한 1955년 하반기에 농업생산 합작사가 이미 전국에 약 190만 개가 건설된 이후, 농민의 노동시간이 증가하여 농민들이 생필품의 구매를 위탁하거나 합작사가 계획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를 대리했고, 농민의 부업 활동이 제한되면서 국가 소매망이 확대되었지만, 오히려 농촌시장 거래는 줄어들었다.⁵⁸⁾

4 자유시장 문제와 국가식량시장의 폐지

1) 자유시장과 국가식량시장

‘자유시장’은 ‘자본’의 경제 논리를 따르는 ‘시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줄곧 투쟁과 극복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개조 완료가 선언된 직후 1956년에 등장한 ‘자유시장’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유시장’은 본문의 ‘국가식량시장’과 같은 시장을 가리키는 것이었을까?

농촌의 자유시장을 논한 연구들은 자유시장이 개방된 배경으로 1955년의 사회주의 개조를

55) 정부는 공소합작사 직판점을 집진(集鎮)마다 설립하고, 영세 농촌상인들을 위성 조직으로 두어 도시의 공산품이 농촌까지 계획에 따라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국가상업망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 1957년까지 중급이상 규모의 집진에는 3~5곳의 소매 직판장을 세우고, 문시부 마다 대략 3명의 인원이 배치하여, 약 3만 6천개의 집진에 대략 27만 5천명의 인원을 조직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향마다 소매 분점을 두고 상업 합작소조와 방물장수, 기름꾼 등을 조직하여 농촌 소매망을 완성하고, 집진마다 농부산물 수매참과 농촌 수매점을 조직하여 전국에 모두 255만 명으로 구성된 국가 상업망을 구상했다. 위의 글,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470-484.

56) 「中共中央關於進一步加強市場領導、改造私營商業、改進農村購銷工作的指示」(1955.04.12.), 『政治運動資料庫』(CD판).

57) 「全國供銷合作總社關於當前農村私營商業社會主義改造中應注意的若干問題的指示」(1956.2.28.),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 493-497

58) 후술할 1957년 국무원이 반포한 자유시장에 관한 규정은 국가가 시장을 설립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도시와 농촌의 중요 물자교류는 원활했지만, 농촌의 일부 소토산물은 수매자가 없고, 도시의 일부 수공업품은 농촌에 내려가 판매할 사람이 없어 도시와 농촌 교류에서 ‘큰 것은 유통되고 작은 것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같은 도시와 농촌 교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56년 하반기 농촌 소토산에 대한 자유시장 개방을 결정했다.” 「國務院關於由國家計劃收購(統購)和統一收購的農產品和其他物資不准進入自由市場的規定」(1957.8.9),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秘書廳,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公報』 109(36), 1957.

꼽는다. 1955년 사회주의 개조와 국가 상업망의 확대 과정에서 농촌의 초급시장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진다. 농업협작사가 개인의 부업경영을 금지한 결과, 농촌시장이 사라졌고 농촌 내 물자 유통 문제가 끊이지 않아 ‘자유시장’ 개방이 불가피했던 설명이다.⁵⁹⁾ 선행연구들이 지적하였듯이 자유시장은 농촌 초급시장의 침체와 부업과 관련 있었다. 특히 1956년 여름까지 농촌에는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나는 봄 가뭄으로 9개 성에 약 12,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식량이 부족하거나 빈곤에 처한 가정이 급증하였다. 심지어 자살이나 아동유기, 농민의 이촌과 도망 등이 보고되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부업생산이 눈에 띄게 감소한 점이다. 정부 보고는 부업생산이 농민 구매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부업의 소멸이 농가 빈곤을 가중하고 농촌 구매력에 영향을 주어 도시와 농촌의 물자교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겼다.⁶⁰⁾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농촌에 ‘자유시장’을 열어 농가 생산품과 부업원료 등의 小토산품 거래를 장려한 것이다. 이상의 ‘자유시장’은 1956년 ‘第八次全國代表大會’에서의 천원의 발언을 통해 중앙 지도부의 생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상품에 대해 선택구매와 스스로 판매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많은 영세 공장들이 단독 생산하게 하고, 수많은 수공업 협작사를 작게 나누어 조(組)나 세대(戶)로 나누어 분산 경영하고, 많은 부업 생산을 농업협작사 사원 개인 경영에 맡기며, 소토산물의 시장관리를 느슨하게 한다. ... 생산계획 부분에 있어, 전국 공농업 생산품의 주요 부분은 계획에 따라 생산하지만, 동시에 일부 생산품은 국가계획의 허가 범위 내에서 시장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생산한다. 계획생산은 공농업 생산의 주체이고, 국가계획의 허가 범위 내에서 시장변화에 따른 자유생산은 계획생산의 보충이다. 따라서 우리의 시장은 절대 자본주의의 자유시장이 될 수 없고, 사회주의의 통일시장이 된다. 사회주의 통일시장 내에서 국가시장은 그 주체이고, 다만 일정 범위 내 국가가 지도하는 자유시장이 딸려있다. 이러한 자유시장은 국가지도 아래 국가시장의 보충으로 되며, 따라서 이는 사회주의 통일시장의 구성 부분이 된다.⁶¹⁾

이처럼 ‘자유시장’은 ‘소토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부업 생산량의 일부를 소토산물 자유시장에 맡겨 계획 생산의 ‘보충’으로 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가식량시장은 통구통소 정책에 대한 ‘보충’으로, 설립 목적은 농민의 식량 ‘유통(周轉)’과 농민 상호간의 식량 교환에 있었다. 즉 국가식량시장과 ‘자유시장’은 모두 과거의 자유시장을 대신하여 농촌에 자리한 ‘국가가 지도하는 시장’이지만, 같은 목적으로 운영된 동일한 공간은 아니었다. 다만, 천원의 구상에서 양자 모두 ‘국가시장’ 혹은 사회주의 경제를 보조하는 시장으로서 사회주의 ‘통일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국가시장’이란, 문맥을 고려해봤을 때 사회주의 경제 부분으로 국가계획 내에 포함된 유통 조직을 가리키며, 예컨대 국영상점이나 공소협작사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1956년 10월 농촌에서 자유시장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국가식량시장은 정말 자유시장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었을까? 이상의 질문은 1956년 10월 통구통소의 시행 지시에서 국가식량시장이 여전히 운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56년의 통구통소 지시를 살펴보면, 국가식량시장이 1955년 규정대로 운영되었으며, 다만 새롭게 국가식량시장의 상품가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국가식량시장에서 주요 식량인 예컨대 쌀, 보리, 옥수수,

59) 대표적으로 다음 연구가 인용된다. 武力, 앞의 논문, pp.6-8.

60) 中央农村工作部:农村副业生产的若干情况简报(1956.7.26), 『檔案資料選編-綜合卷』, pp.992-996.

61) 「關於資本主義工商業改造高潮以後的新問題」(1956.09.20.), 『人民日報』(1956.9.21.); 武力, 위의 연구, p.7, 재인용.

잡두, 황두 등은 “국가 통구와 통소 가격 사이”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규정했고 반면 잡량의 가격은 “느슨하게 풀어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가격정책에서 중요한 식량과 잡량을 구분함으로써 국가식량시장 가격이 국가의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²⁾

소토산품 ‘자유시장’이 개방된 이후, 정부 보고들은 자유시장이 부업생산 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물자교류, 국영상업과 공소합작사의 경영관리 개선에 긍정적임을 표하였다. 그러나 ‘자유시장’이라는 명칭 아래 거래가 허락된 상품이 모호하게 표현된 결과, 자유시장 개방 이후 시장 거래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통구통소의 계획수매 물자와 공소합작사와 국영상점의 통일수매 물자, 그리고 자유시장에 개방할 물자를 재분류했다. 이때 정부가 구상했던 물자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1) 농부산품의 관리 분류와 품목⁶³⁾

구별	상품종류
제1류 물자(통구 실행 물자)	식량, 량유, 면화 생저, 황마, 저마, 대마, 담배잎, 사탕수수 집누에고치(家蠶繭), 찻잎, 양모, 우피, 수출 皮張, 토당, 토지, 동유, 폐동, 폐주석, 폐납, 주생산지의 목재, 주요산구 수출 사과, 감귤
제2류 물자(국영상업 또는 공소합작사의 수매 물자)	주요어산구[舟山, 칭다오, 옌타이, 탕구, 旅大]의 수출과 베이징, 톈진, 상하이에 공급하는 수산품 약간의 중약재, 楠竹, 棕片, 生漆, 주요산구의 수출에 공급하는 호두, 아몬드, 씨앗 [黑白瓜子], 밤, ... 등의 건과. 분산산구의 주요 공업원료와 주요 수출물자; 목재, 사과, 귤, ... 등. 성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스스로 결정한 상품
제3류 물자(자유시장 개방물자)	제1류와 제2류에 속하지 않는 물자; 닭, 오리, 계란, 채소, 小토산물 및 비주요 생산지의 수산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제1류와 제2류의 물자는 계획수매와 통일수매 임무를 완성한 후 남는 부분은 농업사와 농민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자유시장 규제가 완화된 한편 계획수매 물자 범위가 식량, 면화, 기름에서 크게 확대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합작사와 국영상점이 운영했던 “통일수매 물자”를 나누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계획수매와 자유시장에서 유통되는 물자로 양분하고, 통일수매 물자를 점차 축소시켜 나갔다. 또한 정부는 국가기관이 장악한 제1류 물자와 자유시장의 제3류 물자에 각기 다른 가격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양자의 가격 변동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즉 정부는 제3류 물자가 설사 물가 파동을 일으켜도 “대국”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소수 품목의 증산을 자극하여 희소 물자의 공급과 부업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제1류와 제2류의 물자는 계획수매와 통일수매 임무를 완성한 후 남는 부분은 농업사와 농민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정부의 의도는 농민들 사이 자신의 부업 생산품이나 부업에 필요한 소토산품을 직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민의 부업생산에 편리를 제공하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1류에 속하는 대표적

62) 「糧食廳黨組關於1956年至1957年度糧食統購統銷工作意見」(1956.10.25.), 中華人民共和國糧食部辦公廳編, 『農村糧食統購統銷文件彙集(1956-1957)』, 1958, p.171.

63) 다음 표를 참고, 「附:農副產品管理範圍主要的品種目錄」, 『檔案資料選編-綜合卷』, p.1078.

인 상품인 식량은 이미 농민들간 거래를 위한 국가식량시장이 설립되어 있었고, 이때 식량이 부업을 핑계로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가는 문제의 소지가 되었다. 더욱이 정부가 자유시장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소상인과 행상의 시장 이용을 완화하였고, 간부들은 물자교류를 위해 화산을 회복하고, 농민교역소와 합작화산을 건립하고 시장관리위원회를 재건하여 시장을 관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⁶⁴⁾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비록 상품의 품목을 제한했지만 사실상 사회주의 개조 이전의 신민주주의 시기 시장으로 회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시장에서의 식량을 포함한 제1류 물자와 제2류 물자의 모호한 거래 규정은 전국 현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만들었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 자유시장 논란과 국가식량시장의 폐지

자유시장의 느슨한 운영과 예견된 문제들은 1957년 동안 갖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우선 1957년 1월 인민일보 사론으로부터 소개해보고자 한다.

농촌 자유시장을 개방한 후, 확실히 일부 문제가 발생하였다; 시장에서 "무허가 상인[無證商販]"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몇 년 동안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가짜 섞기[摻假], 단량질[短秤], 고가 매수, 투기 활동 현상이 다시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미 조직된 소수 소상공인들이 '합작소조(合作小組)'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농업사의 사원들은 농사를 버리고 상업을 경영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자유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몇몇 상품의 가격이 오른 것에 불만을 느꼈다.⁶⁵⁾

이때 기사는 농촌 자유시장의 긍정적인 역할도 함께 기술한다.

현재 농촌 자유시장을 개방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의 좋은 점은 아주 뚜렷하게 보였다. 예를 들어 우한시가 교외 자유시장을 개방한 이후 도농 무역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지난해 11월 농민과 외지 상인들이 시내에 나와 물건을 판 사람은 자유시장 개방 이전인 7월보다 5배, 거래액은 12배 증가했다. 시장가격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다. 생산과 판매가 직접 만나, 경영이 좋고, 농민들이 제품을 파는 소득이 늘어나 생산 의욕을 자극했다. ... 이러한 사실은 농촌 자유시장 개방이 도농 물자교류를 활성화하고, 농부업 생산을 활성화하며, 국영과 공소합작사 상업의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데 큰 추진과 자극을 주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 많은 지역의 예는 농촌 자유시장을 개방한 후, 많은 농민들이 일상적인 소비재의 자유 구매에 대해 훨씬 편리해졌음을 증명한다.

이상의 인민일보 기사는 자유시장의 장점을 선전하고, "개별 불법 상인의 위법 행위를 잘 대처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또한 1957년 5월 류사오치의 "정풍문제"에 대한 담화에서도 자유시장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파괴'를 제한해야 한다는 발언이 담겨있지만, 아직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말을 했음을 알 수 있다.⁶⁶⁾ 1957년에 국무원이 반포한 여름 식량 통구통소의 지시 역시 과거 규정과 유의미한 차

64) 「國務院第五辦公室:農村市場彙報會議紀要」(1956.11.5.), 『檔案資料選編-綜合卷』, pp.1073-1078.

65) 「正確看待農村自由市場」, 『人民日報』, (1957.01.29.).

66) 刘少奇关于高级党校学员整风问题的谈话(1957.05.07.), 宋永毅 主編, 『中國反右運動數據庫, 1957』,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13. (CD판)

"소련의 교훈은 ... 계획 경제만 따지고 융통성이 없어, 다양성·유연성이 없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 한 가지 방법은 자유시장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우리는 일부 자본주의 상업, 공업, '지하공장(地下工廠)'을 허용해서 그가 틈을 타도록 해야 한다. 그가 틈을 타면 우리 사회경제는 즉시 따라간다. ... 그가 몇십만 가지로 파고들면, 우리 사회주의 경제도 따라서 수십만 가지를 모방한다.

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⁶⁷⁾

정부의 자유시장 문제에 대한 입장은 여름 식량 수매 이후 식량이 거래되는 문제와 함께 반우파투쟁의 정치적 운동 속에서 바뀌어 갔다.⁶⁸⁾ 1957년 7월에 열린 전국 식량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국가식량시장의 취소에 대해 논의되었다.⁶⁹⁾ 지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이상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소토산품 자유시장에서 제1류와 제2류 물자의 잉여 교역을 허락한 이후, 농민이 부업을 근거로 편의상 자유시장에서 식량 구매를 요구했고, 여기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했던 점이다. 당시 농촌에서는 자유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웃돌았고, 이에 중앙 정부는 자유시장에서 식량 거래를 허락할 것 인지의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⁷⁰⁾

천원의 전국 식량공작회의의 발언은 '식량자유시장'에 당시 지도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중앙 지도부가 7월까지의 여전히 국가식량시장과 자유시장의 식량거래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무릇 식량 공급상황이 긴장된 지방은 국가 지도하의 식량자유시장이 약간의 국가 식량 통구통소를 파괴하는 작용을 일으켰다. 무릇 식량의 공급상황이 비교적 느슨한 지방은 국가 지도하의 식량자유시장이 국가의 통구통소에 대해 일종의 보조작용을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방법은 1)달기를 원하는 것은 즉 달고, 보존을 원하면 보존하고, 국가가 일률 통일 규정하지 않고 각성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였다. 2) 무릇 식량자유시장을 닫은 지방은 국가의 식량 기구가 농민이 식량품종 조절[調劑]을 진행하는 것을 마땅히 계속 돕는다.⁷¹⁾

자유시장은 국가시장의 부족을 보조할 수 있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파괴성도 있다. 따라서 이용과 제한의 정책으로, 그를 이용해 사회주의 경제의 다양성으로 만들고 동시에 그의 파괴성을 제한해야 한다.”

67) 「國務院關於做好夏糧征、購工作的指示」(1957.06.11.), 『人民日報』, (1957년 6월 13일).

68) 7월 자유시장 문제가 제기되어 9월 국가식량 시장이 취소되는 일련의 과정은 백가쟁명에서 반우파투쟁으로 흘렀던 정치운동과 분명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봄 동안, 많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통구통소를 비판하고 자유시장 확대를 주장했고, 주요 대학에서 관련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또한 7월을 전후한 반우파 투쟁에서 자유시장의 비판은 빠지지 않았고, 자유시장이 통구통소를 해쳤다는 주장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8월에 당시 식량부 부장이던 장나이치(章乃器)가 반공반사회주의 활동으로 비판받았으며, 지도부의 우경 비판 이후, 9월부터 전국 농촌에서 정풍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이후 당의 '大放大鳴'과 '大爭大辯'의 부추김에 가운데 많은 농촌 간부가 통구통소와 합작화에 대한 솔직한 감상을 털어냈으며, 직후 대대적인 농촌 간부의 고발과 숙청, 자아비판과 교육, 선전으로 이어졌다. 본고는 국가식량시장에 초점을 두어 이상의 농촌 정풍운동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차후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69) 「全國糧食會議傳達政治局會議指示要點」(1957.7.17.),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194. 해당 자료에 실린 다음의 전문을 참고: “식량자유시장의 가부 고려를 하지 않고, 농민이 식량을 판매할 경우 국가에게 판매할 수 있다. 농업합작화와 농촌 내의 식품가공업장[三坊]이 회복된 이후, 농업사와 농민은 자유시장에서 약간의 식량을 구매하여 부업을 하기 위하여, (식량) 가격이 국가 공시가격[牌價] 보다 크게 높아졌다. 만약 이렇게 간다면, 즉 식량의 통구통소에 엄중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식량자유시장의 필요 여부는 재차 새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70) 이상의 전문에서 '식량자유시장'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필자는 문맥상 자유시장에서의 식량 거래를 지칭한 표현이거나 최소한 그 사실을 포함하는 식량거래를 지칭하는 용어로 생각한다. 何帥波도 이 자료를 인용하였는데, 그는 '식량자유시장'이란 표현을 해명하지 않고, 주어를 국가식량시장으로 대체하여 원문을 발췌했다. 뒤이은 “가격이 국가 공시가격 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서술은 주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직접 근거로 내세운 그의 주장은 문제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何帥波, 앞의 논문, p.110.

71) 「陳雲在全國糧食工作會議上的講話, 全國糧食會議簡報」(1957.7.20.),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194-195.

그러나 1957년 8월 국무원 전체회의에서 ‘由國家計劃收購(統購)和統一收購的農產品和其他物資不准進入自由市場的規定’이 통과됨으로써 자유시장에서 식량을 비롯한 제1류와 제2류 물자의 거래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이 규정은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어떤 농산물이 자유시장에 진입을 허락하고 어떤 농산물을 허락하지 않을지”를 사전에 규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많은 계획수매에 속하는 농산물이 자유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지적한다. 또한 ”통일수매 물자도 “국가가 일정 비율의 수매만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시장에서 판매를 허락”함으로써, 다량의 제2류 물자가 국가의 수매임무 완성 전에 무제한적으로 자유시장에 진입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상의 문제들은 국가의 물자 수매와 계획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계획수매 물자와 통일수매 물자는 모두 자유시장에서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이 규정의 골자였다.

또한 규정은 “국가 지도하에 있는 식량시장”을 각 지역 상황에 따라 개방하도록 했다. 즉, 국가식량시장의 운영은 일괄 폐쇄된 것은 아니지만 성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필요에 따라 개폐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에 자유시장에 대해서는 “기타물자에 대해 국가 지도하의 자유시장을 개방한다”고 규정했다. 자유시장에서 식량 거래의 논란은 국가로 하여금 모든 식량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게 했고, 이때 국가식량시장도 점차 폐쇄하는 방향으로 결론난 것이다. 이상의 결정은 정부가 처음부터 구상했던 주요 물자의 사회주의 국가시장과 소토산품의 자유시장으로 관련 시장정책들을 재정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무원의 8월의 결정은 식량부가 반포한 새로운 시장관리규정에 즉시 반영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규정은 식량과 기름작물에 대한 시장 거래와 국가식량시장의 운영을 사실상 폐쇄한 것이다.⁷²⁾ 또한 식량과 기름작물을 원료로 하는 각종 기름과 제면 등의 부업에 대해서는 농업사가 국가의 통구 임무를 완수한 이후 남은 원료를 이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농업사나 농가가 부업생산을 위해 식량이나 기름작물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부업 생산물도 자신의 수요를 만족시키거나 국가기관이나 공소합작사에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부 판매나 상업 거래를 금지했다. 농민 개인은 식량과 기름작물을 운송 판매할 수 없었고, 도시로 식량이나 기름작물을 보내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수량이 철저히 제한되었다. 물론 규정의 말미에는 “식량, 유료의 공급 정황이 비교적 좋은 지구”에서 성인민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국가 지도하에 식량, 기름작물 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사실상 농촌의 국가식량시장이 폐쇄되는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9월에 열린 전국 식량회의에서 천윈은 여름의 입장을 바꾸어 “국가 지도하의 식량시장은 원칙적으로 마땅히 닫아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단점의 발생을 걱정”해야 하지만, “식량시장을 운영하는 단점에 비교하면 문제는 적다”고 결론 내렸다.⁷³⁾ 국무원은 식량 소비의 증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식량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며, 국가가 식량을 안배하고 판매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10월 가을 수매와 함께 반포된 통구통소 규정은 국가식량시장의 폐지를 공식화하였다.

농촌의 식량 통구임무의 완성 이후, 과거 농민의 상호간의 식량 조정을 위하여, 국가 지도하의 식량

72) 식량, 기름작물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지구는 일률적으로 국가의 식량, 기름 작물 시장의 개방을 정지시키고, 농업사(호)가 국가 식량과 기름작물의 통구 임무를 완성한 이후, 만약 자신이 사용할 몫을 빼고도 남아, 식량, 기름작물의 판매가 필요한 경우, 혹은 ‘주전량(周轉糧)’을 거래하여 식량 품종의 조절을 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식량, 기름작물의 구소참(점)을 통한다. 「糧食部關於糧食油料市場管理的規定」(1957.9),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p.210-212.

73) 「陣雲在全國糧食工作會議上的發言,全國糧食會議簡報」(1957.9.11.),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195.

시장을 개방하였다. 금후 식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종류의 식량 시장은 마땅히 닫는다. 식량 시장의 폐쇄 후, 국가 식량 기구가 가능한 범위 내 농업사와 농민이 식량 품종을 조절하는 진행을 돕는다.⁷⁴⁾

이로써 국가의 통구통수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세워진 국가식량시장은 일괄 폐쇄되었고, 식량은 국가의 상점과 기관 외 어떤 시장에서도 거래가 금지되었다. 농촌에서는 반우파의 투쟁과 함께 합작화가 가속화 되었고, 부업을 포함한 전 농가의 경제활동이 국가의 계획과 안배에 들어서면서 개인이 식량을 유통하거나 경영할 필요는 표면적으로 사라져갔다.

5맺음말

국가가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였던 '통구통소' 정책은 농촌의 많은 것들을 바꾸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농민이 식량을 시장에 거래하던 관행이었다. 농민은 더 이상 식량을 상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었고, 각 향촌을 돌며 식량을 수매했던 상인을 대신하여 농촌 곳곳에 국가의 수매기관이 들어섰다. 농민은 매 여름과 가을 국가가 정한 기간에 정해진 수량만큼의 식량을 국가에 판매해야 했다. 처음 정부는 식량의 밀거래를 막고 국가의 장악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에서 식량 거래를 강하게 통제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자신이 자급할 일 년치 식량을 생산하였더라도 식량 거래가 필요했으며, 또 그렇게 시장을 이용해왔다. 농민들은 당장 사용하지 않는 식량을 팔아 급무를 처리하거나 부업생산 자금으로 활용하고 이후 식량을 재구매했다. 또한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식량이나 농산물 구매도 필요로 했다. 통구통소 시행 첫해 동안 농민의 식량 구매 요구는 많은 혼란을 가져왔으며, 정부는 농촌에 식량을 판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농민의 경제활동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의 구매력을 높였으며, 부업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농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식량 수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었다. 농민들에게 자유로운 식량 거래를 허용할 경우, 정부는 농민들이 국가 계획을 초과하는 식량을 소비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농민들은 가능한 국가에 식량을 적게 내놓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는 허락될 수 없었다. 이상의 딜레마 속에서 1954년 정부는 '국가식량시장'을 운용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농촌에서는 국가식량시장을 통해 필요한 식량을 교환하고, 또 부업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식량을 거래했다. 또한 농촌 구성원간에 혹은 촌과 촌은 여전히 시장 밖에서 식량을 포함한 소량의 농산물을 교환할 수 있었다.

통구통소가 농촌 거래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상인의 식량 거래가 금지되자 초급시장이 사라져간 것이다. 상인들은 식량을 구매할 수 없는 농촌에 내려가 상업활동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상업 유통망은 빠르게 와해되었다. 공소합작사가 활약함에 따라 일부 주요 생필품들이 농촌에 전해졌지만, 많은 상품들이 농촌에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농촌 내에서 유통되지 못하여 쌓여갔다. 농민의 불만이 커져갔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농촌의 물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의 농촌 소상인들을 조직하여 공소합작사의 국가 소매망을 확대하는데 힘썼다. 그러나 농촌 상인들의 조직 과정에서도 문제는 발생했고, 국가의 농촌 소매망이 발전하기 전까지 물자의 유통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농촌의 부업생산 침체를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간 물자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소토산물을 거래하는 '자유시장'을 설

74) 「國務院發表糧食統購統銷補充規定」(1957.10.11.), 『檔案資料選編-商業卷』, p.138.

립한 것이다.

이상의 과정에서 국가의 상업 유통망만으로 상인들의 기존 시장거래망을 완전히 대신하기는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시장’을 보조하는 명분으로 재차 ‘국가식량시장’과 ‘자유시장’을 운용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농촌의 물자 유통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분리된 이원적 유통구조를 구상했는데, 하나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통제되는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물자 유통망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공소합작사에 의해 경영되고 사회주의로 개조된 상인들이 보조하는 물자 유통망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상과 달리 현실에서 새로 설립한 제도들은 농촌의 물자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였고, 운영과정에서 서로 뒤섞여 문제가 되었다. 자유시장의 운영과정에서 식량 등의 물자가 거래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반우파의 정치적 움직임 속에서 개인의 모든 식량 거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 과정에서 1957년 가을에 국가식량시장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이후 농촌 개인들은 합작사에 소속되면서 식량을 개인적으로 거래할 여유도 필요성도 사라져 갔다. 이 국가식량시장은 대약진의 기근을 거친 후 다시 논의되었고, 이후 일부 지역에서 개폐를 거듭해 갔다.

참고문헌

『人民日報』

商業部當代中國糧食工作編輯部 編,『當代中國糧食工作史料』上卷, 河北省供銷社保定印刷廣印印刷(內部發行), 1989.

宋永毅 主編,『中國大躍進-大饑荒數據庫, 1958-1962』,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14. (CD판)

宋永毅 主編,『中國反右運動數據庫, 1957』,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13. (CD판)

宋永毅 主編,『中國五十年代初中期的政治運動資料庫:從土地改革到公私合營(1949-1956)』,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14. (CD판)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陳雲文選』(第二卷), 新華書店(電子圖書版), 1986.

中國社會科學院中央檔案館 編,『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商業卷』, 北京:中國物價出版社, 2000.

中國社會科學院中央檔案館 編,『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綜合卷』, 北京:中國物價出版社, 2000.

中央檔案館,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中共中央文件選集(1949年10月-1966年5月)』 第15冊(1954年1月-3月), 北京:人民出版社, 2013

中央人民政府糧食部辦公廳編,『糧食工作法規彙編(1955)』, 1955

中央人民政府糧食部辦公廳編,『糧食工作法令彙編(1952.9~1953.12)』, 1954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祕書廳,『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公報』109(36), 1957.

中華人民共和國糧食部辦公廳編,『農村糧食統購統銷文件彙集(1956-1957)』, 1958

許道夫,『中國近代農業生產及貿易統計資料』, 上海人民出版社, 1981

스키너 G 윌리엄, 양필승 옮김,『중국의 전통시장』, 신서원, 2000.

葛玲,「從“民主評議”到“隨征帶購”—1954年廣東糧食統購的制度化嘗試」,『黨史研究與教學』, 2015-4,

- 唐正芒, 莫慶紅, 「統購統銷後農村初級糧食市場的演變」, 『井岡山大學學報』 41(4), 2020
- 林超超, 「一九五六年前後的自由市場政策與城市商品供應」, 『中共黨史研究』, 2019-1
- 武力, 「社會主義改造完成後引入市場機制的先聲—陳雲與1956年農村自由市場的開放」, 『當代中國史研究』, 2007-5
- 王瑞芳, 「陳雲與糧食統購統銷」, 『當代中國史研究』, 2005-4
- 王春英, 王之含, 「“國家市場”與新中國基層市場制度的轉變—以江津縣爲例」, 『中共黨史研究』 2019年第6期, 2019-6
- 王春英, 張豔梅, 「向社會主義過渡: 建國初期的糧食市場與國家調控」, 『史林』, 2017-5
- 張神根, 「八大前後黨對自由市場問題的初步探索」, 『中共黨史研究』, 1996-6
- 田錫全, 「糧食統購統銷制度的形成及其在唐河縣的運作(1953-1957)」,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 馮筱才, 「一九五八年至一九六三年中共自由市場政策研究」, 『中共黨史研究』, 2015-2
- 夏林, 董國強, 「一九五六年至一九五七年有限開放自由市場政策述論」, 『中共黨史研究』, 2015-2
- 何帥波, 「一九五四年至一九五七年國家糧食市場研究」, 『中共黨史研究』, 2020-3
- 윤들, 「중국의 사회주의 이행기농촌시장 재편과 농민-국가관계 변화—투자자에서 농업노동자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승아, 「중화인민공화국의 농촌 ‘國家糧食市場’ 운용과 폐지(1954-1957)」에 대한 토론문

윤형진 (고려대)

1. ‘統購統銷’가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역사의 핵심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아직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색한 이승아 선생님의 연구는 매우 의미가 크고 앞으로 관련 분야 연구의 진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슷한 시기를 연구했다는 이유로 토론을 맡았지만 관련 주제에 정통하지 못한 입장에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고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토론문에서는 개선의 방향을 한 가지 제안하고, 몇 개의 질문을 통해 글에는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저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자 한다.

2. 특정 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가 많은 최근의 동향 속에서, 이 시기 연구에서 전국 차원의 정책 변화와 실행에 대한 분석한 것은 드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전국 단위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의 유통을 국가가 장악해 가는 과정을 정책의 추이 뿐 아니라, 부작용과 시행착오, 반발, 대책 등까지 포함하여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루는 지역적, 시간적 범위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식량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비교적 상세한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화의 계기나 배경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서, 정책의 추이에 대한 설명을 따라가다가 ‘왜?’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식량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율적인 영역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농촌 식량 시장은 그 중요성 때문에 외부적 변수가 크게 작용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統購統銷에 대한 문제이지만, 統購統銷을 직접 다루는 문헌만으로는 오히려 統購統銷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농촌 문제는 1950년대에 당 지도부 내의 분열과 노선 대립이 표면화된 계기였고,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식량 문제는 특히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첨예한 문제였다. 문제 자체가 ‘과도기의 총노선’ 이후 인위적이면서 다소 성급한 정책 방향 전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시작부터 여러 구체적인 정책 변화에 이르기까지 당 지도부 내부의 중요한 결정이나 논의가 있었다. 물론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개인의 회고(博一波 등), 주요 지도자의 연보와 문집, 좀더 넓은 범위의 당 중앙 문건 등의 활용을 통해 여러 가지 복잡한 전환의 계기와 배경을 추적할 수 있다면, 더욱 입체적으로 식량 시장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1. 저자는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앞 시기의 식량 유통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가 본격적인 ‘사회주의 개조’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작에 비해 오히려 사회주의 개조라는 용어가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가 보기에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야말로 ‘사회주의 개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혹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 싶다. ‘국가식량시장’에 대한 논의와 정책 실행의 결과가 ‘사회

주의 개조' 연구에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다.

3-2. Sebastian Heilmann 등의 연구에서 잘 나타나지만, 중국공산당은 국가 단위의 정책을 한 번에 실행하기보다는 다양한 모델의 실험, 일부 지역에서의 적용,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수정해 가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농촌에 국가식량시장을 세우고 경험을 보고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는 내용(9쪽), 국가식량시장의 다양한 유형(10쪽), 지역마다 다른 운영 방식(11쪽) 등을 보면서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실험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국가식량시장'과 관련된 각 지역에서의 다양한 양상은 의도된 '실험'에 가까웠던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는지에 대해 저자의 판단을 듣고 싶다.

3-3. 농업생산협작사를 중시한 毛澤東과 달리 劉少奇는 공소협작사를 중시했고, 비교적 긴 과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 '신민주주의' 단계에서 공소협작사가 국영, 사영 부문과 공존하면서 상업 부분을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에 농촌의 유통에서 공소협작사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궁금하다. '統購統銷'은 劉少奇 등의 구상에서 멀어져서 毛澤東 주도 하에 좀더 급속하게 사회주의로 전환하려는 시도의 첫 걸음인 셈인데, 이 때문에 劉少奇의 입장이 약화된 상황에서 당 지도부에서 공소협작사의 기능을 축소시키려 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영 부문이 유통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공소협작사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협작사를 통한 거래는 '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사적인 거래를 통제하려 하던 시기에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 공소협작사가 본문에 몇 차례 등장하는데, 공산품 공급을 위해 국영기업과 협력했다는 내용(5쪽), 기존 상인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하는 한계(8쪽, 14쪽), 1955년 이전까지 농촌 물자는 사실상 공소협작사가 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14쪽), 농촌 소상인을 공소협작사에 소속시키려 한 일(14쪽)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만으로는 위상 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다소 일관되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다. 공소협작사는 統購統銷 정책이 자리 잡는 몇 년 동안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인지가 궁금하다.¹⁾

3-4. 陳雲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자유시장에 대한 입장 변화를 반우파투쟁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쌍백운동 기간에 統購統銷에 대한 비판이 있고 반우파투쟁 기간에 자유시장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정치운동을 결정적인 변수로 제시할 수 있을까? 정치운동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촌 집단화의 진전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점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여쭙고 싶다.

1) 자료 면에서도 공소협작사를 통한 접근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관련 자료의 파악에는 靑柳齊, 『中國農村合作社的改革: 供銷社의展開過程』이 유용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